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Ⅱ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 외교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 출자, 출연 등의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예산을 활용한 전기, 철도서비스 등 사업 집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국회에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수입·총지출은 645.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규모도 2019년 기준 861.1조원으로 전년 대비 32.8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며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보고서는 340개의 전체 공공기관 결산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내용과 주요 현안을 분석한 중점 분석과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및 자체 사업을 분석한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중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경상운영비, 자체감사, 기부금 운용 등의 총괄 또는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저조, 손실 및 부채 증가, 법령 및 지침 위반, 사업 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정책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에도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공공기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지원 지역의 다양성 제고 필요 3
 - 1-1.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지역 및 연구자 다양성 확보 필요 3
 - 1-2.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연구자 다양성 제고 및 성과지표 확대 검토 필요 7
2.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필요 12

[통일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수요를 고려한 사업 집행 필요 21
 - 1-1. 사업수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의 지역 다양성 확보 필요 21
 - 1-2. 창업 전문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26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집행 강화 필요 2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기준 검토 필요 37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4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연례적인 불용 및 기금계획 변경 지양 필요 47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비에서 경상경비 성격인 종합부동산세 등 집행 부적정 55
2.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업무의 법적 근거 미흡 5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부진 해소 필요 69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71
3.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포털의 이러닝과정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75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 7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의 산업단지 분양 실적 저조 등 87
 - 1-1.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 실적 저조 부적정 88
 - 1-2. 태국 KRC Thailand.Co.Ltd 현지법인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91

CONTENTS

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교환분합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예산과 결산 단가 차이 과도	93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교육 휴직기간 운영 부적정 96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	100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KCON 연계 홍보 사업의 B2B 확대 필요 등	103
5-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CON 연계 홍보 사업의 B2B 사업성과 확대 필요 ..	103
5-2.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참여 유인 확대 필요	107
5-3. 국제식품박람회의 수출 계약성과 미파악 등 성과관리 철저	110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사·중복되는 중국 대상 수출 진흥사업의 통합 필요	113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구매이행보증보험 사업의 수요 부족	118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121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한국은행예치금의 다음연도 이입의 법적 근거 미흡	123
10.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정보화 사업 절차 위반 부적정 등	127
10-1.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정보화 사업 절차 위반 부적정	127
10-2. 전담기관 기능강화 연구용역의 선정, 평가 등 사업수행체계의 공정성 저해 부적정	131
10-3. 말산업 인턴 사업의 중도 이탈로 인한 고용유지율 저조 부적정	135
11. 한국마사회의 군공항 이전 시 소음영향을 감안한 화옹 호스파크 사업의 추진 필요	138
12.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과다 부적정	142
1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통한 정보화 사업 용역비 집행 규모의 확대 부적정 등	146
13-1.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통한 기관 운영 관련 정보화 사업 용역비 집행 규모의 확대 부적정	146
13-2.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를 통한 내부 직원 국외 교육훈련비 편성·집행 필요	151



13-3.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과 임직원 주거 복리후생 확대에 의한 차입금 규모 증가 부적정	154
1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수출 성과 부진	160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요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바탕으로 한 판로지원 사업 추진 필요 등	163
16.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내부 직원 직위해제 시 보수 과다 지급 부적정	166
17.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산업용지 입주율 및 매출액 등 성과 개선 필요	170
18. 한식진흥원의 연도말 경상비를 활용한 자본 성격인 공사 및 장비 구매 추진 부적정	174
19.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법적 근거 없는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의 장기 추진 부적정 등 ..	176
20.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쌀 소비활성화 성과 저조 및 목적외 홍보사업 집행 부적정	181

[해양수산부]

1. 울산항만공사 광고선전비 부적정 집행 등	189
1-1. 광고선전비를 활용한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협회비, 출장비 등 집행 부적정	190
1-2. 울산항만공사 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효과 미흡 부적정	193
2. 부산항만공사 국제선용품센터 물류창고 입주 실적 저조 등	196
2-1. 국제선용품센터 물류창고 입주 실적 저조	197
2-2. 부산항 신항 부두운행사 외국 국적 비율 과다 및 통합 운영 필요	200
3. 인천항만공사의 홍보 효과가 미흡한 행사 추진 지양 필요 등	204
3-1. 홍보 효과가 부족한 과도한 행사 추진 지양 필요	205
3-2.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골든하버)의 복합지원용지 완공 이후 미분양 부적정	208

CONTENTS

4. 항만공사의 미납 및 회수불능 채권 규모 증가 부적정	213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장기근속자 포상 규정의 변경 필요 등	216
5-1.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장기근속자 포상 규정의 변경 필요	216
5-2.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상비 성격 경비의 경상운영비 이관편성 필요	219
5-3. 임시검사 등 검사건수 등의 연례적인 실제 대비 예산상 과소 계상 부적정	223
6.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자부담 우선 집행 필요	228
7.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상운영비로 집행 부적정 등	232
7-1.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상운영비가 아닌 예비비 편성·집행 필요	232
7-2. 직원 사택 매각 및 반환 금액의 공단 수입 예산 미반영	236
7-3.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TAC 인력 인건비 등 집행 부적정	239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비를 통한 기관 공공요금·세금 등 집행 부적정 ..	242
9.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무기계약직 관련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선 필요	246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법령이나 정관상 창업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필요	249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등	255
1-1.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255
1-2. 인사·홍보·기념품비의 경상운영비 편성·집행 필요	258
1-3.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지원 사업의 통합 편성 필요	261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확대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267
1-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확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67



CONTENTS

1-2. 지침을 위반한 특별휴가 제도 운영 부적정	271
1-3.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조사 비용 등의 집행 부적정	274
1-4.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 수수료 실제 보다 예산상 수입 과대 계상 부적정	278
1-5.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장 및 직원 관사 구입 비용의 수입·지출 예산에 포함 필요	280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치유의 숲 이용자 중 산림복지소외자 비율 저조 부적정 등	283
2-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기관운영사업 집행 부적정	283
2-2. 산림복지소외자의 치유의 숲 이용 확대 필요	287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집행 관리 철저	290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지원 지역의 다양성 제고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 기금운용수익금, 정부 출연금 또는 민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 국제교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계획현액은 1,776억 700만원이며, 그중 1,503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다.¹⁾

[2019회계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한국국제교류재단	176,272	177,607	0	0	177,607	150,348	0	276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1-1.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지역 및 연구자 다양성 확보 필요

가.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정책연구소지원사업²⁾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이슈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된 해외정책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정책연구,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차세대 정책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Korea Chair,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여유자금운용 부분의 예산 현액이 485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액이 215억 5,300만원으로 이는 회계 상 불용액에 포함되지 않아, 결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3-402의 내역사업

Fellow 또는 한국 연구를 전담하는 센터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도 해외정책연구소지원사업의 계획현액은 36억 7,100만원이며, 이 중 36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해외정책연구소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해외정책연구소지원	3,795	3,671	0	0	3,671	3,666	0	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분석의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정책연구소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연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한 국가별 연구소는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의 2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연구 수는 212건, 집행액은 165억 7,000만원이다.

이를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에 지원된 연구가 106건으로 사업의 약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10건으로 약 4.7%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은 총 113억 3,941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사업비의 약 68.4%가 지원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원 받은 국가인 영국은 5억 3,106만원이 지원되어 총 사업비의 약 3.2%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의 연구와 금액을 지원받은 미국과 차 순위 국가와의 편차는 연구수로는 96건(중국), 액수로는 108억 835만원(영국)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의 수혜 기관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

3) 재단의 내부 규정 중 ‘해외정책연구소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유사한 사업인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 규정’ 제 11조의 2에 따르면 종합심사 시, 언어권별, 국가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5년 간 국가별 연구소 지원 현황('15~'19)]

(단위: 건, 원, %, 년)

구분	연구지원 수	비율	지원 금액	비율	지원기간
미국	106	(50.0)	11,339,416,837	(68.4)	5
중국	10	(4.7)	296,676,478	(1.8)	5
러시아	8	(3.8)	442,192,890	(2.7)	5
스웨덴	8	(3.8)	506,162,595	(3.1)	4
영국	8	(3.8)	531,067,220	(3.2)	4
일본	8	(3.8)	364,059,980	(2.2)	4
베트남	6	(2.8)	87,730,100	(0.5)	5
말레이시아	5	(2.4)	287,722,647	(1.7)	4
벨기에	5	(2.4)	463,905,991	(2.8)	3
이탈리아	5	(2.4)	224,682,020	(1.4)	4
태국	5	(2.4)	146,161,486	(0.9)	3
오스트리아	4	(1.9)	217,297,960	(1.3)	4
인도	4	(1.9)	177,385,340	(1.1)	2
프랑스	4	(1.9)	288,416,844	(1.7)	4
호주	4	(1.9)	164,528,043	(1.0)	2
독일	3	(1.4)	258,236,200	(1.6)	3
아르헨티나	3	(1.4)	94,016,620	(0.6)	3
필리핀	3	(1.4)	91,836,540	(0.6)	3
스페인	2	(0.9)	87,967,440	(0.5)	2
인도네시아	2	(0.9)	85,421,540	(0.5)	1
폴란드	2	(0.9)	109,837,400	(0.7)	2
노르웨이	1	(0.5)	58,343,320	(0.4)	1
네덜란드	1	(0.5)	47,402,496	(0.3)	1
미얀마	1	(0.5)	11,898,000	(0.1)	1
브라질	1	(0.5)	66,061,040	(0.4)	1
싱가포르	1	(0.5)	59,457,500	(0.4)	1
캄보디아	1	(0.5)	34,123,220	(0.2)	1
핀란드	1	(0.5)	28,170,500	(0.2)	1
총계	212	(100.0)	16,570,178,247	(10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연구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중복 지원된 경우는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에서 총 16명의 연구자가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수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자는 A연구자는 약 7회의 연구를 지원 받았으며, 금액 면에서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은 B연구자는⁴⁾ 4회 연구에 대해 약 17억 4,359만원을

4) 해당 사업은 네트워크 및 행사 사업과 연구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이 타 사업보다 높은 것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 등의 경우 연구역량이 높은 연구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타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 지원된 27개 국가의 연구소 중 미국, 중국, 영국 등과 같은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은 비중의 연구와 금액이 치우쳐서 집행되고 있고, 한 연구자에게 최대 7건 까지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지원에 있어 국가 별, 연구자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요국 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역량있는 연구소 및 연구자가 동 사업에 참여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 중국, 영국과 같이 사업 지원이 집중된 국가 외의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및 연구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⁵⁾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소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행사가 수행되는 경우 재단에서 지원하는 타 행사 사업과의 국가 중복 등을 고려하고 ‘정책 연구’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 5)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지원 경쟁률('15~'19)]

(단위: 개, %)

신청연도	신청 건(수)	지원 건(수)	경쟁률
2015	34	19	1.79:1
2016	38	27	1.41:1
2017	47	22	2.14:1
2018	90	40	2.05:1
2019	115	76	1.51:1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1-2.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연구자 다양성 제고 및 성과지표 확대 검토 필요

가. 현황

방한연구펠로십사업⁶⁾은 해외에 있는 국외 연구자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학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외 연구자의 방한연구 및 한국어 연수지원, 외국 외교관 및 신남방지역 공무원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등을 지원하는 국내펠로십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신청자격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분야의 한국학 또는 한국관련 비교(사례) 연구자이며, 자연공학 및 의학 분야는 제외되고 있다.⁷⁾

2019년도 국내펠로십사업 계획현액은 21억 5,500만원이며, 21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방한연구펠로십 사업의 2019년도 계획현액은 4억 2,3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내펠로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내펠로십	2,315	2,155	0	0	2,155	2,151	0	4
방한연구펠로십	423	423	0	0	423	423	0	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한국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연구자들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6)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2-401의 내역사업

7)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단,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한국학과의 융합 등 새로운 학문영역에서 한국과 긴밀한 연구협력 및 중요성이 인정되는 연구주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방한연구펠로십사업에 대해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141명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약 32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국가별 수혜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48명이 수혜를 받아 전체 수혜자의 약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17명으로 약 12.1%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 알려져 있는 영미권과 중국에서 수혜자의 약 55.3%를 차지하고 있어 3개 국가에 다소 높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인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의 경우 수혜자가 1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에디오피아, 이란, 토고 등과 같은 국가의 연구자들은 지원은 하였으나 실제 수혜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방한연구펠로십시행지침」 제15조 심의기준에 따르면, 심의회에서 지역별, 국가별, 소속기관별 중요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및 분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취지가 전 세계에 한국연구를 진흥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이란, 에디오피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의 연구자들의 방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 국가별 수혜자 현황('15~'19)]

(단위: 명, %)

국가	수혜자	(%)	국가	수혜자	(%)
노르웨이	1	0.7	엘살바도르	1	0.7
뉴질랜드	1	0.7	영국	13	9.2
대만	4	2.8	우크라이나	1	0.7
독일	1	0.7	이스라엘	1	0.7
러시아	4	2.8	인도	8	5.7
말레이시아	2	1.4	인도네시아	1	0.7
멕시코	2	1.4	일본	3	2.1
몽골	5	3.5	중국	17	12.1
미국	48	34.0	체코	2	1.4
미얀마	1	0.7	캐나다	5	3.5
베트남	3	2.1	터키	2	1.4
벨기에	1	0.7	파키스탄	1	0.7
벨라루스	1	0.7	폴란드	2	1.4

(단위: 명, %)

국가	수혜자	(%)	국가	수혜자	(%)
스페인	1	0.7	프랑스	2	1.4
슬로베니아	1	0.7	호주	2	1.4
싱가포르	2	1.4	계	141	100.0
에콰도르	2	1.4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물론, 이와 같은 현황이 발생한 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 사업이 잘 알려져 있어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혜자 역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 수혜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별 지원자와 수혜자를 통한 사업지원의 경쟁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은 수혜 연구자의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원 시는 국적과 거주국을 혼용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수혜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국적, 거주국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별 수혜자 현황 대비 실제 지원자 경쟁률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워 해당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기 어렵다.

즉, 재단은 지원자 및 수혜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 경쟁률 등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원 시에도 지원자의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국별로 다양하게 수혜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취지가, 한국학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원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수혜자는 A유형과 B유형으로 구분된다. A유형의 경우

교과과정을 마친 후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중인 자이며, B유형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문직 종사자로 각 유형에 따라 지원 연구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자격 유형별 세부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 연구자 유형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유형	자격요건	월 연구비	기타 지원
A	교과과정(coursework)을 마친 후 박사학위 논문집필 중인 자	2,300	연구비, 여행자보험, 입국지원금 등을 지원
B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 박사학위소지 연구·전문직 종사자	3,000	

주: 월 연구비는 5개월 동안 지급됨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동사업의 수혜자를 구분하면, A유형은 총 36명으로 전체 수혜자 142명 중 약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B유형의 경우 106명으로 전체의 약 74.6%를 차지하고 있어, B유형의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 유형별 수혜자 현황('15~'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A유형	5 (16.1)	7 (21.2)	9 (34.6)	7 (28.0)	8 (29.6)	36 (25.4)
B유형	26 (83.9)	26 (78.8)	17 (65.4)	18 (72.0)	19 (70.4)	106 (74.6)
수혜자 전체	31 (100.0)	33 (100.0)	26 (100.0)	25 (100.0)	27 (100.0)	142 (10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때, 방한연구펠로십사업의 성과기준 및 인센티브지급 기준은 동 사업의 수혜자가 관련 논문 혹은 단행본을 출간했는지 여부로 해당 성과는 논문의 경우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단행본의 경우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며, 성과를 달성한 연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 성과 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 조건	지급 금액
논문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A&HCI/SSCI/SCOPUS/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각국 교육부 인정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US\$1,200
단행본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행본을 출판한 경우	US\$2,2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성과기준을 근거로 한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성과는 2015년도 4건, 2016년도 5건, 2017년도 1건, 2018년도 3건, 2019년도 7건으로 총 23건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모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가 기준인 B유형의 수혜자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연구펠로십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자 현황('15~'19)]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혜자	4	5	1	3	7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박사과정 학생이 대상이 되는 A유형의 최근 5년간 사업성과는 0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성과기준은 박사 과정인 학생의 입장에서 달성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B유형의 성과가 산출될 수 없는 동 사업성과 기준은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당 사업의 성과측정 기준을 단행본이나 논문에 국한하지 말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사업인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같이 발간물, 기고문 등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실적을 담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동 사업의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A유형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필요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¹⁾은 차세대해외입양동포의 권익신장 도모, 정체성 정립 및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입양동포실태조사사업과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으로 그 중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해외입양동포지원	295	295	0	0	295	283	0	12
입양동포실태조사	102	102	0	0	102	97	0	4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	193	193	0	0	193	186	0	8

자료: 재외동포재단

2019년도 동 사업의 실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은 한인 차세대 입양동포 정책지원 및 실태조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차세대간 교류협력지원을 목적으로 총 7개국 12개 공관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간 해외입양동포의 교류협력을 위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총 7개국의 12개 공관을 통해 18개 단체에 대하여 1억 838만원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1832-401의 내역사업

을 지원하였으며, 그 실적으로 미국은 AKA가 주최한 ‘입양역사의 이해 및 한인 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아리조나주한인회의 ‘2019 아리조나주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9개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ITAKO가 주최한 ‘2020 Korean Day’, KOR.IA의 ‘Winter Camp’ 등 2건이 집행되었고,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의 ‘입양인 권익 신장활동 및 입양단체 들의 입법 활동 지원’ 오타와양자회의 ‘2020 설맞이 문화행사’ 등의 행사가 추진되어 왔다.

이외 국가들로 독일의 경우 ‘재독한인입양인 한글 및 한글문화 세미나, 프랑스 ‘입양아 문화캠프’, 호주 ‘입양동포 대상 한식 쿠킹클래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차세대 재외동포포럼’ 등이 수행되어 왔다.

해당 단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입양과 관련 된 행사를 수행하기도 하나,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2020 Korean Day’, 캐나다에서 진행된 ‘2020 설맞이 문화행사’, 덴마크에서 수행된 ‘스칸디나비아 차세대 재외동포 포럼’ 등은 기존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포단체활성화사업²⁾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동포단체활성화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차세대 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	동포단체활성화사업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목적	<u>차세대 입양동포 권익신장도모, 정체성 정립 및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u>	동포단체의 거주국 내 교류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지원 내용	<u>차세대 입양동포 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u>	동포사회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 민족문화보전 및 활성화, <u>차세대 동포 교류활동 및 네트워크 교류 등</u>
지원 대상	입양동포자생단체, 입양동포 양부모단체, 기타 입양동포 관련사업 추진 재외동포단체	한인회, 차세대단체, 경제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19 예산	193	3,194
지원 주체	재외동포재단	

자료: 재외동포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2) 동포단체활성화사업은 한인회 및 한인단체가 거주국에서 시행하는 상호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동포단체활성화사업 실적(행사명)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사업 명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도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동포단체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비교]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지원 사업 실적(전체)	동포단체활성화 사업 실적(요약)
입양역사의 이해 및 한인 입양동포 네트워킹 구축	제6회 Texas Family Day (2019년 휴스턴 입양아의 밤)
한국 전통공연 관련 한인입양동포 워크숍	위스칸신 지역 한인 입양아 가족 지원사업
한인입양인 권리신장 및 정체성함양 논의를 위한 협업 워크숍	2019 Korea Bridge Tour(입양인 모국 방문단 코리아 브릿지 투어)
알칸사 차세대 한인 입양동포 초청간담회	미주한인 입양인 시민권 신청 및 법적자문
한인 입양가정 초청의 날	2019 입양인 시민권법
2019 아리조나주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네트워킹 프로그램	2019 김치데이
Strengthening Resilience in Korean Adoptees	16th Korean Day Festival
‘70-’80년대 입양동포 관련 컨퍼런스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지원
2020 Korean Day	재독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이주민 돌봄 필요에 대한 학술대회
KOR.I.A. Winter Camp	차세대 한국문화 알리기
입양인 권익신장활동 및 입양단체들의 입법 활동 지원	전체 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한마당 큰잔치
2020 설맞이 문화행사	2020 Korean Day
해외입양동포와 가족을 위한 한국문화체험캠프	교민, 입양동포 및 다문화 가정 전통놀이 체험 및 양국 바로 알기 행사
재독한인입양인 한글 및 한글문화 세미나	한인의 날 행사 및 차세대 한인과 입양아들에게 한국 알리기
프랑스 입양아 한국문화캠프	미국 Young People’s Network
입양동포 대상 한식 쿠킹클래스	토론토한인노인회 한국요리강습
스칸디나비아 차세대 재외동포포럼	호주동포 2세 및 차세대를 위한 대교민 포럼

주: 해당 사업실적은 2019년도에 집행된 행사명을 정리한 것임

자료: 재외동포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리고, 실제 ‘입양아’로 그 주체가 표기된 경우라도 한국의 전통문화나 음식에 대한 소개 행사이거나 혹은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행사의 특성 상 타 재외동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재외동포 모두가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큰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동사업의 2020년도 예산은 13억 9,0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11억 9,000만원의 상당한 사업 예산의 증액이 있는 바,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해외입양동포지원 사업 중 행사사업인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계획을 통해 입양동포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에 있어 국가별 입양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의 대상은 ‘차세대 해외 입양인’으로서 국가별 입양아 현황은 사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5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67,864명이 입양되었으며, 그 중 112,933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약 67.3%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양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11,213명인 6.7%가 입양되었고, 스웨덴에 9,749명이 입양되어 전체 해외입양아 중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1958~2019)]

(단위: 명, %)

구분	1958~2017	2018	2019	합계	비율
미 국	112,513	188	232	112,933	67.28
프랑스	11,201	7	5	11,213	6.68
스웨덴	9,708	28	13	9,749	5.81
덴마크	8,798	7	3	8,808	5.25
노르웨이	6,517	19	12	6,548	3.90
네덜란드	4,099	0	0	4,099	2.44
벨기에	3,697	0	0	3,697	2.20
호주	3,492	14	10	3,516	2.09

(단위: 명, %)

구분	1958~2017	2018	2019	합계	비율
캐나다	2,533	22	23	2,578	1.54
독일	2,352	1	0	2,353	1.40
스위스	1,111	0	0	1,111	0.66
룩셈부르크	640	5	3	648	0.39
이탈리아	449	12	15	476	0.28
영국	72	0	1	73	0.04
기타	62	0	0	62	0.04
합계	167,244	303	317	167,864	100.00

자료: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2019년도 차세대간 교류협력지원사업의 국가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최된 총 17건의 행사 중 8건(47.0%)이 미국에서 진행되었고, 3건(17.6%)이 캐나다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으로는 미국에 4,177만 5,000원이 집행되어 사업비의 약 38.5%가 지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캐나다에 3,655만 7,000원이 지원되어 전체 사업비의 약 33.7%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입양비율이 높은 지역인 스웨덴(5.81%), 노르웨이(3.90%)에는 1건의 행사도 지원되지 않았으며, 입양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탈리아(0.28%)의 경우 2건의 행사가 개최되는 등 국별 입양률과 사업지원국이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업 집행에 있어 해외입양아 현황(수요)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³⁾

3) 이에 대하여 재단은 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양국가별 입양 비율에 대한 상당한 기초 조사가 이뤄졌고, 공관을 통해 단체현황조사도 시행하는 등 사업 계획 및 수행단계에서 국가별 입양비율을 고려했으나, 이 비율이 입양자조단체 수나 단체의 활성화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이 같은 지역별 편중 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조사, 현지 방문, 유럽지역 단체 연계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신규 단체 발굴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도 차세대간교류협력지원사업 국가별 지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합계	미 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건수	17 (100.0)	8 (47.0)	3 (17.6)	1 (5.8)	1 (5.8)	1 (5.8)	2 (11.7)	1 (5.8)
예산	108,381 (100.0)	41,775 (38.5)	36,557 (33.7)	2,380 (2.2)	13,349 (12.3)	2,380 (2.2)	5,951 (5.5)	5,988 (5.5)

주: 미국 1개 단체 반납 건(\$2,000)제외

자료: 재외동포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동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 및 대상이 차세대 입양동포라는 점에서 해외 각국의 입양비율은 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기본이며, 사업 계획 단계 및 수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 사업이 동포단체활성화 사업과 큰 차별성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에 행해지던 행사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에 동 사업을 지원할 경우 나타나는 재단 사업의 국별 편중에 대해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재단은 기존의 동포지원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각 국별 예산을 고려했어야 하며, 미국 외 해외 입양아가 많은 지역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거주하는 차세대 입양아들에게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입양동포의 인권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국별 입양률 및 지역별 타 사업에 의한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자립정착 지원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통일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 자립·자활 지원, 교육개발 및 지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등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9년도 예산은 336억 4,0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	33,640	33,640	0	0	33,640	33,640	0	0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1. 사업수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의 지역 다양성 확보 필요

가. 현황

청소년교육보호시설운영 사업은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중도이탈이나 방과 후 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및 대안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시설지원, 무연고 청소년 등에 대한 그룹홈 지원,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총 23억 7,200만원이며, 22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다.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

[2019회계연도 청소년 교육·보호시설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소년교육보호시설운영	2,372	2,372	0	0	2,372	2,235	0	137
대안교육시설	989	989	0	△9	980	936	0	44
방과후공부방	893	893	0	0	893	865	0	28
청소년그룹홈	428	428	0	△24	404	353	0	51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62	62	0	33	95	81	0	14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청소년교육보호시설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안교육시설,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 그룹홈,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교육·보호시설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별 특징]

사업	개요	사업수혜 대상자
대안교육시설	탈북 청소년 및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중도 이탈, 방과 후 방임·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시설운영지원	탈북 청소년 및 제3국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 그룹홈	무연고 탈북 청소년 보호 및 관리와 요보호 탈북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지원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탈북 학생의 일반 학교 적응 학습지원을 위한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및 운영	일반학교 재학 중 탈북 아동 및 청소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나.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재단은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사업수요에 따른 시설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전체 인원 2,526명 중 769명인 약 30.4%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지역으로 587명인 약 23.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가정의 전체 청소년 2,526명 중

1,356명인 약 53.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이 약 46.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중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인원 대비 약 8.7%(220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남지역이 전체의 약 5.5%인 13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5명(약 0.2%)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도 지역별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재학 학교(수)	학생(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경기	312	259	224	224	62	769	30.4
서울	238	193	143	173	78	587	23.2
인천	75	67	91	58	4	220	8.7
충남	81	45	40	43	10	138	5.5
경남	70	37	29	38	1	105	4.2
충북	56	48	34	15	2	99	3.9
경북	75	37	21	37	1	96	3.8
부산	57	24	28	32	4	88	3.5
광주	54	20	24	33	0	77	3.0
대구	39	28	16	20	0	64	2.5
강원	41	20	16	23	1	60	2.4
대전	40	32	14	10	1	57	2.3
울산	31	26	15	8	0	49	1.9
전북	38	13	18	13	0	44	1.7
전남	35	16	13	15	0	44	1.7
제주	19	11	10	8	0	29	1.1
세종	5	1	2	2	0	5	0.2
계	1,261	876	736	750	164	2,526	100.0

자료: 교육부

다음으로, 2019년도에 운영된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36개 보호시설 중 20개인 약 58.8%가 서울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지역이 6개로 약 17.6%가 운영 중에 있다. 즉, 서울, 경기인 수도권 지역에 청소년 교육, 보호시설의 76.5%(26개)가 있어 매우 밀집된 상황이다.

특히, 인천, 충남, 전남, 제주지역에는 북한이탈가족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단 지원 시설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그룹홈 역시,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약 91%가 밀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권 지역에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가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2019년도 지역별 청소년 교육·보호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청소년그룹홈		합계	
	시설	이용 학생	시설	이용 학생	시설	이용 학생	시설	이용 학생
서울	3	147	8	203	9	49	20(58.8)	399
경기	1	32	4	99	1	6	6(17.6)	137
경북	0	0	3	46	0	0	3(8.8)	46
충북	0	0	1	17	1	6	2(5.9)	23
강원	1	52	0	0	0	0	1(2.9)	52
경남	1	20	0	0	0	0	1(2.9)	20
전북	0	0	1	12	0	0	1(2.9)	12
합계	6	251	17	377	11	61	34(100.0)	689

주: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의 경우 해당 시설이 존재 하지 않음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한,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사업 역시 서울에 10개, 경기도 12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어 전체 28개 지원 학교 대비 약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제주 지역에 학생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지역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사업 현황]

(단위: 개, 명)

지 역	학교(수)	수혜학생(수)	통일전담교육사(수)
서 울	10	204	9
인 천	4	207	4
경 기	12	129	9
경 남	2	13	1
합 계	28	553	23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에게는 해당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법인이 해당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신규단체와 법인을 발굴하여 교육 및 보호 시설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황 상, 청소년 교육·보호시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도 해당 사업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운영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재단은 지역별로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이 분포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교육·보호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을 통합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의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 창업 전문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해 자립을 촉진시키고자,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매칭적금창업자 6명, 경영개선자금지원 수혜자 178명, 신규창업자 지원 19명으로 총 203명이며, 수혜자를 기준으로 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약 90.6%,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약 9.4%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사업지원자 대비 수혜자를 통한 경쟁률을 비교하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1.26:1이며, 신규창업자를 지원하는 신규창업지원사업은 약 2.98:1명으로 신규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북한이탈주민재단 창업지원 사업 실적('17~'19)]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지원자	실적	지원자	실적	지원자	실적
기창업자	매칭적금창업	20	2	-	6	-	6
	경영개선자금지원	141	90	138	114	225	178
신규창업자	신규창업지원	69**	5	31	13	55	19
전체		161	97	169	133	280	203

주: 매칭적금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사업종료 예정으로 2018년도부터 지원자를 제한함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동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11억 2,800만원으로, 10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다.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3)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창업시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창업방지를 위해 창업기술, 경험, 자부담 능력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에 게만 지원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창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창업지원	1,128	1,128	0	0	1,128	1,096	0	32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나.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창업전문 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은 기창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신규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그리고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기창업자와 신규창업자의 경우 창업 혹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 함께 수반되고 있다. 이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선자금지원의 경우 1년에 최대 350만원,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업지원 사업 내용]

대상	사업 내용
기창업자	· 햇빛플러스 매칭자금: 창업자금 조성 및 창업지원 · 경영개선자금지원: 소상공인 소액자금 지원(1년 최대 350만원)
신규창업자	· 생활밀착형창업지원: 생활밀착형 기술 보유 창업자 양성 · 아산상회: (아산나눔재단 협업사업) 탈북청년 창업가 육성 ·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우수한 아이디어 및 벤처/제조업 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1,500만원 지원) · 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	· 1:1 매칭 경영컨설팅 지원 · 전문기관 위탁 정기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사업별 창업교육 실시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창업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차별성은 있으나, 신규창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 미용업, 요식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고, 실제 창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기관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 창업자 지원	시장경영바우처(16,800),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지원(11,700)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16,000), 초기창업패키지(118,080)
신규 창업자 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1,907), 신사업창업사관학교(10,210)	예비창업패키지(132,850)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경영교육컨설팅사 업(22,160)	실전창업교육(5,680)

결국 신규창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금액이나 사업지원 범위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더 나은 자립을 위해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에게 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공지하고, 사업 지원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사업 자체에 타 정부 창업지원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제도적 구축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 위탁업무의 수행,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는 통일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9년도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사업¹⁾에 대하여 계획현액 18억 900만원을 편성 받았다. 동 사업은 2019년도 계획현액 18억 900만원 중 1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1,092	1,092	717	0	1,809	1,375	0	434
남북경공업 및 북한 지하자원협력사업	198	0	0	0	198	176	0	22
남북교역, 경험 관리업무	162	0	0	0	162	130	0	32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705	0	0	0	705	657	0	48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	27	0	717	0	744	412	0	332

주: 조직운영경비 23억 4,500만원 제외

자료: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나. 분석의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위탁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내역사업(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1 및 민생협력지원 2141-402

2019년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의 세부사업은 북한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경공업 협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의 집행률은 93.3%인데 반해, 경공업 협력사업의 집행률은 19.2%로 예산 1,200만원 중 2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년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집행률]

(단위: 천원, %)

사업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남북 경공업 및 북한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북한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185,743	173,248	93.3
	경공업 협력사업	11,763	2,256	19.2
총계		197,506	175,503	88.9

주: 2019년도 경공업협력사업은 경공업 차관상환 관련 대북 실무협상, 남북한 경공업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되며, 집행액의 사용처는 경공업 유관기관·기업 면담을 위한 국내 출장, 경공업 전문가 자문 사례비 등으로 사용함

자료: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또 다른 사업인 남북군사당국간통신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남북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사업,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사업의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2019년도 남북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62.2%,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사업의 집행률은 59.8%인데 반해,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사업은 예산 5,600만원이 전액 불용되어 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2019년도 남북군사당국간통신체계 개선사업 집행률]

(단위: 천원, %)

사업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남북군사 당국간 통신체계개 선사업	남북군사당국간통신체계 개선사업	26,660	16,582	62.2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사업	56,344	0	0.0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사업	660,967	395,565	59.8
총계		743,971	412,147	55.4

자료: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더불어, 해당 사업의 최근 5년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본 결과 경공업 협력사업

의 경우, 2017년도를 제외하고 10~2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군사당국간통신체계 개선사업 중 동해지구남북군통신선 복원사업은 지난해 86.7%대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2019년도에는 전액 불용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된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 최근 5개년 집행률]

(단위: 천원, %)

구분			‘15	‘16	‘17	‘18	‘19
남북 경공업 및 북한지하 자원개발 협력사업	북한지하자 원개발정책 방향검토	예산	139,783	224,076	235,677	230,645	185,743
		집행액	131,931	208,655	223,045	224,343	173,248
		집행률	94.4	93.1	94.6	97.3	93.3
	경공업 협력사업	예산	12,000	11,992	11,992	11,992	11,763
		집행액	2,622	1,850	5,948	2,060	2,256
		집행률	21.9	15.4	49.6	17.2	19.2
남북군사 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	남북군사당 국간통신체 계개선사업	예산	33,000	33,000	26,660	26,660	26,660
		집행액	18,021	1,879	732	13,905	16,582
		집행률	54.6	5.7	2.7	52.2	62.2
	동해지구남 북 군통신선 복원사업	예산	-	-	-	1,100,146	56,344
		집행액	-	-	-	954,109	0
		집행률	-	-	-	86.7	0.0
	서해지구 남북군통신선 정상화사업	예산	-	-	-	939,557	660,967
		집행액	-	-	-	278,590	395,565
		집행률	-	-	-	29.7	59.8

자료: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에 대해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경공업협력사업 및 동해지구남북 군통신선 복원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여건 상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기금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 집행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같이 남북관계 여건 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서해지구 남북군통신선 정상화 사업의 경우 2018년도 대비 약 30%가량 집행률이 증가하는 등 사업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원활해 졌다는 점에서 집행 부진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집행이 부진한 민간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가.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해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승강기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써,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공단은 일정을 조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승강기 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자료: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minwon.koelsa.or.kr>

나. 분석의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정밀안전검사 시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승강기 연수에 따른 단계적 검사기준 마련 및 자체검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밀안전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서 정밀안전검사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접수 신청서를 교부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승강기정밀안전검사는 관리주체의 검사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 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동 검사를 통해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경우 동법 제 32조 2항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법 제80조제2항7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19년도 정밀안전검사 대상 대수로 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수는 43,436대이며, 정밀안전검사는 46,941건이 수행되었다. 최근 5년간 정밀안전검사대상이 된 승강기 수는 총 277,954개이며,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된 대수는 271,844개로 신청 대비 실시비율은 약 97.8%대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승강기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수검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수)	15,052	17,146	124,393	77,927	43,436
수검(수)	14,723	15,423	107,409	87,348	46,941

주: 신청건과 수검건의 차이는 처리기간(40일)에 따른 연도별 검사이월물량 등이 주원인임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만, 승강기정밀안전검사 이후 부적합률을 보면 2015년도 68.1%, 2016년 50.5%, 2017년도 62.7%에서 2018년도 72.8%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70.4%로 전년대비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2017년 법 개정 이후, 부적합률 70%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승강기대 수	노후 대수	정밀안전검 사 대상 대수(A)	정밀안전 검사 실시대수(B)	부적합대 수 (C)	수검률 (B/A)	부적합 률 (C/B)
'15	558,406	136,811	15,052	14,723	10,031	97.8	68.1
'16	598,489	156,667	17,146	15,423	7,787	90.0	50.5
'17	641,435	175,511	124,393	107,409	67,304	86.3	62.7
'18	683,641	196,300	77,927	87,348	63,605	112.1	72.8
'19	718,795	217,606	43,436	46,941	33,046	108.1	70.4

주: 신청건과 수검건의 차이는 처리기간(40일)에 따른 연도별 검사이월물량 등이 주원인임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와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7년도 법 개정 이후, 안전성 검사를 3년에 한번 수검하도록 하여 2015년도 정밀안전검사 실시 대수가 14,723건에서 2019년도 46,941건으로 급증하였고, 경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적합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경우라도 행정·인적 비용이 더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노후화(연식)에 따른 단계적 시행기간 마련 및 부적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관리주체 및 자체점검자로 하여금 정밀안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항상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등의 안전점검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전부개정('19.3.28)에 따라 사고범위를 확대하고 사고, 고장 신고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지금의 수검환경에서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 고장 건(수)가 증가하여 사고건수는 2015년도 61건에서 2019년도 72건으로 증가하였고, 고장건수의 경우 2015년도 1,323건에서 2019년도 8,2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단계적 시행기간 마련 및 자체안전점검 강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고건수	61	44	27	21	72
고장건수	1,323	1,399	710	2,134	8,256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노후화된 승강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 및 고장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승강기정밀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 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도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민주화와 관련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민주화운동의 기록과 기억을 수집·정리한 사료관 운영 등의 지원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예산은 75억 5,7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7,557	7,557	0	0	7,557	7,557	0	0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 분석의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민주화운동인식도의 조사 대상 및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홍보와 정보화사업, 민주화운동정신계승, 민주주의 기반구축, 민주주의 연구사업, 사료관운영, 국제교류협력사업,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지표는 민주화운동인식도와 서비스고객만족도로 이를 통해 사업성과가 산출되고 있다. 이때, 민주화운동인식도는 우리나라 시민

김보은 예산분석관(dtbe2016@assembly.go.kr, 6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2335-300

들의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 운동평가, 민주화 운동 계승 및 참여의식을 측정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 고객만족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기념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 한정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최근 3년 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 달성도 및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 성과달성도('17~'19)]

(단위: 점)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민주화운동 인식도	목표	71.0	71.4	71.6	항목별로 5점 리커트 척도 활용	전국 유효표본 1,000명 이상 무작위 표집, 전화조사
	실적	69.5	68.9	70.2		
	달성도	97.9	97.9	98.0		
서비스 고객만족도	목표	87.2	87.5	87.9	항목별로 11점 리커트 척도 활용	서비스 이용자 대상, 전화조사 (기재부 주관)
	실적	87.9	87.9	조사중		
	달성도	102.9	100.4	-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지만, 민주화운동인식도의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인식도 조사의 표본선정에 한계가 있다. 해당 인식도 조사는 일반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작위로 선별할 경우 해당 사업회의 유무 및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없는 표본이 응답할 수 있어 해당 사업지원의 성과로 인식도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작위 표본 선정이라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회의 교육, 홍보 등의 지원보다는 사회·정치적 이슈 등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의 수가 1,000명으로 매우 작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둘째, 해당 인식조사의 문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로 활용되기에 너무 큰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인식조사는 민주화 관련 인식, 민주화 운동평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참여의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역할, 시

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민주화운동인식조사의 항목별 문항]

구분	문항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	• 민주화 운동 역사 관심도 • 주요 역사 인지도: 4.19 혁명 • 주요 역사 인지도: 부마항쟁 • 주요 역사 인지도: 5.18 민주화 운동 • 주요 역사 인지도: 6.10 민주항쟁 • 주요 역사 관심도 •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수준
민주화 운동 평가	•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긍심 • 민주화운동 인지 중요성 •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	• 민주화운동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관심도 • 민주화운동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필요성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역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사업에 대한 수요 • 민주인권기념관 조성방안
시민의식	•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훈대상자 예우 인지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훈대상자 예우 참반의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방안 •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 필요도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주화운동인식조사의 항목별 문항을 살펴보면, 민주화 운동 역서관심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긍심, 중요성, 사회발전 기여도 등 범주가 매우 넓어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의 지원을 통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기에는 큰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해당 인식도 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회의 지원성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사업회 성과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역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 및 항목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임대주택건립 사업의 연례적인 불용 및
기금계획 변경 지양 필요

가. 현 황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영주체인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공무원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제77조¹⁾와 동법 시행령 제74조²⁾에 따라 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공무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건립 사업³⁾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당초에 421억 200만원의 계획안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35억 5,7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6,4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149억 2,100만원 중 5억원의 불용액을 제외한 14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임대주택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임대주택 건립	42,102	13,557	1,364	0	14,921	14,916	99.9	0	5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기금의 임대주택건립 사업에서는 연례적으로 불용액 또는 기금운용계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6788-3731)

- 1)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 3)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251-361

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2016년 35억 2,900만원에서 2018년 253억 9,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집행률은 2016년 94.7%에서 2018년 20.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9년의 불용액은 5억원으로 계획현액의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421억 2백만원이었던 당초 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35억 5,700만원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건설 사업 결산 내역(2016~2019)]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6	51,541	55,933	11,162	67,095	63,566	94.7	0	3,529
2017	24,844	24,844	0	24,844	14,466	58.2	0	10,378
2018	38,205	33,626	0	33,626	6,871	20.4	1,364	25,391
2019	42,102	13,557	1,364	14,921	14,916	99.9	0	5

자료: 인사혁신처

대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개포 9단지 및 기타 재건축 단지의 사업일정 변경·지연 등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건설 사업 연도별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

(단위: 백만원)

연도	불용액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
2017	10,378	- 개포9단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실시 설계비 24억원 미집행 - 광주염주·원주단계 등 재건축조합 사업일정 변경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 납부시기 연장으로 80억원 미집행
2018	25,391	- 개포 9단지 재건축 인허가 지연 및 인접학교 피해보상 요구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126억원 미집행 - 재건축 참여 단지 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건축 분담금 141억원 미집행

자료: 인사혁신처

2019년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임대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개포9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지연 등에 따른 미집행예상액 등 285억 4,500만원을 자회사 설립 출자금, 노후시설 보수비용, 퇴직급여 부족액 채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2019년 임대주택건설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건설비	공사비	개포9단지	△100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인력 정규직 전환 위한 자회사 설립 출자금 100백만원 확보
			△862	임대주택 매각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전환 세대 노후시설 보수비용 862백만원 확보
	공사비	재건축참여	△4,30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지연 등으로 인한 미집행 예상액 27,583백만원을 퇴직급여 부족액 채원으로 활용
	공사비	개포9단지	△21,180	
	실시설계비		△175	
	감리비		△1,726	
	시설부대비		△196	
	합계	-	△28,545	-

자료: 인사혁신처

2020년에도 임대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정에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개포 9단지와 고덕 8단지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일정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포 9단지와 고덕 8단지의 사업일정 변경 세부 내역]

수립시기		사업일정					변경 사유
		설계 용역사 선정	세부개발 계획(안) 결정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공사 완료	
개포 9단지	당초 계획	'15.10.	'17. 4.	'17.10.	'18. 3.	'21. 6.	-
	'18년 계획	'15.10.	'17.10.	'18. 6.	'18.11.	'21. 9.	1인 소유 단지 재건축 최초사례로 인허가 기관의 주관부서 배정 등 결정 지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 개최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지연

수립시기		사업일정					변경 사유
		설계 용역사 선정	세부개발 계획(안) 결정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공사 완료	
	'19년 계획	'15.10.	'17.10.	'19. 3.	'19. 8.	'22. 9.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지연
고덕 8단지	'20년 당초	'20.04.	'20.12.	'22.06.	'22.11.	'26. 2.	-
	'20년 변경	'20.04.	'21. 6.	'22.11.	'23. 5.	'26. 8.	세부개발수립 입안권자인 지자 체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협의가 필요함에 따른 계획 변경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에 연도별 지출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개포 9단지의 경우 지출금액이 2019년 597억 8,800만원에서 338억 8,300만원으로 259억 5백만원이 감소될 예정이며, 고덕 8단지의 경우에는 당초 22억 2,7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개포 9단지와 고덕8단지의 연도별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개포 9 단지	'17년 계획	662	14,365	54,719	112,901	116,292	0	298,939
	'18년 계획	662	1,149	31,258	60,612	119,752	85,506	298,939
	'19년 계획	662	1,149	7,019	59,788	83,500	146,821	298,939
	'20년 당초(a)	662	1,149	7,019	59,788	103,992	126,329	298,939
	'20년 변경(b)	662	1,149	7,019	33,883¹⁾	65,300	190,926	298,939
	차이(b-a)	0	0	0	△25,905	△38,692	64,597	0
고덕 8 단지	구분	2020 까지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이후	계
	'20년 당초(c)	2,227	590	3,546	8,146	57,197	226,212	297,928
	'20년 변경(d)	51	590	3,546	7,768	56,654	229,319	297,928
	차이(d-c)	△2,176	0	0	△378	△543	3,107	0

주: 1) 교육환경평가에 의한 사업승인 지연, 시공사 선정 후 진행된 서울시의 착공 전 구조안전 및 굴토심의회에서 당초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보완요구, 일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수립한 당초 예산집행계획과 시공사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공정계획 간 괴리 발생 등으로 착공 지연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연례적인 불용액 발생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⁴⁾은 효율적인 정부 예산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임대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정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집행을 함으로써 연례적인 불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의 특성 상 인허가 등 외부요인을 예측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

가. 현 황

도로교통공단¹⁾은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및 자격의 발급·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경찰청 소관 공공기관으로 수지차보전방식의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자체수입 1,844억 1,100만원과 정부 출연금 1,042억 8,500만원을 합한 2,886억 9,600만원의 수입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기술개선, 교통안전교육, 교통방송운영관리, 운전면허시험관리 등에 소요되는 지출이 2,886억 9,600만원 편성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수입	항목	지출
자체수입	184,411	교통안전기술개선	23,354
- 사업수입	170,626	교통안전교육	7,562
- 사업외수입	7,309	교통방송운영관리	16,463
- 기타수입	6,476	운전면허시험관리	40,962
출연금	104,285	교통안전연구개발	3,103
		경영관리 및 지원	197,252
합계	288,696	합계	288,696

자료: 도로교통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경찰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은 사업비에 속하는 내역사업인 ‘경영관리’ 사업을 통하여 세금, 공과금 등의 경상경비 성격의 경비를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영관리 및 지원’ 사업의 연도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1,679억 7,700만원, 경상경비 93억 300만원, 경영관리 199억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영관리 사업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자회사 설립 출자금, 노후청사 개보수 및 시설물 대수선,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지급을 위하여 편성·집행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영관리 및 지원 사업의 연도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경영관리 및 지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인건비	158,752	164,021	167,977	182,684
경상경비	9,087	9,243	9,303	4,478
경영관리	20,570	19,129	19,972	24,087
경영관리 사업의 세부 내역(2019년도 기준)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870), 자회사 설립(출자금) 250, 노후청사 개보수 및 시설물 대수선비(1,715), 경영평가성과급(3,647) 및 경영기획관리, 경영평가관리, 인사관리 등				

자료: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인 경영관리 사업을 통하여 경상경비 성격의 세금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경영평가 관련 비용 등을 편성·집행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사업비인 경영관리 사업을 통하여 편성·집행한 세금과 경영평가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은 사업비에서 2019년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부분(50%) 3억 5,600만원, 2019년 재산세(토지분) 납부 금액 2억 2,600만원 등의 세금을 편성·집행하였으며, 경영평가 관련하여 정부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발간 4,000만원, 2018년도 정부경영평가 상반기 코칭 교육훈련비 700만원 등을 편성·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관리 사업을 통한 세금과 경영평가 관련 비용 집행 현황(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세금	2019년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50%)	356
	2019년 재산세(토지분) 납부	226
	15~18년 건물, 토지 재산세 납부	94
	원주 재산세(토지) 납부	88
	2019년 재산세(건축물) 납부	83
경영평가 관련	2018년도 정부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발간	40
	2018년도 정부경영평가 상반기 코칭 교육훈련비 지급	7
	2018년도 정부경영평가 주요사업 실사대비 교육훈련비 지급	6
	2019년도 정부경영평가 2차 평가전문화 교육훈련비 지급	4

자료: 도로교통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에 적용되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²⁾에 따라,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연례적 경비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영평가 관련 경비는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위반하여 사업비에서 집행하였다.

2)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또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³⁾에 따라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가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사업비인 경영관리 사업에서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인 세금 등을 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운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상운영비 성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에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가. 현 황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¹⁾ 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 도로 운행 시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면허체계 개발 및 AI기반 신호제어, IoT 기반 교통안전시설물 정보 제공 등 첨단 교통인프라 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소관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예산액 37억원을 도로교통공단에 전액 출연금으로 교부하였다.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3,700	3,700	0	0	3,700	3,700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범위에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²⁾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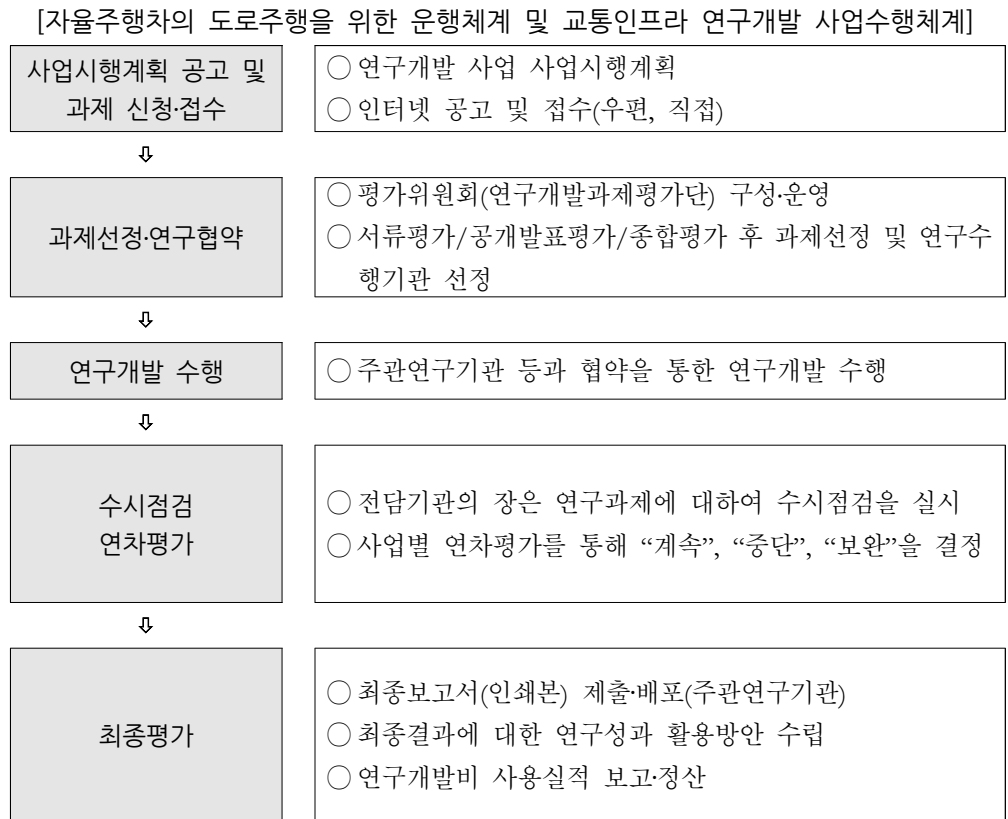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4235-501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전담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수행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동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체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과제 접수 후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구수행기관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 시 수시점검, 연차평가, 최종평가와 향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부여할 수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고유기능에 대한 사업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도 법령 상 사업범위에 연구개발 전담기관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법령상 사업범위인 「도로교통법」 제123조³⁾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연구개발·보급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안전 분야 전담기관의 기능인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개발과 전담기관 기능의 법적 근거]

기능	법적 근거	내용
연구개발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	○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연구개발 전담기관	없음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3)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라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기관의 사업범위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라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타 부처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기능의 법적 근거 현황]

부처	전담기관	법적근거	법률 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제1항제4호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2항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제4항제1호 다목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2호	○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4항제1호	○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산림청	한국임업 진흥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자료: 각 부처·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이라는 법률상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도로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도 타 부처, 기관의 경우와 같이 법령상 근거를 두고 해당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기관의 법령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의 전담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가. 현 황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¹⁾은 날씨와 상관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체험 실내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수행하였으며, 공단은 2019년 예산액 40억 5,200만원 중 3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4,052	4,052	0	4,052	3,763	0	289

주: 집행액은 2020년 4월말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기준이며, 사업 종료 후 반납액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광역시·도가 함께 진행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기준 마련, 기금 교부·정산, 스포츠실 설치 및 활용실태 점검 등 사업을 주관하고 광역시·도는 지방비 매칭 및 설치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7,200만원(국고 50:지방비 50)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운영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나. 분석의견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보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1의 내내역사업

2019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학교로 선정된 104개교 중 설치를 포기한 1개교를 제외하고 2020년 2월 현재 스포츠실이 설치된 학교는 17개교로, 16.5%의 설치율(신청 포기 1개교를 제외한 103개 학교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진행 현황]

(단위: 개)

선정	설치완료	설치 중	발주 중	발주 준비 중	사업포기
104	17	23	14	49	1

주: 2020년 2월 말 기준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까지였으나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하였다.²⁾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일정]

구분	당초 계획	실제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안내	3월	3월
지자체 신청 접수 및 대상 확정	3~6월	4~8월
지원금 교부	4~9월	9~12월
스포츠실 설치	5~12월	10월~현재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1~12월	2020. 12월 완료 예정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확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방비 매칭 후, 대상학교가 업체를 선정·설치하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상현실 스포츠실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고 방학 중에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있으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2018년 사업도 당초 계획인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년 연장된 2019년 12월에 스포츠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 4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¹⁾은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추진되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진흥원은 보조금 10억원 중 인턴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원비용 8억 500만원, 사업운영비 8,800만원 등 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9,951	9,951	929	10,880	8,305	2,360	215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1,000	1,000	0	1,000	893	0	1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동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인턴 1인당 인건비(월 90만원)와 4대 보험 사업자부담분(21만원)을 공방에 지원하고, 공방은 인턴에게 급여(정부 지원 인건비 90만원 포함 월 180만원 이상) 및 공예품 제작 참여, 마케팅, 재무관리, 고객관리 등 공방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공예공방(목·칠, 금속, 도자, 섬유 등) 중 업력 2년 이상으로 기술 및 운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공방이며, 인턴 근무자는 공예분야 전공자 또는 공예경력자, 공예창업희망자로 만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다.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일반회계 1635-311의 내역사업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지원
- 지원내용: 청년공예가(만 39세 미만) 현장실무학습을 위한 인건비 보조
-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인건비 월 90만원 및 공방분 4대보험비 21만원

자료: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공방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을 통한 청년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지원이라는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 지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45명의 인턴이 62개 공예공방에서 근무하였다. 인턴으로 근무한 145명 가운데 25명이 중도에 퇴사하고 120명이 근무기간을 만료하였으며 7명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공예 청년 인턴십 참가 현황]

(단위: 개, 명)

참여 공방 수	인턴십 참여 인원	중도 퇴사	근무기간 만료	공방 직원 채용
62	145	25	120	7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공방 모집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5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인턴 근무기간, 공방당 채용가능한 인턴 수 등 참여조건이 3차례 변경되었다.

인턴 근무기간은 6개월 → 3~5개월 → 2~3개월로 짧아지고 1개 공방 당 채용할 수 있는 인턴 수는 1~2인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뀌었다. 공방 선정기준도 변경되었는데 1~2차 모집에서는 근로조건(공방 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 배양, 40점)과 공방의 전문성(최근 2년간 활동내역, 30점), 지속성(공방 운영 지속 및 채용한 인턴의 고용계획 등, 30점)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하였으나 3차 모집부터는 근로조건(50점)과 전문성(50점)으로 평가하였다.

[공예 청년 인턴십 참여 공방 모집 현황]

차수	모집기간	공방 당 채용 가능한 인턴 수	인턴 근무기간	공방 선정 기준
1차	2019.4.3. ~ 4.22.	1~2인	6개월	근로조건(40)+전문성(30)+지속성(30)
2차	2019.5.8. ~ 5.27.	1~2인	6개월	
3차	2019.7.4. ~ 7.31.	제한 없음	3~5개월	근로조건(50)+전문성(50)
4차	2019.10.14. ~ 12.6.	제한 없음	최대 5개월	
5차	2019.12.10. ~ 12.30.	제한 없음	2~3개월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진흥원은 ① 공예공방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일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 1인당 6개월의 채용기간을 보장하는데 비용 부담이 있고 ② 노동형 성향의 업무형태 및 지방 소재 공방이 많아 인턴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인턴을 고용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공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공방 당 인턴 채용인원은 1~9명까지, 근로계약기간은 1~9개월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도 41건이 있었다.

[인턴별 근로계약기간, 공방 당 채용 인턴 수]

(단위: 명, 개)

근로계약기간	인턴 수	채용 인턴 수	공방 수
1개월	3	9	2
2개월	18	7	1
3개월	20	6	2
4개월	21	5	2
5개월	8	4	5
6개월	27	3	7
7개월	19	2	14
8개월	2	1	29
9개월	27	합계	62
합계	145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인턴들이 공예품 제작 참여, 제품 판매, 고객관리 등 공방업무를 충분히 익히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일자리를 통한 소득 안정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턴을 종료하고 공방에 취업한 인원은 2명(사업종료일 2020. 3. 31. 기준)으로 취업률(2.0%, 채용 2명/계약 만료 120명)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²⁾ 예술산업의 특성상 구인구직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인턴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인턴 사업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편이다.³⁾

인턴 사업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 습득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근로기간 보장, 인턴활동 후 취·창업지원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사업에 참여한 인턴 중 공방 취업자 수는 2020. 7. 14. 현재 11명이라고 하였다. 2019년 사업에 참여한 인턴 중 46명이 2020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지속하여 참여하였고, 이들 가운데 9명이 추가로 공방에 채용되었다는 설명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취업률은 71.4%(2019)이며, 직접일자리(인턴형) 사업의 경우 취업률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사업 14.4%(2017), 등록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15.0%(2017)로 나타났다. [자료: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취업률(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자료),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사업·등록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취업률(국회예산정책처,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2019. 8.)]

가. 현 황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¹⁾ 사업은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관광일자리 활성화, 관광단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예산액 71억 9,400만원을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등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동 사업의 보조사업 중 하나로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포털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비 6억원 중 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포털 운영·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7,194	7,194	0	7,194	7,194	0	0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포털 운영·관리	600	600	0	597	597		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전문인력포털의 이러닝과정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人)은 관광분야의 교육·자격·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구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7

축된 온라인 종합시스템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인 내에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관광종사자(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및 관광특성화고교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인 e-Learning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Learning 과정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호텔실무영어, 호텔실무중국어 등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의 e-Learning 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강좌수	구축시기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32	2016~2019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호텔실무외국어(영어, 중국어)	관광특성화고교 교사 및 학생	24	2017~2018

주: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은 22강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은 20강좌이며 두 과정에 중복게재된 10강좌는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들 과정의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조회 수를 보면 2020년 3월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은 평균 212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은 평균 387회이다. 반면에 어학과정은 평균 43.8회로 이용이 저조하며 1강 조회 수는 호텔영어 248회, 호텔중국어 132회이나 2강부터는 조회 수가 각각 40회로 1강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²⁾

과정별 조회 수의 편차는 교육수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은 온라인 교육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은 안내사 스스로 보수교육을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학습수요가 많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과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집중하고, 강좌별 조회 수 편중이 나타나므로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강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이 저조한 어학과정에

2)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어학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관계로 지속적인 수강 독려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성화고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2020. 10. 예정)하여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해서는 홍보 부족, 콘텐츠 미비 등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 e-Learning 과정의 강좌별 조회 수]

(단위: 건)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강좌명	조회 수	게시일	강좌명	조회 수	게시일
종요	340	2016.2	도성의 성립과 궁궐1	561	2019.4
선정릉	145		도성의 성립과 궁궐2	487	
경운궁	188		한국의 지역별 세계유산1	514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는 전국 음식대전	209	2018.4	한국의 지역별 세계유산2	457	
고기문화사	175		DMZ 평화관광1	392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중세편)1	183		DMZ 평화관광2	396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중세편)2	116		덕수궁과 정동1	442	
열두달 세시풍속	161		덕수궁과 정동2	372	
한국인의 의식주	198		한국의 음식문화1	468	
한글이야기1	189		한국의 음식문화2	458	
한글이야기2	177		한글이야기1	473	
경복궁	549		한글이야기2	404	
창덕궁	385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식주1	524	
창경궁	394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식주2	511	
한양도성의 성립과 궁궐배치1	134	2019.3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중세편)1	558	2019.12.
한양도성의 성립과 궁궐배치2	86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중세편)2	651	
한국의 지역별 세계유산1	109		유교의례의 인문학1	27	
한국의 지역별 세계유산2	82		유교의례의 인문학2	11	
DMZ 평화관광1	160		석탑 속의 불교문화1	18	
DMZ 평화관광2	154		석탑 속의 불교문화2	17	
덕수궁과 정동1	221				
덕수궁과 정동2	317				

자료: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17.)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人) e-Learning 과정의 강좌별 조회 수]

(단위: 건)

호텔실무영어			호텔실무중국어		
강좌명	조회 수	게시일	강좌명	조회 수	게시일
1강	248	2017.12	1강	123	2018.7
2강	40		2강	40	
3강	24		3강	19	
4강	20		4강	22	
5강	16		5강	32	
6강	15		6강	26	
7강	10		7강	22	
8강	10		8강	17	
9강	25		9강	20	
10강	18		10강	25	
11강	24		11강	34	
12강	83		12강	139	

자료: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人) 홈페이지(검색일 2020. 3. 17.)

가. 현 황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¹⁾ 사업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자금 등을 융자하여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2019년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고 사업비 85억원 중 79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8,500	8,500	0	8,500	7,999	0	510
융자금	8,000	8,000	0	8,000	7,624	0	376
민간경상보조	500	500	0	500	366	0	134

주: 2019년 사업 종료일(2020. 2. 29.) 기준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융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이하 “주택자금 대출”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등을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상품이다. 2019년에

김선영 예산분석관(olive114@assembly.go.kr, 6788-3745)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5

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70,314명(2020. 2. 29. 기준) 중 1,497명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사업 현황]

구분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금리	연 2.2% (2020. 1/4분기)	연 1.7% (2020. 1/4분기)
대출용도 및 한도	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임차중도금 등
	5백만 원 이내	8천만원 이내
만기 및 상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최대 8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액	39억 7,700만원	36억 4,800만원
대출 건수	1,440건	57건

주: 2019년 사업 종료일(2020. 2. 29.)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2019.6.24.)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월 단위로 진행되는데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8일에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한다. 주택자금 대출은 총 2회(2019. 11., 2020. 1.) 시행되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정한 기간[2019. 12. 16. ~ 29.(1차), 2020. 2. 11. ~ 28.(2차)]에 입주하는 예술인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9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절차]

대출	구분	신청	심사 및 수령절차	대출 시행
생활안정 자금 대출	이용 절차	○ 온라인 접수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 상담·접수 창구 - 금융기관 :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예술인 융자 상담창구	[심사] ○ 융자관리위원회 심사 [선정 후 절차] ○ 금융교육 ○ 약정서 체결 등	○ 신청계좌 (KEB 하나은행)
	기간	매월 1~10일	[심사] 11~20일 [선정 후 절차] 21~27일	매월 28일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이용 절차	○ 온라인 접수 불가 ○ 직접 대면상담 및 접수 - 금융기관 :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	○ 상동	○ 임대인 계좌
	기간	(1차) 2019.11.18.~28 [2019.12.16.~29. 입주자만 대출 가능]	2019.11.29.~12.13	2019.12.16.~29
		(2차) 2020.1.13.~22 [2020.2.11.~28. 입주자만 대출 가능]	2020.1.28.~2.10	2020.2.11.~28.

주: 2019년 사업 종료일(2020. 2. 29.)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2019.6.24.)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대어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신청과 시행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월 단위로 신청을 받음에 따라 시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은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대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²⁾ 재단이 지정하는 기간에 입주하는 경우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의 대출상품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방문접수·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면창구가 서울에만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예술인들의 대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³⁾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용자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시기의 상시화, 대면창구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자금 대출은 2020. 6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7월 이후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대출의 수시 접수 및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매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수행하는 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대면 상담·접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농어촌공사의 산업단지 분양 실적 저조 등

한국농어촌공사¹⁾는 농어촌 용수관리 및 운영,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 농어촌 지역자원 가치 증진 및 융복합산업 활성화, 곡물 공급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자체 및 정부지원 예산을 통하여 농어촌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수입 3조 7,859억 9,700만원, 부대수입 490억 6,700만원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4,191억 4,200만원, 경상운영비 1,448억 2,100만원, 사업비 3조 2,241억 8,700만원 등을 합한 3조 8,500억 6,400만원 규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2,481,586	2,448,515	3,777,053	3,716,535	3,785,997
	기타사업수입	1,145,284	1,164,882	0	0	0
	부대수입	34,686	261,563	41,956	32,204	49,067
	출자금	15,000	15,000	23,000	20,000	15,000
	차입금	0	0	0	0	0
	기타	124,413	104,333	0	0	0
지출	인건비	374,059	399,585	373,390	414,949	419,142
	경상운영비	142,333	147,699	140,332	146,133	144,821
	사업비	3,162,197	3,196,088	3,246,448	3,177,900	3,224,187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122,380	250,921	81,839	29,757	61,913
수입·지출합계		3,800,969	3,994,293	3,842,009	3,768,739	3,850,06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1.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 실적 저조 부정적

가. 현 황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지원 예산과 자체 자금을 통하여 새만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새만금 지역에 2008~2023년 동안 18,495,346㎡의 산업단지 부지를 총사업비 2조 5,497억 5,000만원을 소요하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사업기간	전체 면적	총사업비	사업시행주체
새만금산업단지	2008~2023	18,495,346	2,549,750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단지는 완공된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의 완공된 분양대상면적 대비 분양된 면적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분양대상 면적인 150.2ha 중 분양된 면적이 없고 2015년은 분양대상 면적인 331.1ha 중 15.3ha가 분양되는 등 분양 실적이 저조하며, 2019년도 말까지 분양된 면적이 총 154.4ha로 전체 완공된 분양면적 대비 46.6%에 불과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의 분양 추세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1단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공 면적의 유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개선 방안이 없는 한 향후에도 전체 면적이 분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의 연도별 분양 현황]

(단위: ha, 백만원, %)

연도	전체 규모	완공 규모 (연도말)	분양대상 면적 (A)	분양면적 (B)	분양금	분양률 (B/A)
2013년 말 까지	1,850	0~184	150.2	64.9	95,516	43.2
2014	1,850	184	150.2	0	0	0.0
2015	1,850	439	331.1	15.3	21,739	4.6
2016	1,850	439	331.1	3.4	17,563	1
2017	1,850	439	331.1	0.9	6,432	0.3
2018	1,850	439	331.1	34.6	37,274	10.5
2019	1,850	439	331.1	35.3	38,544	10.7
합계	1,850	439	331.1	154.4	217,068	46.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주로 일반 분양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면적당 단가가 낮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2)에 따라 최대 100년간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용지가 주로 분양되고 있어, 분양금액도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장기임대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산업용지 조성단가 1평(3.3㎡) 당 68만원의 50%로 분양하고 있어, 다른 산업용지 분양단가 1평 당 50만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장기임대용지가 전체 분양면적 153.9ha의 60.2%인 92.9ha를 차지하고 있고, 분양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비 4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1조(임대기간 및 연장 등)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장하는 경우 연장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전체 대비 장기임대용지 분양 비교]

(단위: ha, 백만원, %)

구분	장기임대용지		전체 분양 (2019년 말 기준)		전체 대비 장기임대용지 비율	
	분양면적 (A)	분양금액 (B)	분양면적 (C)	분양금액 (D)	분양면적 (A/C)	분양금액 (B/D)
분양 현황	92.9	93,397	154.4	217,068	60.2	43.0
분양 단가	○ 1평 당 34만원		○ 산업용지는 1평 당 50만원 ○ 복합용지 등은 감정평가 적용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의 분양률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타 지역 접근성, 인프라 구축 상태 등이 수도권 등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기업 등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단지는 자체자금으로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단지이며 향후 2단계 공사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무구조의 악화로 연결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장기임대용지의 내국인 투자 허용, 중국 등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태국 KRC Thailand.Co.Ltd 현지법인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농어촌공사는 태국의 원격물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국에 KRC Thailand.Co.Ltd를 2016년부터 자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태국 현지법인인 KRC Thailand.Co.Ltd는 동남아 시장 농업 관련 기술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어 태국에 관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농업 관련 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회사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출자금액은 9,800만원이다.

[KRC Thailand.Co.Ltd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법인명	KRC Thailand.Co.Ltd ³⁾
설립일	2016. 5. 31
주요사업	○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의 해외사업 시행, 신규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태국에 주재사무소를 운영 ○ 관개관리정보시스템, 펌프게이트 설치 시범사업, 해수침투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 농업 관련 기술 사업을 추진
출자금액	9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의 태국 현지법인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Thailand)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5월 31일에 해당 법인을 설립한 후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7년은 RID⁴⁾ 원격관측물관리시스템 설치사업(2015~2017)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3억 9,800만원(매출총이익 1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태국 왕립관개청과의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으면서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KRC Thailand.Co.Ltd의 연도별 매출총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매출액	398	0	0
매출원가	212	0	0
매출총이익	186	0	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 KRC Thailand.Co.Ltd 법인이 전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300만원 적자에서 2018년 5,100만원 적자, 2019년 800만원 적자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KRC Thailand.Co.Ltd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당기순이익	△3	△51	△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 태국에 원격관측 물관리시스템을 수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을 이란에 수출하는 등 농업 관련 물관리 기술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태국 사무소는 외국현지법인으로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므로 자회사 현지법인의 손실 규모를 감소시키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태국왕립관개청(RID, The Royal Irrigation Department of Thailand)

가. 현 황

교환분합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¹⁾ 사업은 농업인 상호간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 및 경지정리 사업내 집단환지 청산금 등을 지원하거나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 안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교환분합 내역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 2억 4,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임대용 내역사업의 2019년도 계획액 3,735억 2,000만원 중 3,73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매입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맞춤형농지 지원사업	361,428	373,766	0	0	373,766	373,748	0	18
교환분합	228	246	0	0	246	246	0	0
공공 임대용	361,200	373,520	0	0	373,520	373,502	0	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교환분합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과 실제상 지원단가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예산상 성과목표가 과대 측정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지관리기금 1160-350의 내역사업

2014~2019년도 한국농어촌공사 교환분합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환분합용의 경우 2014년 ha 당 지원단가가 1억 420만원이나 실제 매입단가는 ha 당 1억 8,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실제 단가가 1.73배 높았으며, 2019년 기준으로 ha 당 지원단가가 1억 420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데 비하여 실제 결산단가는 ha당 2억 3,400만원으로 단가차이는 2.25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용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 예산상 지원단가는 ha 당 2억 1,000만원임에도 실제 결산단가는 ha 당 3억 2,1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실제 결산 매입 평균단가가 1.53배로 나타나고 있다.

[교환분합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단위: ha, 백만원, %, 배)

구분	연도	예산			결산			목표 달성률 (C/A)	단가 차이 (D/B)
		면적 (A)	지원 단가 (B)	예산액	면적 (C)	매입 평균 단가 (D)	집행액		
교환 분합	2014	7.2	104.2	746	4	180	745	55.6	1.73
	2015	6	104.2	654	3	226	654	50.0	2.17
	2016	3.9	104.2	406	2	239	392	51.3	2.29
	2017	5	104.2	500	1	188	228	20.0	1.80
	2018	7.7	104.2	800	1	210	172	13.0	2.02
	2019	2.2	104.2	246	1	234	246	45.5	2.25
공공 임대용	2014	709	180	127,754	541	236	127,726	76.3	1.31
	2015	848	180	152,550	624	245	152,534	73.6	1.36
	2016	825	180	148,600	580	256	148,597	70.3	1.42
	2017	1,000	180	180,000	703	256	179,949	70.3	1.42
	2018	1,570	200	314,000	917	284	260,634	58.4	1.42
	2019	1,779	210	373,520	1,165	321	373,502	65.5	1.53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환분합용과 공공임대용 지원단가와 매입 결산단가의 과도한 차이로 인하여, 예산상 목표로 하고 있는 매입물량 대비 실제 달성한 물량의 비율이 교환분합용은

2014년 55.6%, 2015년 50.0%, 2019년 45.5%로 예산 대비 목표달성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임대용의 경우에도 예산 대비 물량 목표달성률이 2014년 76.3%이며, 2015년은 73.6%, 2019년은 65.5%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상 목표가 실제 달성에 비하여 과대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교환분합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실제 매입 시의 결산 평균 단가에 맞추어 예산상 실제 목표로 하는 지원면적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¹⁾는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구매·수입 및 비축·판매, 농수산물 유통산업(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 사업)에 관한 건설 및 운영, 농식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자체 및 정부지원 예산을 통하여 농수산물 비축·유통·수출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수입 3,045억 3,300만원, 부대수입 33억 6,300만원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547억 1,400만원, 경상운영비 274억 9,200만원, 사업비 2,216억 4,900만원 등을 합한 3,087억 1,100만원 규모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285,128	280,353	270,522	326,843	304,533
	기타사업수입	273	471	922	792	815
	부대수입	3,357	2,321	7,947	2,259	3,363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지출	인건비	47,109	47,707	49,001	52,076	54,714
	경상운영비	21,167	19,948	32,195	23,954	27,492
	사업비	211,794	204,925	190,639	242,590	221,649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8,688	10,565	7,556	11,274	4,856
수입·지출합계		288,758	283,145	279,391	329,894	308,71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 제35조제2항²⁾에 따라 청원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교육, 육아휴직, 간병휴직, 국제기구 임시 채용, 동반휴직, 사내벤처 제도에 따른 분사 창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은 청원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해외 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는 임직원의 청원휴직 기간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4항제1호³⁾에 따르면,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청원휴직 규정으로 국제기구 임시 채용, 육아휴직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5호⁵⁾에 따르면 해외 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

2) 「인사규정」

제35조(휴직 및 휴직기간)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준용

3.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이하 생략)

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 5년 동안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6)에 따르면, 임직원이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휴직기간이 유학기간 및 유학전후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해외 유학이라는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휴직 기간의 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유학을 사유로 한 경우 휴직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달리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가공무원과 다른 공공기관의 해외유학 휴직 시 휴직기간 규정]

구분	국가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소관	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인사규정」 제42조제5호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6호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
휴직 기간	국외는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3년 이내	국외는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유학기간 및 유학전후 15일 이내

자료: 「국가공무원법」 및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제작됨

특히, 국가공무원과 다른 공공기관의 해외유학 휴직 시 휴직기간 규정을 비교하면, 한국마사회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국외는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5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휴직기간을 3년으로 최대 인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농

5)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인사규정」

제35조(휴직 및 휴직기간)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5호 이외의 사유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 유학기간 및 유학전후 15일 이내

수산물유통공사는 이와 달리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유학기간 전체를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임직원 해외유학 시의 휴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타경상이전수입¹⁾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된 세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세목의 2019년 징수결정액 2,519억 5,4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목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목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 수입	112,350	112,350	112,350	251,954	251,954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 대비 계획액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의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은 계획액 669억 5,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246억 7,900만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수납율이 186.2%이며, 계획현액 대비 수납율이 2017년 256.8%, 2018년 372.3%이고, 2019년도에는 계획액 1,123억 5,000만원 대비 수납액이 2,519억 5,400만원으로 수납율이 224.3%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 대비 계획액이 과소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세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9-59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도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율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16	66,958	66,958	66,958	125,371	124,679	186.2	692	0
2017	66,958	66,958	66,958	172,513	171,977	256.8	58	479
2018	48,617	48,617	48,617	181,046	181,023	372.3	23	0
2019	112,350	112,350	112,350	251,954	251,954	224.3	0	0
2020	112,350	-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액이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는 이유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반납금이 예산 편성시 예측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6~2019년도 동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액은 보조금 회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보조금 회수액 규모는 2016년 1,246억 7,900만원, 2019년 2,519억 5,400만원으로 실제 계획액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의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수납액 (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B/A)
			보조금 회수	기타 (수익금 등)	
2016	66,958	124,679	124,679	0	186.2
2017	66,958	171,977	171,977	0	256.8
2018	48,617	181,023	181,023	0	372.3
2019	112,350	251,954	251,954	0	224.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금의 수입 계획액이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는 경우 기금의 수입 계획액이 기금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재원에 비하여 과소 계상되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을 위한 사업이 과소 편성되며 기금의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액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실제 수납액에 맞추어 수입 계획액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인프라강화사업¹⁾은 농식품 분야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수출농식품 쿨드체인 구축, 수출 농식품 홍보 지원, 외식산업 수출 지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431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출인프라 강화	43,106	43,106	0	0	43,106	43,106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CON 연계 홍보 사업의 B2B 사업성과 확대 필요

가. 현 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CJ-ENM에서 매년 주최하여 개최하고 있는 K-POP 콘서트 행사인 KCON과 연계하여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식품 등의 시식·시음하는 B2C²⁾ 기반의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KCON 연계 홍보사업의 연도별 운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행사, 1억 2,500만원에서 2019년 4개 행사, 12억 7,500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2) Business To Consumer

[KCON 연계 홍보사업의 연도별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횟수	2	1	1	4
운영비	125	129	106	1,27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KCON 연계 홍보사업의 경우 각국의 바이어가 접근하기 쉬운 주요 도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B2B 사업으로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KCON 연계 홍보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일본 도쿄 88,000명, 미국 LA 103,000명, 태국 방콕 20,000명, 미국 뉴욕 30,000명이 방문하여 B2C 사업으로 홍보 효과는 타 홍보 사업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9년 태국 방콕을 제외하고는 전부 B2C 홍보행사만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국내 농식품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B2B 행사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CON 연계 홍보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천 달러)

연도	KCON 국가	도시	품목	방문자 수	운영비	B2B 현황	
						매출액	계약 금액
2016	일본	도쿄	냉동만두, 은행알 등	33,000	17	0	0
	프랑스	파리	알로에음료, 버섯 등	1,500	108	0	0
2017	미국	뉴저지	라면, 스낵, 음료 등	10,000	129	0	0

연도	KCON 국가	도시	품목	방문자 수	운영비	B2B 현황	
						매출액	계약 금액
2018	태국	방콕	떡볶이, 라면, 고추장 등	23,000	106	0	0
2019	일본	도쿄	유자차, 김치 등	88,000	151	0	0
	미국	LA	김치, 음료, 고추장 등	103,000	148	0	0
	태국	방콕	과실류, 오미자 등	20,000	429	0	8,205
	미국	뉴욕	삼계탕, 장류, 오미자 등	30,000	547	0	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KCON 연계 홍보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B2B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KCON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의 경우 각 국가의 수도나 주요 도시로 해외 바이어가 접근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2019년 KCON 개최 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태국의 수도인 도쿄, 방콕과 미국의 주요 도시인 LA, 뉴욕에서 개최되어 해외 바이어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B2B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KCON 행사의 방문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행사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요 파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KCON 행사 방문자 수는 일본 도쿄의 2019년 방문객은 2016년 대비 5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17년 뉴저지의 경우 10,000명이었으나 2019년 뉴욕의 경우에는 30,000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많은 잠재 수요자를 통하여 제품 선호도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KCON의 경우 대부분 KPOP 가수에 선호를 가지고 있는 젊은 계층으

로 이루어져 있어,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를 파악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계약 의사가 있는 해외 바이어와 우리나라 농식품 업체를 연결하는 B2B 행사로 해당 행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KCON 연계 홍보사업을 B2C 홍보 사업으로 한정하기 보다 B2B 사업으로 확대하여, 농식품 기업의 수출 계약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2.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참여 유인 확대 필요

가. 현 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제 외식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부스임차료(중소기업 100%, 대기업 70% 지원), 장치비, 통역비 등을 동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4~2019년도 동안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8회, 7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5회, 4억 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집행 현황]

(단위: 회,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횟수	8	6	8	8	5	5
집행액	758	549	726	701	469	46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사업의 1회당 해외 바이어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어의 참여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사업의 연도별 해외 바이어 참여 수를 살펴보면, 2014년은 전체 2,205명으로 1회당 275.6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은 전체 1,362명으로 1회당 227.0명이 참여하였으나, 2016년부터 1회당 참가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은 187.8명, 2017년은 169.9명, 2018년은 132.2명, 2019년은 14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1회당 참여 업체 수는 2014년 6.3개에서 2019년 7.8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개 업체당 해외 바이어 수는 2014년

44.1명에서 2019년 18.4명으로 5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박람회로 인한 해외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가능성 등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사업의 연도별 해외 바이어 참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외 바이어 (A)	전체	2,205	1,362	1,502	1,359	661	719
	1회당	275.6	227.0	187.8	169.9	132.2	143.8
참여업체 (B)	전체	50	36	46	60	40	39
	1회당	6.3	6.0	5.8	7.5	8.0	7.8
1개 업체 당 바이어 수(A/B)		44.1	37.8	32.7	22.7	16.5	18.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경우 2017년 기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숙박·음식점업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은 5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산업의 경우 29.2%인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19.1%로 전체에 비해 10.1%p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식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숙박·음식점업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

(단위: %, %p)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전체(A)	65.0	52.8	42.5	35.6	29.2
숙박·음식점업(B)	61.5	44.1	32.8	25.2	19.1
차이 (A-B)	3.5	8.7	9.7	10.4	10.1

자료: 통계청,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19. 12. 12

따라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식프랜차이즈 박람회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의 경우 1회 박람회 당 해외 바이어 참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사업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여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실질적인 해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3. 국제식품박람회 수출 계약성과 미파악 등 성과관리 철저

가. 현 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림수산물축산식품(가공식품 포함)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부스임차·장차·기본비품 등을 지원(중소기업: 100%, 대기업: 50%)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5~2019년도 동안의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46회, 9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59회, 89억 6,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회,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회수	46	56	57	58	59
집행액	9,211	11,030	8,850	9,347	8,96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은 박람회 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인 실제 계약금액(현장, 6개월 후 등) 등을 파악하여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의 2015~2019년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276회의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 6,140개의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하여 474억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그럼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해외 바이어 수, 상담실적 등 투입 지표나 간접적인 성과지표만이 파악되고 있으며, 현장이나 6개월 후에 발생하는 실제 계약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사업의 성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회, 개, 백만원)

연도	횟수	참여업체	집행액	계약실적	
				현장	6개월 후
2015	46	1,071	9,211	-	-
2016	56	1,298	11,030	-	-
2017	57	1,279	8,850	-	-
2018	58	1,324	9,347	-	-
2019	59	1,168	8,963	-	-
합 계	276	6,140	47,401	-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타 부처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 지원 사업의 계약성과 파악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지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제 전시회, 박람회 지원 사업은 현장 및 6개월 후의 수출 계약실적을 파악하여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 및 자재 박람회 지원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국제 도서전 참여 지원 사업도 성과 평가를 위하여 수출 계약실적을 파악하고 있다.

[타 부처나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박람회 지원 사업의 계약성과 파악 여부]

부처	공공기관	사업내용	수출계약 실적 파악 여부	
			현장	6개월 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관련 박람회 지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 전시회, 박람회 지원	○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목재 및 자재 박람회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제 도서전 참여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	×

자료: 타 부처 및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박람회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 계약 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³⁾.

3)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현장 및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실제 계약실적을 조사하는 등 타 부처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¹⁾은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국가별 검역타결 품목 및 신규 타결 품목 중심으로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 목육성지원	2,700	2,700	0	0	2,700	2,7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판촉지원, 미디어마케팅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업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에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B2B상담회, 신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제2파프리카 품목에서는 인삼, 버섯, 유자차, 유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국 검역해소품목 사업에서는 쌀, 김치, 삼계탕, 포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3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의 국가, 품목 지원 현황(2019년)]

내역사업	국가	품목	사업방식
제2파프리카 품목	중국	인삼, 버섯, 유자차, 유제품	온오프라인 관측, B2B상담회, 신상품개발 등
대중국 검역해소품목	중국	쌀, 김치, 삼계탕, 포도	
농산가공	중국	전통주, 면류 등	
민간공모	중국	대중국전략품목 10개품목 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동 사업의 2019년도에 추진한 대중국 대상 수출관측 사업을 살펴보면, 유자차 대상으로 중국 서북지역 대형유통매장 연계 유자차 관측에 2,000만원, 유제품에 대해서는 2019 상하이지사 대중국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추진한 대중국 대상 수출관측 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품목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 육성지원	유자차	2019	중국 서북지역 대형유통매장 연계 유자차 관측	20
	포도	2019	2019 샤인머스켓 포도 온오프라인 관측 마케팅	100
	인삼류	2018	2019 주요 약국매장 연계 홍삼 건강기능성 홍보 관측	50
	유제품	2019	2019 상하이지사 대중국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사업	120
			2019 중국 프리미엄 유통매장 연계 유제품 홍보마케팅	2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관측 지원 사업에서 대중국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관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대중국 대상 홍보·마케팅 품목인 인삼 대상으로 2015년, 2018년, 2019년에 시안, 충칭 등에서 관측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 추진한 대중국 유사 수출판촉 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품목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수출인프라강화 (해외판촉지원)	인삼	2015	중국 인삼류 판촉	10
		2018	중국 인삼류 판촉(시안, 충칭)	32
		2019	중국 인삼류 판촉(길림성, 장춘시)	20
	유자차	2018	중국 유자차 판촉(선양, 랴오닝, 쓰촨성)	67
	유제품	2014	중국 유제품 판촉(4회)	145
		2015	중국 유제품 판촉(9회)	310
		2016	중국 유제품 판촉(7회)	140
		2017	중국 유제품 판촉(9회)	161
		2018	중국 유제품 판촉(6회)	144
		2019	중국 유제품 판촉(8회)	139
	삼계탕	2016	중국 삼계탕 판촉(4회)	143
수출인프라강화 (미디어마케팅)	종합	2015	시안 K-FOOD 페어 연계 홍보CF 방영(유자차, 홍삼, 생우유, 조제분유, 고추장 등)	146
			충칭 CTV K-FOOD CF 방영(유자차, 된장 등)	147
			중국 웹 뉴미디어(동영상채널) 연계 K-FOOD 홍보(조제분유, 생우유, 유자차, 홍삼, 김 등)	93
		2019	현지 인플루언서(왕홍) 연계 온라인 플랫폼(포도, 인삼, 유자차, 삼계탕, 유제품 등)	99
			현지 인플루언서(왕홍) 연계 온라인 플랫폼(포도, 인삼, 유자차, 삼계탕, 유제품 등)	99
			왕홍 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왕홍 블로그·쇼트클립 app ‘도우인’ 활용 배포(삼계탕, 유제품, 주류, 홍삼, 다이어트음료 등)	79
			왕홍 활용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왕홍 블로그·쇼트클립 app ‘도우인’ 활용 배포(삼계탕, 유제품, 주류, 홍삼, 다이어트음료 등)	79
	유자차	2016	동영상플랫폼(유쿠) 연계 CF 방영	142
			청두 K-FOOD 페어 연계 CF 방영	9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유자차 대상으로 2018년 선양, 란저우, 쓰촨성에서 판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제품 대상으로 2014~2019년도 동안 10억 3,900만원을 소요하여 중국 대상 판촉 사업을 추진하였고, 삼계탕도 2016년 대중국 판촉 사업을 실시하였다.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타 내역사업인 미디어마케팅 지원 사업에서는 동 사업의 미디어마케팅 지원 대상인 유자차, 삼계탕, 인삼 등을 대상으로 K-FOOD 페어 연계 홍보CF 방영, 현지 인플루언서(왕홍) 연계 온라인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자차를 대상으로 동영상플랫폼(유쿠) 연계 CF 방영 등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판촉 사업과 국가(중국), 품목(인삼, 유자차, 유제품, 삼계탕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수출인프라강화 (해외판촉지원, 미디어마케팅)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회계/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지역	중국	전체 해외지역
사업내용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등 품목을 대상 - 온오프라인 판촉 - B2B상담회 - 신상품 개발 등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등 등이 포함된 전체 농식품 - 온오프라인 판촉 - CF 방영 등 홍보사업
사업방식	보조	보조
2019 예산액	2,700	5,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유사한 수출진흥사업인 수출인프라강화(2835-304) 사업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인 인삼, 유자차, 유제품, 삼계탕 등을 대상으로 해외판촉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간 유사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삼, 유자차, 유제품, 삼계탕 품목의 온오프라인 판촉 사업은 동 사업과 수출인프라 강화의 해외판촉지원, 미디어마케팅 사업에서 유사·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국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수출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인삼, 유자차, 유제품, 삼계탕 등 품목의 온오프라인 판촉 사업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구매이행보증보험 사업¹⁾은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 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2019년 기준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품소비 및 산업 인프라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예산액 2억 5,000만원 전액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교부하였다.

[구매이행보증보험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9,928	9,928	0	0	9,928	9,928	0	0
구매이행 보증보험	250	250	0	0	250	25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9년도 기준으로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신용거래를 하는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증금액 최대 5,000만원, 보증기간 1년을 기준으로 구매이행 보증보험료를 50% 지원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80의 내역사업

동 내역사업의 2018~2019년도 동안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단계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예산상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지원업체는 18개 업체에 대하여 607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2.4%이며, 2019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 2억 5,000만원 대비 실집행금액이 481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9%로 나타나고 있어,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구매이행보증보험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단계)]
(단위: 개, 천원, %)

연도	예산				결산(실집행)				실집행률 (B/A)
	업체수	업체당 예산액	지원 비율	예산 (A)	업체수	업체당 집행액	지원 비율	실집 행액 (B)	
2018	300	833	50	200,000	18	337	50	6,066	2.4
2019	300	833	50	250,000	13	370	50	4,809	1.9

주: 구매이행보증보험 예산액은 운영비(5,000만원)를 포함하여 작성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소식품업체 입장에서 실제 거래에서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으며, 지원대상이 2019년도 기준으로 중소식품업체 중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축산물가공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업체로 한정되어, 주로 해당 사업을 활용하는 수요가 부족한데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2018~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소식품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중소식품업체 요건을 비교하면, 2018년도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일부 협회 소속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업체로 확대하였음에도, 2019년도 동 내역사업의 실적행
 실적을 감안할 때 여전히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노력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
 나지 않았다.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중소식품업체 요건 비교]

구분	2018	2019
지원 대상 중소식품업체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한국막걸리협회 소속 회원 업체(2018. 2. 28.기준 회원업체에 한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업체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caT) 등록 학교급식공급업체로서, '17년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 － 위 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축산물가공업·건강기능식품제 조업 허가업체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c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18년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 ※ 위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구
 매이행보증보험 지원 사업이 연례적으로 실적행이 거의 되지 않아, 집행부진이 발
 생하는 문제가 있다.

가. 현 황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¹⁾ 사업은 식품 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매입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등이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용자로 지원하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용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계획액 1,048억 9,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식품외식 종합자금	130,000	145,000	0	0	145,000	143,620	0	1,380
식품가공 원료매입 자금	89,000	104,891	0	0	104,891	104,891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자금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을 증액하고 있어,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규모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자금의 2017~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계획액이 868억 8,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없었으나,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51-345의 내역사업

2018년은 당초 계획액 868억 8,000만원에서 143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후 계획액은 1,011억 9,800만원이었으며 2019년은 당초 계획액 890억원에서 158억 9,100만원을 증액 변경하여, 해당 자금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증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자금의 2017~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A)	변경(B)	변경 증액 (B-A)
2017	86,880	86,880	0
2018	86,880	101,198	14,318
2019	89,000	104,891	15,8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자금이 2018~2019년도 동안 연례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중소식품기업 경영 악화와 시중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대된 식품기업의 원료인 국산농산물 구입에 필요한 원물 자금을 융자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사유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

해당 자금의 경우 본예산에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액이 실질적인 수요에 비해 연례적으로 부족한 이유로 인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증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자금의 계획액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연례적으로 증액하기 보다 본예산을 사업 수요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¹⁾에 따라 각 국가의 FTA²⁾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³⁾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용·관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자체수입 2,167억 2,600만원, 정부내부수입 3,800억원, 여유자금 회수분 575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자체수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입 3,445억 3,400만원, 정부내부수입 1,100억원, 여유자금 회수분 2,10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수입은 부담금, 융자원금 회수 등을 주 수입으로 하는 자체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정부내부수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 자금 회수
	부담금	융자 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농특 회계	기금	기타	소계	
2015	9,475	155,445	13,934	37,872	216,726	0	380,000	0	0	380,000	57,517
2016	69,817	163,376	9,897	38,363	281,453	0	343,000	0	0	343,000	78,630
2017	68,660	188,469	10,385	44,938	312,452	0	195,000	0	0	195,000	54,562
2018	91,121	218,602	13,201	32,765	355,689	0	150,000	0	0	150,000	155,142
2019	95,159	198,839	13,871	36,665	344,534	0	110,000	0	0	110,000	210,21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을 사실상 결산잉여금의 형태로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서 반납되는 금액과 농협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반납금액(대여금 반납일

자가 연도 말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말 국고(한국은행 관리)에 수납되었으나 실제 배정되지 못한 금액⁴⁾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연도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예치·운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한국은행 예치금의 2017~2019년도 예치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연초 한국은행 예치금 129억 5,300만원, 연도내 예치금 331억 2,900만원, 해당연도 회수금 129억 5,300만원을 하여 연도말 예치금은 331억 2,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의 예치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한국은행 예치금(연초)(A)	56	588	12,953
해당연도 예치금(B)	588	12,953	33,129
해당연도 회수금(C)	56	588	12,953
한국은행 예치금(연말) (A+B-C)	588	12,953	33,12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타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규정과 유사하게, 한국은행 예치금을 사실상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연도 수입에 연초에 이입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기금의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징수결정 등의 처리를 하고 있다.

4) 한국은행의 국고수납업무절차에 따라 수납일과 실제 배정일은 2영업일 차이가 있으며,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에 수납액이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이 발생한다.

[타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

근거법률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처리 조항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결산잉여금인 한국은행 예치금의 처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타 특별회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국은행 예치금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실상 결산잉여금 성격인 한국은행 예치금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산업 육성지원¹⁾ 사업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승용마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승마대회, 학생승마체험 지원, 승마시설 확충, 말산업 특구 지원, 말고기 생산유통 소비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보조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계획액 30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말산업 육성지원	31,640	30,250	0	0	30,250	30,25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0-1.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정보화 사업 절차 위반 부적정

가. 현 황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시행 내역사업은 승마, 자격검정, 인력개발, 연구현황, 각종 통계 등 말의 사육·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유지·관리·개선하는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계획액 1억 5,000만원을 한국마사회로 전액 교부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3-315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시행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시행	150	150	0	0	150	15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말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됨에도 정보화 예산 관련 사전절차인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심사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관리·운영하는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인 호스피아는 포니클럽, 유소년승마단, 기승능력인증제 등 승마 관련 자료와 승마산업 컨설팅 지원, 말 생산 육성사업, 말산업 인턴십 등의 말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며, 동 내역사업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6

<정보화 사업 적용대상>

-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승마	▪ 포니클럽, 유소년승마단, 기승능력인증제, 정책지원소개 등 ▪ 재활승마 소개 및 신청 등 ▪ 승마체험 : 자원봉사신청, 학생승마체험, 렛츠런승마, 후기 ▪ 농촌승마관광 및 승마행사 캘린더
말산업	▪ 인력양성, 과정소개,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등 ▪ 인턴십소개, 컨소시엄사업 : 사업, 과정소개, 참여신청 등 ▪ 승마산업컨설팅지원, 신청, 자료 등 ▪ 생산육성사업 : 지원안내, 육성마 입,퇴사 신청 등 ▪ 말산업통계 : 말산업 총통계, 말등록, 승마장, 현황 등
마문화사랑	▪ 말산업 속 직업, 놀이교실, 말문화축제, 마문화영상 등

자료: 한국마사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³⁾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에 따라,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정보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6

- 정보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50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화시행계획에 포함⁵⁾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이 2018년 말산업 포털(호스피아) 고도화 및 e-리쿠르팅 시스템 구축, 2019년 리뉴얼 등 여러 차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선이 이루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의 사전협의를 필요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정보화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관계로 정보화 예산 편성 시 요구되는 사전절차인 연도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계속 포함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심사 등도 준수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있어 지침을 위반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동 내역사업이 정보화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하고 정보화 사업에 요구되는 예산 편성 시 지침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5) 보건복지부 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M건강보험 민원상담서비스 기능개선 사업에서 모바일 앱 기능 개발인 ‘모바일 앱의 고객제안 및 상담민원 서브 기능 개발’ 2억 6,500만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2016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민간취업업무지원용 모바일 APP구축’ 사업 7,000만원을 포함시켜, 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예산을 통한 정보화 사업을 소관 부처의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10-2. 전담기관 기능강화 연구용역의 선정, 평가 등 사업수행체계의 공정성 저해 부적정

가. 현 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 제9조⁶⁾에 따른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한국마사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자체 자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2015~2019년도 동안의 말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예산(자체예산,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정부보조금 4억 5,000만원, 마사회 자체 예산 6,050만원을 합한 5억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은 정부보조금 4억 5,000만원, 마사회 자체 예산 2억 3,200만원을 합한 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말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 보조금	마사회 자체	합계
2015	450	61	511
2016	450	83	533
2017	450	58	508
2018	450	280	730
2019	450	232	682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말산업 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는 정부보조금 등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을 내부 연구소인 말산업연구소의 연구원 등 한국마사회 소속 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인 자체 연구과제와 한국마사회가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인 위탁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2015~2019년도 동안 추진한 연구용역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연구과제는 2015년 8개 과제 3억 4,800만원, 2019년 5개 과제 2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한 과제는 2015년 7개 과제 2억 6,400만원, 2019년 4개 과제 2억 3,2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2019년도의 전체 과제 중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과제 비중은 과제수로 볼 때 51.8%, 연구과제비 기준으로는 48.1%로 자체로 절반 가량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의 전담기관 기능강화 연구용역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한국마사회 (A)		한국마사회 외 기관		합계 (B)		한국마사회 비중 (A/B)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2015	8	348	7	264	15	612	53.3	56.9
2016	8	245	3	176	11	421	72.7	58.2
2017	3	96	4	153	7	249	42.9	38.6
2018	5	282	9	512	14	794	35.7	35.5
2019	5	268	4	232	9	500	55.6	53.6
합계	29	1,239	27	1,337	56	2,576	51.8	48.1

주: 연구과제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마사회의 전담기관 기능강화 연구용역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직접 과제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내부 연구사업 규정인 「연구사업관리규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⁷⁾에 따라 연구과제의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말산업 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에는 위원장은 한국마사회 내부 임직원인 말산업육성본부장이 되며, 위원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장 또는 담당 이상의 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정부보조금을 통한 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 연구과제 수행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연구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에 관여하는 내부 임직원이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전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연구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마사회가 자체 추진한 말산업 관련 연구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의 참여를 지양하여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연구용역과제의 평가는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2조⁸⁾에 따라 위원장

7) 「연구사업관리규정」

제4조(설치 등) ① 말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말산업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과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말산업육성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장 또는 담당 이상의 직원
2. 외부위원 :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8)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자체, 공동 및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제4조제5항의 실무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은 말산업연구소 소장, 위원은 부장급 또는 담당 이상의 직원, 연구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어, 연구용역의 평가도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마사회 임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 평가는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4조⁹⁾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에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직접 정부보조금 등으로 추진되는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 임직원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양하여 연구과제 추진 사업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장급 또는 담당 이상의 직원
2. 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9)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4조(연구과제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각각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3. 말산업 인턴 사업의 중도 이탈로 인한 고용유지율 저조 부정적

가. 현 황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의 보조금을 통하여 말산업 업체에 대한 인턴십 제공, 말산업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말산업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5억 3,400만원 중 2억 6,200만원을 연내에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기간 연장을 통하여 202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방식	2019	
			예산	결산
취업지원센터 및 인턴십 제도 운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취업지원센터 운영	보조	534	262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인턴 사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말산업 전문인력의 말사업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기준으로 기본 6개월 ~ 최대 9개월간 매월 인턴십지원금(말사업체) 70만원, 취업유지지원금(인턴)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말산업 인턴 사업의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말사업체	○ 인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정식신고시설(승마시설), 인턴 마사회 재직자보수교육 참가 지원	인턴십지원금 (말사업체) 70만원/월
인턴	○ 고교·대학 말(축산)관련 학과 졸업자(예정자), 말관련 자격소지자 중 신규 취업자, 단기간 근무경력자 및 경력단절자 포함	취업유지지원금 (인턴) 30만원/월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인턴 사업은 참여 인턴의 고용유지율이 중도 이탈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인턴 사업의 연도별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턴인원 45명 중 6개월 후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인원은 51.1%이며, 2018년 전체 인턴인원 56명 중 6개월 후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50%, 9개월 후의 경우에는 17.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9년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67.6%, 9개월 후는 33.8%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지원금에 따라 고용된 말산업 인턴이 중도 이탈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도 연례적으로 고용유지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 인턴 사업의 연도별 고용유지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

연도	인턴인원 (A)	평균 고용기간	평균 보수월액	고용유지(B)		고용유지율 (B/A)	
				6개월 후	9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2017	45	4.5	1,599	23	-	51.1	-
2018	56	4.6	1,876	28	10	50.0	17.9
2019	74	6.0	1,981	50	25	67.6	33.8

주: 1) 2017년 인턴십 사업은 6개월 지원으로 9개월 고용유지인원 미파악

2) 2019년 인턴십 사업은 2020년 6월 기준임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말산업 인턴 사업의 중도 이탈이 발생하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승마운영업체, 말산업 관련 용품 판매업체, 동물병원, 장제업체 등으로 구성된 말산업체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퇴직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 분야 중 축산 분야는 국내 고용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

인 인력 등을 외부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축산 분야에 속하는 말산업의 경우에도 고용된 취업인력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분야 고용현황 관련 자료(2010)에 따르면, 축산 분야에서 외국인 등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41.1%로 전체 기준 1.7%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인 경종 1.1%, 과수 3.2%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축산 분야의 경우 근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국내 인력의 고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농업 분야 인력고용 비중]

(단위: %)

구분	품앗이	인력공급 회사	주변 마을	가족·친족	기타 (외국인 등)	계
전체	15.1	34.6	41.8	6.8	1.7	100.0
경종	20.9	30.2	41.1	6.7	1.1	100.0
과수	16.1	22.6	46.0	12.1	3.2	100.0
축산	5.3	16.9	10.6	26.1	41.1	100.0

자료: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말산업의 특성과 취업 인원이 원하는 근무환경의 불일치로 인하여 말산업 인턴 사업이 목표로 하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기회 제공 및 양성과 말산업체의 우수 인력 채용이라는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인턴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턴 지원금의 확대, 말산업체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마사회¹⁾는 화옹 간척지 제4공구에 사업기간 2008~2023년 동안 총사업비 1,357억원을 소요하여 2023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약 27만평의 면적에 경주마 체류 및 훈련시설, 재활시설 등이 조성된 화옹 호스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월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호스파크의 적정기능 재정립 및 합리적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서울경마장과의 입지 등을 고려한 외마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화옹 호스파크 사업의 계획 변경 현황(2019년 말 기준)]

계획명	화옹 호스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작성자	경마기반개선단
승인일자	2019. 4. 10.
사업내용	○ 부지위치 : 화옹 간척지 4공구(화성시 마도·서신면 일원) ○ 규모/시설 : 약 27만평/경주마 체류 및 훈련시설, 재활시설 등 ○ 사업기간 : 2008~2023, 2023년 12월 개장 예정 ○ 총사업비 : 1,357억원 ○ 주요변경내용 : 호스파크의 적정기능 재정립 및 합리적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 및 서울경마장과의 입지 등을 고려한 외마사로 운영(경주마 재활, 훈련기능 강화시설 등 경주마 관련시설에 집중)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는 화성으로 군공항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말 사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호스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5년 6월 수원 지역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의 타당성을 승인하고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여, 향후 한국마사회의 화옹 호스파크가 위치할 화옹지구에 군공항이 이전될 가능성²⁾이 있는 상태이다.

한국마사회는 화옹 호스파크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킬 예정으로 군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동물에게 생리역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화옹지구가 호스파크를 조성하기에 적합한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마사회는 ‘소음-말간 영향도 조사용역 보고서’의 외부 용역을 통하여 승마장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말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군 비행장 근처에 위치한 승마장의 경우 적응 이전에는 소음으로 인하여 머리를 들어올리거나 귀와 눈을 항공기 소음이 나타나는 곳을 향해 머리를 돌리는 등의 행동양상의 반응이 나타났다.

[승마장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말에 대한 영향]

구분	항목	서산 승마장	청주 승마장	수원 승마장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승마장	승마장 용도	유소년 승마	유소년 승마	엘리트 승마	육종
	승마장 경력	17년	14년 (현지 2년)	22년	3년
	주변환경	고속도로 변	농촌 환경	고속도로 변	소방헬기장 옆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자동차 소음이 들리나 큰 영향 없음	없음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영향 발생되고 있음	헬기의 소음 및 시야 노출에 의한 영향 있음
말	총 마리수	28	9	20	18
	더러브렛	23	7	3	7
	웜블러드	0	1	13	0
	씨수마	0	0	0	7
	기타(한라마, 포니 등)	5	1	4	4
	임신 말	0	0	0	미확인
	신생망아지	0	0	0	2

2) 2020년 6월 기준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구분	항목	서산 승마장	청주 승마장	수원 승마장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비행기	비행장	제20전투비행단 (서산)	제17전투비행단 (청주)	제10전투비행단 (수원)	소방헬기장
	비행기 종류	전투기	전투기	전투기	소방 헬리콥터, 간혹 군용 헬기 운행
	비행장과의 거리	약 5.5 km	3.1 km	3.1 km	근접
	소음 정도	대화 멈춤	대화 멈춤	대화를 멈출 정도 아님	미확인
적응	입식후 비행기 소음에 적응 기간	1-2주	2주	1-2주	6개월
	비행기 소음 적응 횟수	3-4회	3-4회	3-4회	-
말의 행동 (적응 전의 반응)	귀	○	○	×	○
	눈	○	○	×	○
	코구멍	○	○	×	○
	머리	○	○	×	○
	목	○	○	×	○
	소변/배변	×	×	×	×
	코방귀	×	×	×	×
	발길질	×	×	×	×
	기립	×	×	×	○
	걸다가 멈춤	○	×	×	○
	질주	○	×	×	○
	회전	○	×	×	×
	실내마장에 서	×	×	소음 못느낌	×
	마장에서	○	×	×	×
	마방에서	×	×	×	×
	사람과 운동시 이상행동	×	×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용역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1~2주 간의 적응 이후에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말의 특별한 행동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공항의 소음이 화옹 호스파크에서 훈련되는 경주 말 등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에서도 비행기 소음과 함께 시각적인 자극이 함께 있는 경우 예민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공비행이나 헬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해당 용역은 군공항 근처에 위치한 4개 승마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표본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지금까지 승마에 한정하여 소음 영향을 분석한 경우는 없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19년까지 처리된 사건 4,312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3,644건으로 전체 대비 85.0%를 차지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에 대한 소음 평가도 신중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원인별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기타
2019년도 까지	4,312 (100%)	3,644 (85%)	224 (5%)	98 (2%)	254 (6%)	92 (2%)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화성으로 군공항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하여 말 사육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호스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마사회는 과천, 부산, 제주에서 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장(본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경마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님에도 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한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인원과 매출액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조 3,572억원이며, 입장인원은 1,271만 3,000명 수준이다.

[한국마사회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인원 현황]

(단위: 억원, %, 천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실적	77,322	77,459	78,015	75,376	73,572
	증감률	1.1	0.2	0.7	△3.4	△2.4
입장인원	실적	13,617	13,168	12,930	12,680	12,713
	증감률	△11.0	△3.3	△1.8	△1.9	0.3
당기 순이익		2,439	2,300	2,227	1,828	1,449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의 경마본장에 비하여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과도하여,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투표권 구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외발매소는 과도한 도박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경마 이용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마본장(경마공원)의 경우 도박 외의 다수의 공원시설, 관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레저 및 오락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나, 장외발매소는 경마본장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레저 및 오락 기능이 부족하며, 대부분 도심 및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행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장외발매소의 과도한 도박과 주민의 근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2008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¹⁾의 ‘사행산업 이슈별 문제점’에서도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가 갖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 기보다는 베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행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장외발매소는 본장과 거리적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허용되어 장외발매소는 오로지 ‘베팅’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및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여가(레저) 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²⁾에서도 장외발매소는 현장과 비교하여 여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불건전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도박 중독자 양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경우 장외발매소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의 70~80%를 장외발매소 매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어,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도박의 사행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 매출액 보다 경마본장의 매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경우 경마본장의 수입보다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의 비중이 연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경마공원 1조 6,000억원, 장외발매소 3조 7,11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69.9%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경마공원 2조 1,870억원, 장외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p. 48, 2008.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pp. 18~19, 2018.

발매소 5조 1,710억원으로 전체 대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70.3%로 2006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어, 한국마사회는 여전히 경마 매출액의 70% 정도를 장외발매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연도별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경마공원(A)	장외발매소(B)	합계(A+B)	(B)/(A+B)
2006	1,600	3,711	5,311	69.9
2007	2,007	4,533	6,540	69.3
2008	2,314	5,108	7,422	68.8
2009	2,150	5,136	7,287	70.5
2010	2,129	5,447	7,577	71.9
2011	2,210	5,576	7,786	71.6
2012	2,179	5,660	7,840	72.2
2013	2,109	5,545	7,655	72.4
2014	2,158	5,488	7,646	71.8
2015	2,425	5,307	7,732	68.6
2016	2,395	5,350	7,746	69.1
2017	2,301	5,500	7,801	70.5
2018	2,229	5,308	7,538	70.4
2019	2,187	5,171	7,357	70.3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1인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경마공원의 경우 2014년 1인당 452,000원에서 2019년 471,000원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장외발매소는 2014년 1인당 매출액 521,000원에서 2019년 641,000원으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1인당 경마 투표권을 구입하여 베팅하는 금액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도박 사행성의 심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마사회의 1인당 매출액 연도별 현황]

연도	매출액(A) (백만원)		입장인원(B) (명)		1인당 매출액(A/B) (천원)	
	경마공원	장외 발매소	경마공원	장외 발매소	경마공원	장외 발매소
2014	2,158,473	5,487,929	4,772,690	10,523,467	452	521
2015	2,425,172	5,307,050	5,342,584	8,274,361	454	641
2016	2,395,474	5,350,459	5,218,826	7,949,070	459	673
2017	2,301,411	5,500,042	4,961,419	7,968,177	464	690
2018	2,229,373	5,308,255	4,641,776	8,038,702	480	660
2019	2,186,688	5,170,547	4,644,505	8,068,468	471	641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현장과 비교하여 여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도박의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을 감소시키고 경마본장의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R&D 정책개발, 농림축산식품부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 93억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9,354	9,354	0	0	9,354	9,354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1.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통한 기관 운영 관련 정보화 사업 영역비 집행 규모의 확대 부적정

가. 현 황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2)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410

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사업담당관) ③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담당관과 협의의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비의 5퍼센트 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일부분을 사업관리비로 받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사업관리비 규모는 연구개발비 1,935억 4,800만원(총 16개 과제)의 3.0%인 57억 3,800만원으로 편성·집행되어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관리비 현황(2019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A)	사업관리비(B)	기평비율(A/B)
농생명산업기술개발	23,903	651	2.7
첨단생산기술개발	28,505	866	3.0
수출전략기술개발	13,010	224	1.7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7,794	249	3.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0,981	472	2.2
기술사업화지원	7,181	125	1.7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13,581	434	3.2
Golden Seed 프로젝트	40,726	1,833	4.5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6,355	100	1.6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4,321	81	1.9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5,558	72	1.3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2,843	88	3.1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3,159	89	2.8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5,631	162	2.9
1세대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기술개발	5,750	167	2.9
세대 스마트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	4,250	125	2.9
합 계	193,548	5,738	3.0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나. 분석의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 운영을 위한 용도로 지원받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사업의 2019년도 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8억 8,000만원, 경상경비 21억 1,300만원과 기관고유사업비로 R&D역량제고사업비 5억 2,700만원, 정보화추진사업비 2억 8,300만원, 신기술 및 우수기술 인증사업비 2억 5,000만원 등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해당 사업을 통하여 집행이 필요하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2019년도 예산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예산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354
■ 인건비	5,880
- 인건비	5,680
- 증원인력 인건비	200
■ 경상운영비	2,113
■ 기관고유사업비	1,361
- R&D역량제고사업비	527
- 정보화추진사업비	283
- 녹색인증평가사업비	19
- 신기술 및 우수기술 인증사업비	250
- 농식품R&D총괄조정·평가사업비	93
- 기록물관리 및 DB구축사업비	1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정부의 기관 운영 출연금 예산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활용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의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용역의 계약금액 7억 7,400만원 중 5억 원을 기관 운영 출연금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통하여 집행하였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례적으로 정보화 사업비의 일부를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로 집행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연도별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집행			A/B
				출연금	사업 관리비 (A)	합계 (B)	
2015	정보화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15. 5. 15 ~ 2016. 3. 17	618	518	100	618	16.2
2016	2016년 정보화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2016. 3. 18 ~ 2017. 3. 17	590	415	175	590	29.7
2017	2017년 FRIS시스템 및 정보자원 통합 운영관리	2017. 3. 18 ~ 2018. 3. 17	644	494	150	644	23.3
2018	2018년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통합 운영관리	2018. 3. 16 ~ 2018. 12. 31	568	356	200	568	35.2
2019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2019. 1. 16 ~ 2019. 12. 31	774	274	500	774	64.6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대상인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홈페이지 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경영관리시스템의 관리와 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프린터 등의 정보자원의 유지·관리로 용역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은 일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에 관련되는 정보시스템 개선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용역의 약 60%를 기관운영 출연금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의 전체 계약금액 중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로 집행된 비율이 2015년 16.2%에서 2016년 29.7%, 2019년 64.6%로 높아지고 있어, 기관운영 출연금 예산 외로 집행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영역의 유지·관리 범위]

구분	종류	유지·관리 범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대표 홈페이지(국문, 영문), 농림수산물 R&D통합정보서비스, GSP 홈페이지(국문, 영문),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농식품R&D 과제관리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 KRI인력 연계시스템, NTIS연계시스템, FRIS 연계시스템, 연구비카드 연계시스템
	경영관리	○ 포탈시스템, 통계정보, 경영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마이오피스, 웹 메일시스템, 대용량 이메일 발송시스템, 온라인 문자 발송시스템, 온라인 메신저
정보자원	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랙,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	○ 상용SW 및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사무기기	○ PC, 프린터, 노트북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18. 11

특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사업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정보화사업추진비 예산(2억 2,400만원) 이외에도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통하여 정보화 관련 사업비를 부분이 추가로 존재하여, 국회 입장에서 예산 편성 시에 실제 필요한 정보화 사업비 규모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관리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관 운영 부분이 포함된 정보화사업비로 집행되는 비율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2.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를 통한 내부 직원 국외 교육훈련비 편성 집행 필요

가. 현 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도별 기관운영 출연금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기관운영 출연금은 인건비 58억 8,000만원, 경상운영비 21억 1,300만원, 기관고유사업비 13억 6,100만원을 합한 9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운영 출연금의 기능별 분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기관운영비	8,912	9,354	10,326
- 인건비	5,434	5,880	6,349
- 경상운영비	1,916	2,113	1,966
- 기관고유사업비	1,562	1,361	2,0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기관고유사업비로 경상운영비 성격인 내부 직원의 국외 교육훈련비를 집행한 문제가 있어, 향후 경상운영비에서 해당 부분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고유사업비를 활용하여 내부 연구원, 행정원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 연수, 출장 등을 교육훈련비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7~2019년도 동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고유사업비에서 집행된 내부 직원의 국외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호주 R&D 벤치마킹 연수’ 1,180만원,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사업화 연수 참가’ 840만원

과 2019년 ‘선진지 농업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출장’ 250만원, ‘2019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 R&D 사례 조사 연수’ 985만원 등의 국외연수에 관련된 교육훈련비를 기관고유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고유사업비를 통한 내부 직원 국외연수 집행 현황(예시)]

(단위: 천원)

연도	국외 연수	기간	비목	집행액
2017	호주 R&D 벤치마킹 연수	2017. 3. 26~4. 1	교육훈련비	11,800
	2017년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 R&D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	2017. 7. 16~22	교육훈련비	9,605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사업화 연수 참가	2017. 10. 20~28	교육훈련비	8,400
	중국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참가	2017. 11. 13~ 7	교육훈련비	7,604
	미국 우수 R&D연구소 및 기업 해외 연수	2017.11. 26~12. 3	교육훈련비	6,300
2018	2018년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 R&D 사례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2018. 5. 12~20	교육훈련비	9,996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외 R&D기획·관리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2018. 9. 1~30	교육훈련비	5,762
2019	선진지 농업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출장	2019. 2. 22~28	교육훈련비	2,497
	2019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 R&D 사례 조사 연수	2019. 5. 12~18	교육훈련비	9,846
	스페인 마드리드 박람회 참석 및 K-SEED DAY 개최 국외 출장	2019. 10. 20~24	교육훈련비	3,070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적용되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³⁾에 따라,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 대상 해외연수 비용은 경상경비의 성격이 강한 경비로 기관고유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⁴⁾에 따라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가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기관고유사업비에서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경상운영비(일반관리비에 포함)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운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향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내부 직원 관련 국외연수 비용을 기관고유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에서 편성·집행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4)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13-3.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과 임직원 주거 복리후생 확대에 의한 차입금 규모 증가 부적정

가. 현 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본청을 2019년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2019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단기차입금 규모를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연초 차입금 1억 4,800만원과 신규 차입금 7억 3,800만원을 합한 8억 8,600만원 규모이며, 장기차입금은 연초 차입금 76억 3,700만원과 신규 차입금 45억 1,000만원에서 차입금 상환액 1억 1,800만원을 차감한 120억 2,900만원으로 차입금 총액은 129억 1,400만원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차입금의 기능별 분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차입금 규모				이자율 (평균)	연간 차입금 이자비용
	연초 차입금 (A)	2019년 신규 차입금 (B)	2019년 차입금 상환 (C)	2019년 말 차입금 규모 (D=A+B-C)		
단기차입금	148	738	0	886	2.25	20
장기차입금	7,637	4,510	118	12,029	2.53	304
합계	7,785	5,248	118	12,914	2.51	324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과 직원 사택 임차 등으로 인하여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차입금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을 차입금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2015~2019년도 연도별 차입금을 연말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20억 6,100만원, 2016년 19억원, 2018년 77억 8,500만원, 2019년 129억 1,4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차입금 이자비용도 2015년 3,300만원에서 2018년 9,700만원, 2019년 3억 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도별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차입금 규모				연간 차입금 이자비용	이자율 (평균)
	연초 차입금 (A)	신규 차입금(B)	차입금 상환(C)	연말 차입금 (D=A+B-C)		
2015	0	2,088	27	2,061	33	1.61
2016	2,061	384	545	1,900	50	2.65
2017	1,900	486	83	2,303	50	2.17
2018	2,303	6,533	1,051	7,785	97	1.24
2019	7,785	5,248	118	12,914	324	2.51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2015~2019년도 신규차입금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의 경우 지방이전 차입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총 14억 100만원이며, 장기 차입금은 지방이전 부지 구입비 20억 5,200만원, 지방이전 공사비와 사택구입비 112억 8,600만원을 합한 13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신규차입금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신규차입금 규모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2015	2,088	36 (지방이전 차입이자 지급 등)	2,052 (지방이전 부지 구입비)
2016	384	384 (지방이전 차입이자 지급 등)	0
2017	486	84 (지방이전 차입이자 지급 등)	402 (지방이전 건물 공사비)
2018	6,533	159 (지방이전 차입이자 지급 등)	6,374 (지방이전 건물 공사비)
2019	5,248	738 (지방이전 차입이자 지급 등)	4,510 (지방이전 건물 공사비, 사택구입비)
합계	14,739	1,401	13,338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차입금과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규모가 증가하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⁵⁾에 따른 종전부동산인 기존 청사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경기도 안양시 우양빌딩 4층~7층에 위치한 청사(종전부동산)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약 16차례의 입찰 공고(4개 층의 입찰공고 가격은 48억 3,100만원)를 하였으나 매각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존 청사 입찰공고 횟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공고일시	2014. 2. 20	2014. 4. 14	2014. 8. 18	2014. 10. 14
구분	5차	6차	7차	8차
공고일시	2015. 3. 10	2015. 5. 13	2015. 9. 3	2016. 1. 18
구분	9차	10차	11차	12차
공고일시	2017. 2. 20	2017. 11. 29	2018. 3. 13	2018. 5. 2
구분	13차	14차	15차	16차
공고일시	2018. 6. 14	2019. 6. 12	2019. 7. 24	2019. 12. 6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특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종전부동산 입찰공고 가격은 48억 3,1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비와 부지 구입비에 못 미치고 있어, 매각이 완료된 경우라도 차입금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전부동산 입찰공고 가격]

구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전부동산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건물	우양빌딩 4~7층
입찰공고가격 (2020년 5월)	4,831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기존 청사는 전체 건물이 아닌 일부 층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매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향후에도 매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둘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19년 나주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관장 관사 및 임차사택을 마련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2019년 신규 차입금 52억 4,800만원 중 청사 이전에 따른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장 관사 및 임차주택 비용은 2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신규차입금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차입금 중 기관장 관사 및 임차주택 관련 비용(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내용	집행금액
기관장 관사	기관장 관사 매입	200
임직원 주택	임차주택 전세 계약금 등 지급	1,858
합 계		2,058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 주택 구입금액은 기관장 관사 3억 5,500만원과 임차주택 25채의 18억 5,800만원을 합한 22억 1,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관사 및 주택 구입 현황]
(단위: 채, 백만원)

위치	주거형태	건물수	구입 방식	구입금액
기관장	아파트	1	소유	355
임차주택	다세대	25	전세	1,858
합 계				2,213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내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관사와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차입금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기관이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전부 부담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차입금 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수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운영출연금과 연구개발을 관리하면서 지급받는 사업관리비에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한 수입은 없는 상태이며, 매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 청사의 매각 없이는 특별하게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차입금 확대에 의한 이자비용의 증가도 새로운 차입금의 도입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어, 기존 청사 매각 지연과 임직원 대상 주거 복리후생의 확대는 지속적인 차입금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 정부 부담의 증가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기존 청사의 매각 지연과 임직원 대상 주거 복리후생의 확대에 의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차입금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차입금 상환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¹⁾은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다부처 종자 개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중 25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Golden Seed 프로젝트	26,199	26,199	0	0	26,199	25,337	0	8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 품목은 연구개발 계획 당시 1,2단계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기간 2012~2021년 10년 동안 1단계(2013~2016년, 4년), 2단계(2017~2021년, 5년)로 나누어 정부 부분인 농림축산식품부 2,153억원, 해양수산부 745억원, 농촌진흥청 975억원, 산림청 112억원을 합한 3,985억원과 민간 부담 부분 926억원을 재원으로 총사업비 4,911억원 규모로 추진한 종자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401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글로벌 시장 개척형 종자, 품종보호 전략종자 개발을 위한 5개 사업단을 지원하여 수출 전략 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채소종자사업단(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과 원예종자사업단(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사업 등 5개 사업단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내용]

구분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2012~2021년 — 1단계(2013~2016년, 4년), 2단계(2017~2021년, 5년)
총사업비	○ 총사업비 4,911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2,153억원, 해양수산부 745억원, 농촌진흥청 975억원, 산림청 112억원 — 민간 부분 926억원
사업내용	○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 품종보호 전략종자 개발을 위한 5개 사업단 지원을 통해 수출 전략 종자 20개 이상 개발 — 채소종자사업단(고추, 배추, 무, 수박, 파프리카) — 원예종자사업단(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 수산종자사업단(넙치, 바리과, 전복, 김) — 식량종자사업단(벼, 감자, 옥수수) — 종축사업단(돼지, 닭)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각각 종자 수출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 일부 품목의 목표 달성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채소·원예 분야의 수출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2단계 목표(2021년 기준) 대비 수출 실적 달성률이 토마토의 경우 42.5%로 높은 편이나, 백합은 7.9%, 수박은 11.1%, 배추는 20.2%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감귤은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1단계부터 수출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버섯은 포자변식으로 인한 유전자원 유출 우려로 2단계부터 수출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계획상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토마토를 제외한 고추, 배추, 무 등의 품목이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박의 경우에는 목표 대비 약 37.5%에 불과한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채소·원예 분야 성과 현황]

(단위: 만 달러, %)

품목	목표		실적		
	2019년 계획상 목표 (A)	2단계 목표 (2021년) (B)	2019년 실적 (C)	2019년 목표 대비 달성도 (C/A)	2단계 대비 달성도 (C/B)
고추	1,270	3,900	1,211	95.4	31.1
배추	980	3,590	725	74.0	20.2
무	590	1,650	482	81.7	29.2
수박	565	1,915	212	37.5	11.1
파프리카	110	360	79	71.8	21.9
양배추	716	1,990	519	72.5	26.1
양파	545	1,150	392	71.9	34.1
토마토	424	1,000	425	100.2	42.5
백합	75	393	31	41.3	7.9
합 계	5,275	15,948	4,076	77.3	25.6

주: 버섯과 감귤은 종합계획상 2단계 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함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채소·원예 분야 작물 종자의 2단계 최종 목표 수준 수출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전체 품목이 2019년 기준으로 연도말 계획상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에도 최종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설정하였던 종자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판로지원 사업¹⁾은 창업 초기업체의 시제품 판매를 위한 판매점 제공 등 판로 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 및 소비자 반응 확인 등 사전 테스트를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예산액 9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판로지원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지원	9,480	9,480	0	0	9,480	9,480	0	0
판로지원	960	960	0	0	960	96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제품 판매관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인한 폐업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 벤처창업 제품의 시장 테스트 효과가 적절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동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시제품을 판매하는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제품 판매관의 2017~2019년도 동안의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도의 경우에는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시제품 판매관 1점을 운영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50-344의 내역사업

하였으며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포함)는 2억 1,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연간 매출액은 2,500만원이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제품 판매관의 운영비 및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위치	판매관명	인원	운영비	연간 매출액
2017	서울 양재aT센터	붐붐마켓(1호점)	2	215	25
	소계		2	215	25
2018	서울 양재aT센터	붐붐마켓(1호점)	2	146	55
	부산 국제시장	붐붐마켓(2호점)	2	92	51
	소계		4	238	106
2019	서울 양재aT센터	영농하계(1호점)	2	138	40
	부산 국제시장	영농하계(2호점)	2	101	4
	전주시 한옥마을	영농하계(3호점)	2	227	83
	소계		6	466	127

주: 영농하계 1호점(양재)은 2019년 12월 폐점, 영농하계 2호점(부산)은 2019년 7월 폐점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이마트물 읍인읍 매장 운영(매출액 4,600만원 발생) 중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양재 aT센터, 부산 국제시장, 전주시 한옥마을에 3개의 시제품 판매관을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4억 6,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매출액은 1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제품 판매관의 매출액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영농하계 1호점(양재)을 2019년 12월에 폐점하였으며, 영농하계 2호점(부산)은 2019년 7월에 폐점하여, 실제 제품을 구입하는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동 내역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제품의 시장테스트, 홍보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제품 판매관은 운영 순이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시제품 홍보 및 시장테스트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제품 판매관이 시장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매출 수요가 확보되는 지역에 입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창업 시제품의 홍보 및 시장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시제품 판매관이 입점하도록 하고 홍보 등 매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에 대한 AGM¹⁾ 검사, 항만지역의 예찰방제 작업, AGM 관련 교육홍보,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국외생산지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수입 59억 9,400만원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33억 7,000만원, 경상운영비 15억 1,000만원, 기타 39억 9,100만원을 합한 88억 7,100만원 규모이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5,171	5,116	5,594	5,915	5,994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부대수입	0	0	0	0	0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기타	2059	3017	2702	4,541	2,877
지출	인건비	2,620	2,714	2,938	2,983	3,370
	경상운영비	963	1,894	876	1,367	1,510
	사업비	0	0	0	0	0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3,647	3,525	4,482	6,106	3,991
수입·지출합계		7,230	8,133	8,296	10,456	8,871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AGM)

나. 분석의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내부 임직원 중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 제31조제1항2)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파면·해임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를 일 정기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 제13조제5항3)에 따라,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 봉월액의 8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원인무효로 처리된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직위해제 사유 및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 지급 규정을 살펴 보면, 국가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봉월액의 70% 지급하고 형사사 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전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에는 연 봉월액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의 경우에도 직무능력을 이 유로 한 징계 사유와 달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한 이후에는 연봉월액 대비 지급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3 개월 이전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나,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5

2) 「인사규정」

제31조(직위의 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개월 이내
2. 파면·해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확정 판결 또는 징계 의결시 까지

3) 「보수규정」

제13조(휴가, 휴직, 대기, 직위해제, 징계기간 중의 보수) ⑤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원인무효로 처리된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전액지급한다.

할을 지급하여, 타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 보수의 감액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 보수 지급 규정 비교]

구분	규정	직무수행능력 부족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3개월 이전	3개월 이후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
국제원산지 정보원	「보수규정」 제18조	기본연봉월액 80%	기본연봉월액 50%	기본연봉월액 30%
한국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	연봉월액의 8할	연봉월액의 8할	연봉월액의 5할
해양환경 공단	「직원보수규정」 제11조	연봉월액의 8할	연봉월액의 8할	연봉월액의 5할
국제식물 검역인증원	「보수규정」 제13조	연봉월액의 8할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타 공공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금품비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도 타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하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위해제 사유의 정도에 따라 보수의 감액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⁴⁾에 따라 준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제6항⁵⁾에서는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

4)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인사운영) 기타공공기관은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지침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43조를 준용한다.

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최소한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연봉월액 감액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국가공무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내부 임직원 중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 보수의 감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⑥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현 황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¹⁾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213억 7,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21,378	21,378	0	0	21,378	21,378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사업기간 2012~2017년도 동안 총사업비 5,535억원을 소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광암리, 동촌리 및 왕궁리 일원에 232만m²(7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판매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는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식품 등 식품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용지 150만m²,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용지가 9만m², 상업용지 3만m², 주거용지 8만m²와 도로, 저수지 등 기반시설용지 63만m²을 합한 232만m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6-35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용지별 현황]

(단위: 만㎡)

구분	입지 시설	면적
산업용지	○ 핵심전략식품, 글로벌 식품, 물류, 연구, 일반식품, 연관산업	150
기업지원 시설용지	○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지원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클러스터진흥원	9
상업용지	○ 상업시설	3
주거용지	○ 주거시설	8
기반시설용지	○ 도로, 저류지, 폐기물처리, 녹지 등	63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용지의 입주율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저조한 상태이며, 계획 대비 매출액 등 성과도 저조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용지(외국인투자지역 포함) 면적 대비 식품기업, 연구소 등의 입주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용지 조성면적 1,512천㎡ 대비 실제 분양면적은 2017년 368천㎡, 2018년 479천㎡, 2019년 586천㎡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면적 대비 분양률은 2017년 24.3%, 2018년 31.8%, 2019년 39.2%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전체 산업용지 중에서 절반도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분양 실적 현황]

(단위: 천㎡, %)

연도	조성 면적	산업 용지 (A)	실제 분양면적 (연도말 기준)			분양기업수			분양률 (B/A)
			식품 기업	연구소	합계 (B)	식품 기업	연구소	합계	
2017	2,321	1,512	366	2	368	49	1	50	24.3
2018	2,321	1,512	479	2	481	68	1	69	31.8
2019	2,321	1,495 ²⁾	584	2	586	89	1	90	39.2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용지 중에서 외국인 식품기업이 입지가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개의 기업만이 입주하여 전체 임대가능면적 116천㎡ 대비 23천㎡이 임대되어 전체 대비 임대율이 19.9%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분양 실적 현황(2019)]

(단위: 천㎡, %)

연도	임대가능면적 (A)	외국인 기업 분양면적			임대기업수			임대율 (B/A)
		식품 기업	연구소	합계 (B)	식품 기업	연구소	합계	
2019	116	23	0	23	1	0	1	19.9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7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목표로 2020년 까지 기업 150개, 연구소 10개 입주와 고용인원 22,000명, 매출액 15조원 등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목표 대비 실제 성과를 비교하면, 연구소 목표는 10개였으나 2019년 말 기준 1개가 입주하여 달성률이 10%에 불과하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2020년까지 22,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고용인원(사업장 종업원 수)은 1,293명으로 목표 대비 5.9%로 달성률이 최초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개, 명, 십억원)

구분	기업	연구소	고용인원	매출액
2020년 목표(A)	150	10	22,000	15,000
실제(B) (2019년)	89	1	1,293	561
달성률 (B/A)	59.3	10.0	5.9	3.7

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소필지 분할 분양)에 따라 7천㎡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입주율이나 최초 목표 대비 고용인원, 매출 등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배후수요가 부족하며, 수도권과 먼 지역에 입지하여 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입지조건이 불리하고,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의 생활을 위한 병원, 문화시설, 주택시설 등이 부족하여 정주여건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는 1평(3.3㎡) 당 약 50만원에 상당하는 높은 분양단가로 인하여 국내외 식품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요인³⁾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입주율, 고용인원, 매출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분양활성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다만, 201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준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가. 현 황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¹⁾ 사업은 한식진흥 기반강화,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 해외확산 지원 등을 통한 한식 홍보 및 보급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9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9,858	9,858	0	0	9,858	9,858	0	0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한식진흥원은 경상경비인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하여 연도말에 시공테크 공사 비용 및 정보화 관련 장비 구매비 등의 자본 성격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식진흥원의 동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

이동업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110-300

2)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56
320-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³⁾에 따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보조(320-07)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식진흥원도 예산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경상보조비에서는 공사비, 정보화 관련 장비 구매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식진흥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하여 자본적 성격인 경비인 ‘한식문화관 시공테크 공사대금’ 4억 600만원, ‘한식문화관 임대보증금’ 3억 4,100만원, ‘2019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2억원을 합하여 연도말에 공사비, 임대보증금, 정보화 장비 취득에 9억 4,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식진흥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한 연도말 자본적 성격 경비의 집행]

(단위: 백만원)

비목	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민간경상보조	2019. 12. 13	한식문화관 시공테크 공사대금	406
	2019. 12. 13	한식문화관 임대보증금 납부	341
	2019. 12. 30	2019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200
	합 계		947

자료: 한식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식진흥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연도말에 민간경상보조비를 자본형성 용도인 공사비, 임대보증금, 장비구입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20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 보조(320-07)목으로 편성

가. 현 황

축산물등급판정지원¹⁾ 사업은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실시하여, 축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그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계획액 178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산물 품질관리	43,078	42,424	0	0	42,424	42,424	0	0
축산물등급 판정지원	18,443	17,833	0	0	17,833	17,833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법적 근거 없이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장기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지표 제공으로 유통구조 개선 및 꿀 수입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8-330의 내역사업

꿀 등급판정의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생산자로부터 생산현황을 제출받아 양봉농협 등 등급판정 시행업체의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거쳐 꿀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사업추진체계]

대상자	단계	세부내용
생산자	생산현황제출	농장명,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사육군수, 꿀벌 수, 드럼통 보유 수, 직전 및 당해 연도 밀원별 생산량, 채밀일자 등 생산이력제 현황 제출
등급판정 시행업체 (양봉농협 등)	등급판정 대상 꿀 구매 및 생산 이력현황 등록	생산 이력관리가 가능한 농가에서 생산된 꿀 구매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시행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축평원 품질평가 사입회하에 시행업체 품질관리원이 해당 드럼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력번호 스티커를 드럼에 부착 및 봉인한 후 품질검사 의뢰
	등급판정 소분 신청서	시행업체 경영자는 드럼단위 등급판정결과를 확인하고 꿀 등급판정 프로그램의 전산망을 통하여 소분 신청서 제출
	생산이력번호 및 확인표시	등급판정 신청된 시료에 생산이력번호 부착
품질검사 기관	꿀 품질검사	- 채취된 시료 중 생산이력번호가 부착된 꿀에 대해 품질검사 실시 - 등급판정의 신청 접수일자, 품질검사 실시일자, 품질검사 결과 등을 전산망에 입력
	품질검사 결과서 제출 및 알림	품질검사기관은 등급판정 신청된 꿀에 대해 생산이력번호별로 품질검사 후 해당 결과를 축평원장 및 시행업체에 제출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꿀 등급판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사업이 장기간 연장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축산법」 제35조²⁾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³⁾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말·닭 및 오리의 도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꿀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꿀 등급판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해외 꿀 수입에 대비하여 국내 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4년도부터 꿀 등급판정 사업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양봉업체 간의 수분 함유량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꿀 등급판정 사업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20년 6월까지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꿀 등급제에서 평가하고 있는 수분 함량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드럼 단위 판매시에는 수분 함량이 20% 이하인 경우 1+ 등급을 부여하고, 25% 초과한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양봉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급 판정의 수분함량 기준이 엄격하여 매출액에

2)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말·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경우 꿀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꿀 등급판정 제도의 수분 함량 항목의 기준]

등급판정 항목	품질등급		
	1+(Premium)등급	1(Special)등급	2(Standard)등급
수분	20% 이하	20% 초과~ 25% 이하	25% 초과
	(단, 소분 판매시에는 20% 이하로 적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범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확보나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본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기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처럼 약 6년 6개월(2014~2020. 6)이라는 장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진하는 꿀 등급판정 사업에 참여하는 물량이 저조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사업의 전체 생산물량 대비 참여 물량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체 생산량 79,000드럼 중 1,895드럼이 참여하여 전체 대비 참여 비율은 2.4%이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 76,667드럼 중 4,844드럼이 참여하여 전체 대비 참여 비율은 6.3%로 나타나고 있어, 양봉농가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실적이 저조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꿀 등급판정 사업의 참여 물량의 연도별 현황]

(단위: 드럼,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생산량(A)	79,000	48,000	50,333	32,333	76,667
참여(B)	1,895	5,237	8,986	3,200	4,844
미참여	77,105	42,763	41,347	29,133	71,823
전체 대비 참여 비율 (B/A)	2.4	10.9	17.9	9.9	6.3

주: 꿀 생산량은 공식 집계된 통계가 없으며, 한국양봉협회 통계를 인용함(1드럼 300kg 적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축산물품질평가원 꿀 등급판정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꿀 등급판정 제도는 소와 돼지와 달리 자율참여제도로 양봉농가나 유통업자인 양봉농협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범사업인 꿀 등급판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사유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한국양봉협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기준과 달리 자체적으로 꿀에 대한 등급 판정을 운영하여, 판정 물량이 분산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판정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양봉농가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쌀소비활성화¹⁾ 사업은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쌀 섭취
식습관 교육, 박람회 참여 등 쌀 소비 활성화 홍보 사업을 통하여 쌀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6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쌀소비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쌀소비 활성화	6,400	6,400	0	0	6,400	6,4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홍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
을 위한 홍보사업에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홍보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2019년 동 사업을 통하여 쌀 소비 촉진 광고인
‘쌀 소비 활성화 광고캠페인’, ‘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언론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쌀소비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로 ‘2019 쌀 홍보 오프라인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9

기획전', '농업박람회 쌀 홍보부스',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 '농업박람회 쌀 홍보부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쌀소비 촉진 홍보 사업 현황(2019)]

구분	세부내용
쌀소비 촉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 쌀 소비 활성화 광고캠페인
	○ 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언론홍보
	○ 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온라인홍보
쌀소비 촉진 행사	○ 쌀 간식데이 운영
	○ 2019 쌀 홍보 오프라인 기획전
	○ 우리 쌀 한마당 운영
	○ 농업박람회 쌀 홍보부스
	○ 어린이 놀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
연구용역	○ 쌀 활용 R&D 조세지원방안 연구용역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은 2010~2019년도 동안 이러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 등 홍보에 약 462억원을 소요하여 쌀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쌀소비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3,000	2,000	2,000	4,000	4,000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6,000	6,000	6,400	6,400	6,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쌀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을 2010~2019년도 동안의 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기준으로 2010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72.8kg이었으나, 2019년도 기준으로 59.2kg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의 쌀소비 촉진 홍보 사업의 예산이 10개년도 동안 462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체 기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61.0kg에서 59.2kg으로 1.8kg 감소하여, 최근 5개년도 동안(2015~2019년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의 연도별 현황]

(단위: kg,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인당 쌀 소비량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8	61.0	59.2
쌀소비 홍보 예산 (2131-369)	3,000	2,000	2,000	4,000	4,000	6,000	6,000	6,400	6,400	6,400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쌀 공급 과잉²⁾을 해소하기 위하여 쌀 소비량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추이를 볼 때 동 사업의 홍보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소비량의 감소가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서구화, 식사 대체용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면, 홍보 사업을 축소하여 다른 방식의 쌀소비 촉진 관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쌀 소비 촉진의 홍보 사업을 통하여 쌀 소비 증대가 가능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홍보 사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 기준 쌀 연말 재고량은 188만 8,000톤이 발생하여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쌀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을 쌀 공급 조정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쌀생산 조정 사업(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10-310)은 2018,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벼가 아닌 수급에 영향이 적은 두류 및 조사료,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에 따라 일정 금액(조사료 1ha 당 430만원 등)을 지원하여 쌀 공급의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홍보 사업 목적인 쌀 소비촉진과 관련성이 부족하다.

[쌀생산 조정 사업(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대상농지	○ 2018,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농지,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2017~20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대상품목	○ 수급에 영향이 적은 두류 및 조사료, 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유도하되, 수급불안 우려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 제외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 다만, 2018, 20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지원단가	○ 조사료 1ha 당 430만원, 일반·녹비작물 1ha 당 270만원, 두류 1ha 당 255만원, 휴경 1ha 당 21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그럼에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2017년도까지는 동 사업의 예산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 오프라인 홍보 행사 등에 집행하였으나, 2018~2019년도 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조정 사업(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쌀 생산조정제 정책 홍보 용도로 집행한 현황(2018~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쌀생산 조정제 홍보	2018	쌀 생산조정제 정책 참여 독려 홍보 등	20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배포	29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제작	18
	2019	쌀 생산 조정제 정책 참여 독려 매체홍보(농민신문사 등)	71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배포(우편)	19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제작	19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배포사업 대금	10
	합계		18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구체적으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2018~2019년도 동안 ‘쌀 생산조정제 정책 참여 독려 홍보’, ‘쌀 생산조정제 정책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쌀 생산조정 사업을 홍보하는 용도로 1억 8,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이므로,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쌀 공급의 감소를 도모하는 타 사업(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생산 조정 사업(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110-310)이 2018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음에도 해당 제도와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유사한 동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동 사업의 사업목적인 쌀소비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용도인 타 사업을 홍보하는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1

울산항만공사 광고선전비 부적정 집행 등

울산항만공사¹⁾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 예산을 통하여 항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 수입 982억 5,600만원, 부대수입 31억 7,800만원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106억 400만원, 경상운영비 92억 4,900만원, 사업비 285억 7,100만원 등을 합한 1,710억 8,800만원 규모이다.

[울산항만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74,030	82,397	84,787	92,314	98,256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부대수입	4,712	11,294	15,214	2,309	3,178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45,000	30,000	0	0	0
	기타	32,021	45,431	41,554	57,537	69,654
지출	인건비	7,238	8,509	8,208	9,153	10,604
	경상운영비	7,269	7,135	7,910	8,659	9,249
	사업비	83,763	84,435	34,816	35,526	28,571
	차입상환금	2,351	2,861	3,542	3,542	3,542
	기타	55,142	66,182	87,079	95,280	119,122
수입·지출합계		155,763	169,122	141,555	152,160	171,088

자료: 울산항만공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해양수산부 소관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1. 광고선전비를 활용한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협회비, 출장비 등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에 적용되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러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내부 예산 관리지침인 「예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2)에 따라 사업예산의 경비 성질에 따라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등 내부 편성비목을 정하고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울산항만공사는 광고선전비 편성비목을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협회비, 출장비로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에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용도인 협회비, 내부 직원 출장비 등으로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협회비로 울산항만공사의 기관장이 참석하고 있는 제31차 국제항만협회(IAPH³⁾) 세계총회 참가 등록 협회비 788만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내부 임직원 국외 출장에 사용된 제31차 국제항만협회(IAPH)세계총회 국

2) 「예산관리규정」

제6조(예산과목) ① 예산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하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계정과목에 의한다.

② 사업예산제 기준 지출예산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관(분야) : 기능 중심으로 분류
2. 항(프로그램) : 본부 중심으로 분류
3. 세항(단위사업) : 부서 중심으로 분류
4. 세세항(세부사업) : 부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분류
5. 목(예산과목) :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분류
6. 세목(내역) :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목별 세부내역으로 분류

3) 국제항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IAPH)

외 여비 516만원, 선진항만견학 및 해외항만 개발 확인 국외출장 504만원, 미국 해양경비대 시애틀 본부 방문 비용 151만원, 수상식참가 항공권 구입비 128만원 등이 광고선전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는 울산항만공사는 광고선전비로 창립기념일 및 연말 업무유공 내부 사장표창 대상자 부상 등으로 48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광고선전비 부적정 집행 현황(예시)]

(단위: 천원)

편성목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광고선전비	협회비	제31차 IAPH 세계총회 참가 등록	7,876
	국외출장비용	제31차 국제항만협회(IAPH)세계총회 국외 여비 지급	5,163
		선진항만견학 및 해외항만 개발 확인 국외출장	5,040
		미국 해양경비대 시애틀 본부방문 비용	1,807
		제 31차 국제항만협회(IAPH)세계총회 국외 여비 지급(항공권, 여행자보험, 취급수수료)	1,604
		국외출장-ASOCIO ICT Award 수상식참가 여비	1,591
		미국 해양경비대 시애틀 본부방문(항공권, 취급수수료, 숙박료)	1,511
		ASOCIO ICT Award 수상식 참가 항공권 구입	1,278
		미국 해양경비대 시애틀 본부방문 국외여비	1,038
	학술대회 지원	2019년 (사)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분담금	3,000
	연말 또는 창립기념 유공자 포상	창립기념일 및 연말 업무유공 내부 사장표창 대상자 부상 등	480

자료: 울산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의 광고선전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내부 예산관리지침 등에 따라 기관의 홍보 성격에 맞는 용도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울산항만공사는 협회비용이나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내부 임직원의 국제항만협회나 선진항만건축 등의 국외 출장비나 유공자 포상비로 집행하여 광고선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사)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분담금의 경우에도 학술대회 지원으로 행사비 성격이 강하며 기관 홍보인 광고선전비와의 관련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울산항만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내부 예산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광고선전비를 기관 홍보와 관련성이 부족한 협회비, 출장비로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1-2. 울산항만공사 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효과 미흡 부정적

가. 현 황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기능, 역량, 사업 등을 해외의 항만 이해관계자 등에 홍보하기 위하여 해운·항만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양·항만 관련 박람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는 타켓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항만 마케팅 사업을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2019년도 동안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한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의 건수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항만공사는 2019년도 기준으로 2건의 마케팅을 5,700만원의 예산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울산항만공사의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는 3,000~6,000만원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연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1	2	3	2	2
예산	46	28	48	53	57

자료: 울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분석의견

울산항만공사의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사업은 울산항 실적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2015~2019년도 동안의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사업으로 인한 계약 체결량이나 물동량의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울산항만공사는 2015~2019년도 동안 ‘인도해양투자 박람회’,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 ‘플라즈 아시아 병커링 & 액체화물 저장 컨퍼런스’ 등 여러 해양·항만 분야의 박람회·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화물 계약이나 울산항 물동량의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타켓마케팅과 포트세일즈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연도별 타켓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사업의 효과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마케팅 방법	예산	집행	실제 효과	
					계약 체결	물동량 증가
2015	국제항만협회IAPH 컨퍼런스 참가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46	46	0	0
2016	인도해양투자 박람회 참가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17	13	0	0
	아시아 물류해양 컨퍼런스 참가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11	11	0	0
2017	국제항만협회IAPH 컨퍼런스 참가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31	29	0	0
	플라츠 아시아 벅커링 & 액체화물 저장 컨퍼런스 참가	행사 참가 및 발표	13	13	0	0
	아시아물류 해양 컨퍼런스 참가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	4	4	0	0
2018	2018 아부다비 국제 석유가스 산업전 참가	울산지역 기업 연계 홍보 부스 운영	40	39	0	0
	중국 국제포워더 컨퍼런스 참가	PA 공동부스(홍보관) 운영	13	13	0	0
2019	제31차 IAPH 세계총회 참가	PA 공동부스 (홍보관) 운영/ 광저우항 MOU체결	46	45	0	0
	중국 국제포워더 컨퍼런스 참가	PA 공동부스(홍보관) 운영	11	10	0	0

자료: 울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울산항의 2015~2019년도 연도별 선박입항 척수를 살펴보면 2015년 25,705척에서 2019년 23,723척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화물처리 물량은 2015년 190,870천톤에서 2017년 202,346천톤으로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는 202,383천톤으로 최근 정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과 화물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포트세일즈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울산항만공사의 항만 마케팅 사업의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항의 연도별 선박입항 및 화물처리 물량 현황]

(단위: 척, 천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선박입항	25,705	25,199	24,034	23,285	23,723
화물처리	190,870	197,611	202,346	202,862	202,383

자료: 울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울산항만공사는 연례적인 동일 박람회·컨퍼런스의 참여보다 적극적으로 항만운영사 등 해운·항만 관계자의 연계를 바탕으로 실제 실적의 향상이 기대되는 타겟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 마케팅 사업의 계약 실적 현황을 현장, 6개월 후까지 관리하고 물동량 증가를 측정하여 성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울산항만공사는 타겟마케팅 및 포트세일즈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 등을 위한 실제적·적극적 항만 마케팅 추진, 성과 측정 방안의 마련 등의 항만 마케팅 사업의 효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부산항만공사 국제선용품센터 물류창고 입주 실적 저조 등

부산항만공사¹⁾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와 정부지원 예산을 통하여 항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 수입 3,428억 800만원, 부대수입 14억 600만원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172억 2,700만원, 경상운영비 214억 5,300만원, 사업비 3,154억 8,700만원 등을 합한 6,156억 8,500만원 규모이다.

[부산항만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314,100	347,069	338,119	328,615	342,808
	기타사업수입	0	0	0	0	0
	부대수입	3,162	1,627	637	1,317	1,406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0	440,000	70,000	350,000	170,000
	기타	219,314	114,416	179,367	20,324	101,471
지출	인건비	11,635	12,948	13,376	17,453	17,227
	경상운영비	40,164	51,963	16,834	16,150	21,453
	사업비	303,911	177,574	353,140	316,722	315,487
	차입상환금	0	390,000	120,000	200,000	100,000
	기타	180,866	270,627	84,773	149,931	161,518
수입·지출합계		536,576	903,112	588,123	700,256	615,685

자료: 부산항만공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해양수산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이다.

2-1. 국제선용품센터 물류창고 입주 실적 저조

가. 현 황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선용품업체들을 집적인 공동물류 창고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선용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도 남항동 소재 국유지에 국제선용품센터를 2012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선용품센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번길에 위치하며 면적은 대지 26,119.60㎡ / 건축 10,266.85㎡ / 연면적 33,455.21㎡ 규모로 지상사무동 5층과 창고동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용품 관련 업체의 사무실, 창고(냉동·냉장·공동물류·일반), 전시장, 회의실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선용품센터 세부 현황]

구분	세부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번길 (남항동2가)
면적	대지 26,119.60㎡ / 건축 10,266.85㎡ / 연면적 33,455.21㎡
건물형태	지상사무동 5층, 창고동 3층
주요시설	사무실, 창고(냉동·냉장·공동물류·일반),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식당, 편의점, 주차장(362대 수용) 등
지역지구	자유무역지역 지정

자료: 부산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부산항만공사는 국제선용품센터 냉동·냉장창고 및 공동물류 창고의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선용품센터의 2015~2019년 동안 입주대상면적 대비 실제 입주면적의 현

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입주대상면적 32,168㎡ 대비 입주면적이 22,877㎡로 전체 대비 71.1%가 입주 완료되었으나, 국제선용품센터의 입주율이 최근 70%에서 80% 수준으로 상승하여 전체 대비 입주율은 2016년 72.3%, 2017년 81.9%, 2018년 81.9%, 2019년 81.7%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선용품센터의 연도별 입주대상면적 대비 실제 입주면적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개, ㎡)

연도	기능	입주대상면적		입주면적		입주율 (B/A)
		호실 수	면적 (A)	업체수	면적 (B)	
2015	냉동·냉장창고	2	1,086	9	895	82.4
	중량물창고	1	6,182	0	0	0.0
	사무실	66	11,313	52	9,423	83.3
	일반창고	68	12,804	39	12,559	98.1
	편의시설	3	783	0	0	0.0
	합계	139	32,168	100	22,877	71.1
2016	냉동·냉장창고	2	1,086	7	863	79.5
	중량물창고	1	6,182	0	0	0.0
	사무실	66	11,313	53	9,605	84.9
	일반창고	68	12,804	39	12,805	100.0
	편의시설	3	783	0	0	0.0
	합계	139	32,168	99	23,273	72.3
2017	냉동·냉장창고	2	1,086	8	895	82.4
	공동물류창고	1	6,182	2	3,654	59.1
	사무실	66	11,313	51	9,263	81.9
	일반창고	68	12,804	38	12,523	97.8
	편의시설	3	783	0	0	0.0
	합계	139	32,168	99	26,335	81.9
2018	냉동·냉장창고	2	1,086	8	895	82.4
	공동물류창고	1	6,182	2	3,654	59.1
	사무실	66	11,313	51	9,263	81.9
	일반창고	68	12,804	38	12,523	97.8
	편의시설	3	783	0	0	0.0
	합계	139	32,168	99	26,335	81.9
2019	냉동·냉장창고	2	1,086	3	697	64.2
	공동물류창고	1	6,182	2	3,654	59.1
	사무실	66	11,313	52	9,753	86.2
	일반창고	68	12,804	36	11,476	89.6
	편의시설	3	783	2	708	90.4
	합계	139	32,168	95	26,288	81.7

자료: 부산항만공사

그러나, 냉동·냉장창고는 2015년 전체 입주대상면적 1,086㎡ 대비 895㎡이 입주하여 전체 대비 입주율이 82.4%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 입주대상면적 1,086㎡ 대비 697㎡이 입주하여 입주율이 64.2%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공동물류창고(기존의 중량물창고)도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입주대상면적 6,182㎡이 전부 미입주 상태였으며, 전체 대비 입주율이 2016년 0%, 2017~2019년 59.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선용품센터의 물류창고 입주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선용품센터의 물류창고 중 냉동·냉장창고와 공동물류창고의 입주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냉동·냉장창고의 경우에는 입주한 선용품 관련 업체 중 신선식품 등을 취급하여 냉장창고가 필요한 기업의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미입주 면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동물류창고의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영세업체를 집적화하여 공동배송을 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수요가 부족하여 미입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수요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제선용품센터의 물류창고 입주실적이 저조한 경우 센터 설립 취지인 유통구조의 개선과 선용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산항만공사의 운영 수익성을 악화시키므로, 부산항만공사는 물류창고 입주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부산항 신항 부두운영사 외국 국적 비율 과다 및 통합 운영 필요

가. 현 황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에 사업기간 1995~2040년 동안 총사업비 19조 3,368억원(정부 8조5,355억원, 민자 10조 8,012억원)의 규모로 부두 57선석, 방파제 6.09km, 호안 33km, 도로 7.14km, 철도 54km, 부지조성 1,126백만㎡ 규모로 수리조선단지, 해경정비창, LNG병커링 등이 포함된 부산항 신항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선석 개발·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부두 21선석이 운영 중이며 남컨(2-4단계) 3선석, 서컨(2-5단계) 3선석, 서컨(2-6단계) 2선석을 합한 총 8선석이 개발 중이다.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선석 개발·운영 현황]

구분	운영중	공사중 (2019년 말 기준)
계	21선석	8선석
컨테이너 부두	북컨(1-1단계) : 6선석 북컨(1-2단계) : 3선석 북컨(2-1단계) : 4선석 남컨(2-2단계) : 4선석 남컨(2-3단계) : 4선석	남컨(2-4단계) : 3선석 서컨(2-5단계) : 3선석 서컨(2-6단계) : 2선석

자료: 부산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분석의견

부산항 신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부산항 신항은 다수의 부두운영사가 존재하여 하역료 협상력이 약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9년 말 기준 부산항 신항의 부두운영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 직접 운영을 포함한 총 7개의 부두운영사가 23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어, 부산항 신항 1개 부두운영사 당 약 3.3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의 부두운영사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개, m²)

구분	위치	운영중인 선석	항만 운영사	사용 (임대) 면적	사용 (임대)기간
컨테이너 부두	북컨 (1-1단계)	3	A	840,000	2009 ~ 2039
	북컨 (1-1단계) (1-2단계)	3(1-1) 3(1-2)	B	1,210,000	2007 ~ 2056
	북컨 (2-1단계)	4	C	688,000	2009 ~ 2039
	북컨 (2-2단계)	4	D	553,000	2010 ~ 2040
	북컨 (2-3단계)	4	E	785,000	2012 ~ 2042
기타 부두	다목적 (자동차)	1	F	60,000	2009 ~ 2020
	다목적 부두 (컨테이너/ 일반화물)	1	공사 직접	72,372	2018 ~ 2021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와 부산항 신항의 1개 부두운영사 당 평균 운영선석 현황을 비교하면, 상하이항의 경우 전체 선석수 48개에 운영사가 7개로 1개 부두운영사 당 6.8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바이항은 전체 선석수 28개에 운영사가 3개로 1개 부두운영사 당 9.3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어, 부산항 신항의 1개 부두운영사 당 선석 운영수가 외국의 주요 항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운영 중인 선석수가 14개이며 부두운영사가 3개로 나타나고 있고, 1개 부두운영사 당 4.7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어, 부산항 신항의 경우에는 북항에 비해서도 부두운영사 1개당 운영 선석이 소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부산항 및 해외 주요 항만의 부두운영사 선석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해외 주요 항만			부산항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부산항 북항	부산항 신항
전체 선석수(A)	48	62	28	14	24
부두운영사(B)	7	8	3	3	7
1개 부두운영사 당 선석수(A/B)	6.8	7.7	9.3	4.7	3.4

주: 부산항 북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통합운영사 설립 이전임

자료: 외국 항만 자료는 2018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바탕으로 제작성

이처럼 다수의 부두운영사가 소규모로 선석을 운영하는 체계는 최근 글로벌 선사와 해운동맹이 인수·합병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역료의 과다 경쟁으로 가격 협상력의 약화가 발생하고 환적 화물의 불필요한 이동이 증가되며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등 부산항 신항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의 경우에 통합운영사의 출범 등 부두운영사 선석 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건설될 선석에 대해서도 최대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항 신항은 북항에 비하여 해외 국적의 부두운영사 비중이 큰 측면이 있다.

부산항 신항 및 북항의 부두운영사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석수 기준으로 볼 때 북항의 경우 전체 부두운영사 운영 선석수 14개 중 5개가 해외 국적 부두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어 해외 비중이 35.7%이나, 신항의 경우 전체 선석수 23개 중 15개가 해외 국적 부두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어 해외 비중이 65.2%로 북항에 비하여 신항의 해외 국적 항만운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볼 때, 북항의 경우 해외 국적 부두운영사가 전체 면적 중 23.0%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항의 경우에는 해외 국적 부두운영사가 전체 면적 중 73.8%를 운영하고 있어, 해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항 신항 및 북항의 부두운영사 국적별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개, m²)

구분		국내	해외(A)	전체(B)	해외비중 (A/B)
북항	운영사	2	1	3	33.3
	선석	9	5	14	35.7
	면적	2,086,022	624,154	2,710,176	23.0
신항	운영사	3	4 (1개사는 공동)	7	57.1
	선석	8	15	23	65.2
	면적	1,103,500	3,111,500	4,215,000	73.8

주: 우리나라와 외국계 국적 기업이 공동운영하는 1개 부두운영사는 지분에 따라 선석수와 면적을 구분하여 산정함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글로벌 해외 부두운영사가 부산항 신항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부산항의 항만경쟁력과 선진 항만운영 기술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부산항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염려가 있으며 국내 항만산업의 해외 잠식이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부두운영사의 향후 통합에 있어서도 해외 부두운영사가 다수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개선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3

인천항만공사의 홍보 효과가 미흡한 행사 추진 지양 필요 등

인천항만공사¹⁾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항의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통하여 항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2019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부지원 수입 2,815억 1,600만원, 차입금 810억원 등이 있으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192억 200만원, 경상운영비 506억 3,400만원, 사업비 2,899억 5,700만원 등을 합한 4,595억 1,400만원 규모이다.

[인천항만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정부지원수입	155,328	136,976	139,427	150,045	281,516
	기타사업수입	0	0	0	110,438	0
	부대수입	1,598	1,052	9,507	1,370	0
	출자금	0	0	0	0	0
	차입금	55,000	40,000	30,000	140,000	81,000
	기타	20,398	17,600	17,486	24,951	96,998
지출	인건비	13,953	13,521	13,890	16,521	19,202
	경상운영비	20,154	20,672	18,135	19,391	50,634
	사업비	179,614	139,668	134,656	212,254	289,957
	차입상환금	0	0	0	30,000	0
	기타	0	0	0	0	99,721
수입·지출합계		232,324	195,628	196,420	426,804	459,514

자료: 인천항만공사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해양수산부 소속 시장형 공기업이다.

3-1. 홍보 효과가 부족한 과도한 행사 추진 지양 필요

가. 현 황

인천항만공사(투자기업)는 2019년 4월 26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인천시 연수구 등과 공동 주최하여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축제장(국제여객부두) 구성과 불꽃공연을 담당하였으며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 3억 2,300만원을 소요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다.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행사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행사명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주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연수구 등
행사기간	2019. 4. 26
주제	과거 100년, 미래 100년: 크루즈산업의 미래와 남북평화시대
행사내용	불꽃공연, 멀티미디어쇼(바람의 길), K-POP 공연, 합창단 공연 등
용역 계약금액 (인천항만공사)	323

자료: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터미널의 여객실적 등의 개선이나 홍보 효과가 부족한 행사의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천항만공사가 2019년에 추진한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행사의 참여자를 크루즈 여객의 잠재 고객이 아닌 지역민이나 사회·복지 단체 인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홍보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의 크루즈 승객과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의 참가 대상을 살펴보면, 크루즈 승객은 국·내외(국외의 경우 주로 중국) 여행객, 크루즈 여행에 관련되는 여행업체 등이 주 홍보대상이 되는 대상이지만,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는 초청인원이 항만·해운 관계자, 대한노인회, 복지·사회단체 관계자이었으며, 일반 참가자도 인천시민 등 크루즈 여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인원이 주 대상이 되어 크루즈 터미널의 여객실적 등의 개선이나 홍보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와 불꽃축제 사업대상 비교]

구분	사업대상
인천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 국내외 여행객, 여행업체 등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 항만·해운 관계자(초청), 대한노인회(초청), 복지·사회 단체 관계자(초청), 인천시민 등

자료: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행사내용에서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개장에 대한 홍보보다 지역행사에 더 가까운 면이 있어, 인천항만공사의 홍보 행사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의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식전 퍼포먼스에서 마칭밴드 퍼레이드, 부정곳 길놀이 등의 일반적인 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하공연과 불꽃공연도 인기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 특수효과 불꽃 등 크루즈터미널의 홍보보다 지역 축제의 성격이 강한 지역행사에 해당하여, 인천항만공사의 크루즈터미널 홍보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의 행사 세부내용]

행사	행사 세부내용
식전 퍼포먼스	○ 마칭밴드 퍼레이드, 연수구립전통예술단과 부평·계양·서구 풍물단이 함께하는 부정굿 길놀이 등
개장식	○ 경과보고 유공자표창, 크루즈터미널 공동협력 MOU체결 등
축하공연	○ 인기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 프로젝트 맵핑 연출, EDM DJ파티 등
불꽃공연	○ 특수효과 불꽃, 합창단 배경음악 등

자료: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특히, 2015년에 개장한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식의 경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시설현황 설명 등 일반적인 개장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터미널의 여객실적 등의 개선이나 홍보 효과가 부족하고 지역행사의 성격이 강한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와 같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다.

3-2.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골든하버)의 복합지원 용지 완공 이후 미분양 부적정

가. 현 황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인 골든하버 사업을 사업기간 2012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사업비 6,705억원(자체: 5,305억원, 정부: 1,400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과 배후부지인 복합지원용지를 조성하였다.

이 중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 면적 규모 429,061.6㎡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등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명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
사업기간		2012. 8 ~ 2019. 9
사업내용		○ 선석규모 : 크루즈(22.5만톤×1), 카페리(5만톤×1, 3만톤×6) ○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각 1동,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1식 ○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단지 및 워터프런트 조성 - 3면의 바다조망이 가능한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를 워터프런트로 개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수공간 제공
복합 지원 용지	목적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부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위치	429,061.6㎡
	면적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역	
총사업비		6,705억원(자체: 5,305억원, 정부: 1,400억원)

자료: 인천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2020년 4월까지 인천항만공사의 분양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2020년 4월 기준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2018년 11월 준공) 및 2단계(2019년 9월 준공) 복합지원용지의 전체 면적은 2020년 1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준으로 429,061.6㎡이나, 2020년 4월 기준으로 매각·분양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분양 현황(2020년 4월 기준)]

(단위: 건, 백만원, m²)

단계	기반공사 준공일시	분양		분양금액		전체 면적	용도
		건수	면적	건수	금액		
1단계	2018. 11	0	0	0	0	429,061.6	상업시설용지 (복합지원용지)
2단계	2019. 9	0	0	0	0		
합계		0	0	0	0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 중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현황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008~2022년까지임에도 전체 상업용지 45,969㎡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론 용지의 위치, 성격 등 차이가 있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사업 중 상업용지 분양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m², 건, 백만원)

용지	공급대상 면적	실분양		실분양금액		사업기간
		건수	면적	건수	금액	
상업업무지구 (상업용지)	45,969	3	45,969	3	278,232	2008~2022년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로 인하여, 2019년에 기반시설의 공사가 완공된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항만공사의 해당 용지에 대한 분양·매각에 소요되는 공고 등의 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해당 용지의 유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인천항만공사의 재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투자 수요자 부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방식의 매각 공고가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분양은 성사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최초의 계획이었던 중화권 투자자를 수요자로 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공모 방식의 계획은 중국과의 외교 갈등, 카지노 불허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모를 연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레지던스 등 타인 임대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해양수산부의 허가 없이는 어려워진 이유로 인하여 공모가 연기된 바 있다.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해당 용지의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공모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첫째,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인근의 국제업무지구에 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가 인근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상업용지와 비교할 때,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업시설 운영에서 중요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매각·분양에 있어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골든하버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상업용지를 비교하면, 위치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으로 동일하나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이 350~500%(1개 지구) 정도인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의 상업 용지는 건폐율 80~90%, 용적률 900~1,000%로 나타나고 있다.

[골든하버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상업용지 비교]

(단위: %)

구분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상업시설 관련 용지)
위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건폐율	70	80~90
용적률	350~500(1개 지구)	900~1,000

자료: 각 용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투자기업 입장에서 주변의 유사한 용지에 비하여 조건이 불리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선택할 유인이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 2020년 1월 29일 「항만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분양 추진방식에 장애가 발생하여, 향후에도 분양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숙박·관광·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복합 용지로 골든하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용지에는 상업용 시설이나 복합 시설인 호텔, 쇼핑몰, 분양형 레지던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해당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시설을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타 법인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2020년 1월 29일 국가가 아닌 항만공사, 일반 기업 등 비관리청²⁾에게 귀속하도록 한 항만시설을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허가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경우에도 항만시설의 타인 임대를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로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항만법」 제18조³⁾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한 제2종 항만

2) 「항만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3) 「항만법」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후단지에 속하는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전용한 기업(SPC 포함)이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방식으로의 분양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공모 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국비와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용지의 유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실 발생이 우려가 된다.

향후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2020년 4월까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용지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및 광양항의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자체 및 정부지원 예산을 통하여 법령상 항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항만시설운영자나 항만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계약자 등에게 부과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법」 제30조¹⁾에 따라 요율, 징수기준 등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는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사용료를 미납부하는 경우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채권²⁾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채권 보전 조치, 채권추심 위임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항만공사의 미납채권과 회수불능채권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납입경과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15~2019년 동안의 미납채권과 회수불능채권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미납채권액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서 2019년 9월말 기준 누계 기준 109억 2,500만원으로 약 50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 34억 6,600만원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회수불능채권이란 채무자의 사업 폐지 혹은 채무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을 이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을 의미한다.

에서 2019년 누계 109억 2,500만원으로 약 70억원 이상 미납채권 규모가 증가하여 최근 증가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의 연도별 미납채권과 회수불능채권 규모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납입경과기간						회수 불능 채권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합계	
부산	2015	199	151	74	66	1,457	1,947	0
	2016	1,481	277	1,418	107	1,614	4,897	534
	2017	242	1,028	218	1,147	3,187	5,822	0
	2018	6	0	5	39	7,077	7,127	0
	2019	1	9	26	33	7,341	7,410	0
울산	2015	0	0	0	0	0	0	0
	2016	0	0	0	0	3	3	0
	2017	0	0	0	0	1	1	0
	2018	0	0	0	0	1	1	0
	2019	1	24	102	0	0	127	0
여수 광양	2015	4	30	3	133	44	214	0
	2016	605	1,249	632	770	210	3,466	610
	2017	306	729	1,015	3,037	817	5,904	149
	2018	1,069	1,211	144	156	4,657	7,237	8
	2019 (9월말)	1,098	2,531	2,471	788	4,037	10,925	0
인천	2015	1,305	276	358	314	4,314	6,567	0
	2016	276	201	170	408	5,677	6,732	872
	2017	2,893	133	92	586	6,097	9,801	0
	2018	1,466	97	90	106	6,745	8,504	0
	2019	750	76	98	519	6,881	8,324	4,146
합계	2015	1,508	457	435	513	5,815	8,728	0
	2016	2,362	1,727	2,220	1,285	7,504	15,098	2,016
	2017	3,441	1,890	1,325	4,770	10,102	21,528	149
	2018	2,541	1,308	239	301	18,480	22,869	8
	2019	1,850	2,640	2,697	1,340	18,259	26,786	4,146

자료: 각 항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미납채권액의 경우 2015년 65억 6,700만원에서 2019년 누계 83억 2,4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의 미납채권액도 2015년 14억 5,700만원에서 2019년 73억 4,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체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는 2015년 87억 2,800만원에서 2019년 267억 8,600만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납채권의 납입의무기간으로부터의 경과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로 미납되고 있는 채권 규모가 2015년 58억 1,500만원에서 2017년 101억 200만원, 2019년 182억 5,900만원으로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납채권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미납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납입경과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각 항만을 사용·임대하여 해운업, 물류업을 수행하는 부두운영사 등이 최근 항만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영업부진, 파산, 부도 등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채납³⁾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만공사의 재무구조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항만공사는 미납채권과 회수불능채권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납입경과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채납 사유에는 이 외에도 일시적 자금 부족 등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¹⁾ 사업은 해양교통 안전체계 강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 190억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지원	19,001	19,001	0	0	19,001	19,001	0	0

자료: 해양수산부

5-1.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장기근속자 포상 규정의 변경 필요

가. 현 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규정인 「인사관리규정」 제104조²⁾에 따라,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6332-300

2) 「인사관리규정」

제104조(포상) ①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개인포상과 단체포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분야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공로상 :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업무 또는 기술개발로 공단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창안상 :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리개선을 통하여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협조상 : 대외인사 또는 단체로서 공단 발전과 이익에 기여한 경우
4. 장기근속상 : 직원이 20년, 30년 기간동안 근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다.

쳐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포상 종류는 공로상, 창안상, 협조상, 장기근속상으로 구분이 된다.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³⁾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내부 규정인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2항제4호⁴⁾에 따라 내부 직원이 20년, 30년 기간 동안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포상 요건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업무 또는 기술개발로 공단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등의 공로상(2019년 포상인원: 33명) 등으로 구성되나, 2019년 기준으로 공로상은 33명이 있음에도 장기근속을 이유로 포상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인사관리규정」

제104조(포상) ② 포상은 개인포상과 단체포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분야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4. 장기근속상 : 직원이 20년, 30년 기간동안 근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내부 포상요건 및 포상인원]

(단위: 명)

구분	포상요건	2019년 포상인원
공로상	○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업무 또는 기술개발로 공단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3
창안상	○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리개선을 통하여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협조상	○ 대외인사 또는 단체로서 공단 발전과 이익에 기여한 경우	31
장기근속상	○ 직원이 20년, 30년 기간동안 근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 근속상을 수여할 수 있음	0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장기근속자에 포상 지침을 변경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나 기념품 지급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5-2.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상비 성격 경비의 경상운영비 이관편성 필요

가. 현 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동 사업의 보조금과 선박검사료 등 자체 수입을 통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능별 예산(자체수입 포함)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307억 7,100만원, 경상운영비 12억 5,700만원, 사업비 110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430억 4,000만원의 기관 예산(보조금, 자체수입)이 편성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도별 기능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인건비	26,761	28,230	29,537	30,741
경상운영비	1,216	1,216	1,216	1,257
사업비	8,261	7,286	7,712	11,042
합계	36,238	36,732	38,465	43,04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내부 직원 교육훈련비, 기념품비, 내부 행사비, 수선유지비 등의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사업비를 통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비용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념품비인 2017년 ‘대외고객용 기념품 구입’ 400만원, 2018년 ‘공단 기념품 제작비’ 609만원, 2019년 ‘40년사 기념품 제작 비용’ 1,000만원 등을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원 교육훈련비로 2017년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실시’ 230만원, 2019년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100만원 등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내부 임직원 워크숍 등 행사비로 2018년 ‘제1차 임직원 워크숍 리조트 이용료 지급’ 1,856만원, ‘제2차 임직원 워크숍 리조트 이용료 지급’ 1,763만원, 2019년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경비’ 3,301만원, ‘임직원 다짐대회 단체복 구매’ 1,025만원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비용 집행 예시]
(단위: 천원)

구분	집행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기념품비	2017	대외고객용 기념품 구입	4,000
		선우회 초청행사 기념품 제작	800
	2018	공단 기념품 제작비	6,091
		홍보 기념품 구입비	4,273
		신공단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념품 구매	3,342
		공단 신 비전 및 사회적 가치 선포식 기념품	1,712
	2019	40년사 기념품 제작 비용	10,000
		홍보 기념품 구매	6,160
		VIP기념품 제작	1,773
	합 계		38,151
직원 교육훈련	2017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실시	2,300
		2017년 실무직 직무교육	1,100
		2017년 실무직 직무교육	1,045
		감사보고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지급	1,000
	2018	감사전문과정 교육비	200
	2019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1,000
		RPA, AI를 활용한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방안 세미나	784
	합 계		7,429

구분	집행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임직원 워크숍	2018	'제1차 임직원 워크숍' 리조트 이용료 지급(청풍리조트)	18,559
		'제2차 임직원 워크숍' 리조트 이용료 지급(상록리조트)	17,628
		'제1차 임직원 워크숍' 관련 경비 지급	2,796
		'제2차 임직원 워크숍' 관련 경비 지급	2,312
	2019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경비(천안상록리조트)	33,008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 관련 행사대행 용역 대금	20,000
		임직원 다짐대회 단체복 구매	10,250
		임직원 다짐대회 책자 제작	2,426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 경비_물품 구매	1,931
		임직원 신년오찬행사 경비지급	1,522
		임직원 다짐대회 체육행사(우승팀선물)	643
		성공적인 신공단 설립을 위한 간부직 워크숍 개최경비(리조트)	10,288
	합 계		121,363
수선 유지비	2017	직원숙소 수리비 지급	14,289
	합 계		14,289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2017년 일상 수선유지비인 직원숙소 수리비를 1,429만원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⁵⁾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 기관 홍보 기념품비, 기관 행사를 위한 임직원 대상 워크숍 비용 등은 경상비의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5)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⁶⁾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경상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활용하여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경상운영비 성격의 교육훈련비, 내부 행사비 등을 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운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향후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사업비로 집행한 내부 직원 교육훈련비, 기념품비, 내부 행사비, 수선유지비 등의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경상운영비로 이관·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6)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5-3. 임시검사 등 검사건수 등의 연례적인 실제 대비 예산상 과소 계상 부적정

가. 현 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법령에 따라 어선 등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과 도면 승인 등 각종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수지차보전⁷⁾ 기관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에서 선박 검사에 관련된 정기검사수수료, 중간검사수수료 등의 검사수수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 15,277건, 중간검사 8,195건 등 총 256,642건 검사에 대해 124억 2,600만원의 예산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실제로는 총 321,797건, 129억 7,4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19년 검사수수료 예·결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물량	수수료	물량	수수료
정기검사	15,277	1,395	14,861	1,323
중간검사	8,195	1,383	8,634	1,594
임시검사	8,178	422	9,049	372
임시항해	359	149	460	149
협약검사	106	70	67	149
건조검사	1,778	1,033	1,815	1,351
예비검사	42,745	3,597	31,423	3,470

7) 수지차보전 방식은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고유사업비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지원받는 예산 편성 방식을 의미한다.

구분	예산		결산	
	물량	수수료	물량	수수료
확인업무	575	167	449	127
검정업무	100,394	138	158,828	236
도면승인	5,127	1,176	4,468	1,136
해양오염	7,418	589	6,764	468
총톤수	2,649	363	2,995	470
기타검사	3,193	1,293	5,782	1,363
수상레저	3,536	479	5,926	522
제증서교부	57,112	172	70,276	244
합 계	256,642	12,426	321,797	12,974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일부 검사건수 등이 예산상 예측이 연례적으로 실제 대비 과소 계상되고 있어, 수수료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 기타검사 등 일부 검사수수료의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검사의 경우 2014년 예산상 5,632건, 3억 600만원이었으며 결산상 6,303건, 수수료 2억 7,900만원이 발생하여 물량 기준으로 검사 건수가 과소 계상되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예산상 8,178건, 수수료 4억 2,200만원 대비 결산상 물량 9,049건, 수수료 3억 7,2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실제 대비 예산상 검사 수수료 건수가 물량 기준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증서교부의 경우 2014년 예산상 검사건수 46,904건 대비 실제 검사건수가 57,667건이며, 수수료 수익은 예산상 1억 3,400만원 대비 실체는 1억 3,900만원이었으며, 2019년 기준으로는 예산상 검사건수 57,112건 대비 실제 건수는 70,276건, 수수료 수익은 예산상 1억 7,200만원이나 실체는 2억 4,4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실제 대비 예산상 검사수수료 건수, 수수료 수익이 과소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 등 검사수수료 예·결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임시 검사	예산	물량(A)	5,632	5,614	9,366	6,645	7,515	8,178
		수수료(B)	306	304	449	360	379	422
	결산	물량(C)	6,303	7,841	11,679	9,408	10,779	9,049
		수수료(D)	279	350	464	418	438	372
	검사물량기준(C/A)		111.9	139.7	124.7	141.6	143.4	110.7
	수수료 기준(D/B)		91.2	115.1	103.3	116.1	115.6	88.2
검정 업무	예산	물량(A)	49,926	54,566	114,745	55,663	53,781	100,394
		수수료(B)	105	190	182	127	111	138
	결산	물량(C)	73,720	91,770	123,551	126,737	138,672	158,828
		수수료(D)	113	145	180	180	198	236
	검사물량기준(C/A)		147.7	168.2	107.7	227.7	257.8	158.2
	수수료 기준(D/B)		107.6	76.3	98.9	141.7	178.4	171.0
기타 검사	예산	물량(A)	1,844	2,279	2,472	1,952	2,076	3,193
		수수료(B)	799	1,045	258	1,117	1,208	1,293
	결산	물량(C)	2,522	2,848	2,770	3,099	4,247	5,782
		수수료(D)	866	1,050	1,331	1,533	1,446	1,363
	검사물량기준(C/A)		136.8	125.0	112.1	158.8	204.6	181.1
	수수료 기준(D/B)		108.4	100.5	515.9	137.2	119.7	105.4
수상 레저	예산	물량(A)	3,510	3,663	3,959	3,538	2,914	3,536
		수수료(B)	203	227	1,264	279	365	479
	결산	물량(C)	3,960	4,165	4,639	4,607	4,915	5,926
		수수료(D)	227	231	261	329	402	522
	검사물량기준(C/A)		112.8	113.7	117.2	130.2	168.7	167.6
	수수료 기준(D/B)		111.8	101.8	20.6	117.9	110.1	109.0
제증 서교 부	예산	물량(A)	46,904	50,452	60,642	53,900	57,891	57,112
		수수료(B)	134	145	185	162	175	172
	결산	물량(C)	57,667	71,194	74,369	70,383	75,168	70,276
		수수료(D)	139	167	217	228	233	244
	검사물량기준(C/A)		122.9	141.1	122.6	130.6	129.8	123.0
	수수료 기준(D/B)		103.7	115.2	117.3	140.7	133.1	141.9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특히, 임시검사 등 5개 항목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 건수와 수수료 수익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물량 기준으로 보면 예산 대비 실제 건수가 2014년 133.7%, 2015년 152.5%, 2016년 113.5%, 2017년 176.0%, 2018년 188.3%, 2019년 144.9%로 연례적으로 실제가 예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수료 수익으로도 예산 대비 실적이 105~13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실제 수익 대비 예산상 수익이 과소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 등 5개 항목의 검사수수료 예·결산 연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예산		결산		물량기준 (C/A)	수수료 기준 (D/B)
	물량 (A)	수수료 (B)	물량 (C)	수수료 (D)		
2014	107,816	1,547	144,172	1,624	133.7	105.0
2015	116,574	1,911	177,818	1,943	152.5	101.7
2016	191,184	2,338	217,008	2,453	113.5	104.9
2017	121,698	2,045	214,234	2,688	176.0	131.4
2018	124,177	2,238	233,781	2,717	188.3	121.4
2019	172,413	2,504	249,861	2,737	144.9	109.3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정확한 각 검사별 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임시검사, 기타검사 등 일부 검사의 경우 검사건수 등이 실제 대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익에 대한 자체수익 예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건수나 검사수수료 수익의 부정확한 예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지차 보전기관인 공단의 사업 및 지출 규모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실제 필요보다 정부 지원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시검사 등 일부 검사 항목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건수 등의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시검사, 검정업무 등 일부 검사의 검사건수와 검사수수료가 연례적으로 실제 대비 예산상 예측이 과소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건수 관련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해양환경인프라구축¹⁾ 사업은 부산 영도구에 해수, 퇴적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 및 분석하고 해양생태계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건립하는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은 동 내역사업의 2019년 정부 보조금 이월액 9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단 자부담 36억 6,700만원 중 3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700만원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하였다.

[해양환경공단 단계의 해양인프라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양인프라 구축	보조	0	915	0	915	915	0	0
	자부담	0	3,667	0	3,667	3,330	0	337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60번지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용도로 사업기간 2016~2019년 동안 총사업비 123억 300만원(국고: 39억 5,300만원, 자부담: 83억 5,000만원)을 소요하여 지상4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의 내역사업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건물명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위치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60번지 내 3,500㎡(동삼혁신지구 내)
총사업비	12,303(국고: 3,953, 자부담: 8,350)
건축면적/ 연면적	1,472.28㎡ / 4,263.41㎡
규모/용도	지상4층/교육연구시설(연구소)
사업기간	2016~2019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의 건립 사업비 중 자부담 부분을 우선 집행하는 경우가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제1항²⁾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이 국고보조금인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보다 자기 부담 부분을 우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은 동 내역사업 추진에 있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을 자부담에 우선하여 집행하여 지침을 미준수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연도별 실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정부 보조 예산 21억원 중 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부담은 예산현액 62억 6,8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2018년의 경우 정부 보조 예산 34억 7,600만원 중에서 25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행률이 73.7%이며, 자부담은 예산현액 80억 4,700만원 중 43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실행률이 54.4%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환경공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단계의 2017~2018년도 해양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비율은 자부담보다 국비 보조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해양환경공단)]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해양환경공단 단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보조	400	0	400	0	400	0	0.0
	자부담	2,000	0	2,000	213	1,787	0	10.7
2017	보조	1,700	400	2,100	477	1,623	0	22.7
	자부담	4,481	1,787	6,268	90	6,178	0	1.4
2018	보조	1,853	1,623	3,476	2,561	915	0	73.7
	자부담	1,869	6,178	8,047	4,380	3,667	0	54.4
2019	보조	0	915	915	915	0	0	100.0
	자부담	0	3,667	3,667	3,330	0	337	90.8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국비보조금으로 설계용역비 선금과 잔금 4억원을 우선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자부담 집행 부분인 건축공사(2018. 2. 6)보다 선계약이 이루어진 전기공사(2018. 2. 5), 통신공사(2018. 2. 5), 감리(2018. 1. 29) 부분의 선금도 국고보조금으로 먼저 집행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환경공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미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시	세부 집행내역	집행금액
국비 보조금	2017. 4~6	설계용역비	400
	2018. 5~2019. 2	관급자재	1,554
	2018. 1~2019. 2	건축감리	237
	2018. 1~2019. 2	전기통신감리	190
	2018. 2~2019. 2	전기공사	955
	2018. 2~2019. 2	통신공사	448
공단 자기부담금	2018. 2~2019. 3	건축공사	5,609
	2018. 12~2019. 3	관급자재	1,174
	2019. 1	실험장비 구매	660
	2019. 3	집기류 이전비	177
	2019. 3	부대공사비용	96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해양환경공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국비 부분을 해양환경공단의 자부담에 우선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¹⁾ 사업은 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내수면 및 소하성 수산자원조성 및 회복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 780억 8,800만원을 전액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교부하였다.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자원조성 사업지원	78,088	78,088	0	0	78,088	78,088	0	0

자료: 해양수산부

7-1.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상운영비가 아닌 예비비 편성·집행 필요

가. 현 황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 기준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인건비는 예산현액 102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경상운영비는 예산현액 82억 800만원 중 7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4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한국수산자원공단 단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간경상보조	17,731	17,731	724	0	18,455	18,189	254	12
인건비	10,247	10,247	0	0	10,247	10,247	0	0
경상운영비	7,484	7,484	724	0	8,208	7,942	254	12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예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²⁾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경상운영비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후 등급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7~2019년도 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활용하여 2017년 정규직 대상 경영평가성과급 2억 7,300만원, 비정규직 대상 경영평가성과급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직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 3억 1,100만원, 임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 6,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대상 경영평가성과급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연도	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경상운영비	2017	2017. 7. 11	경영성과급 지급(정규직)	273
		2017. 7. 11	경영성과급 지급(비정규직)	82
		소 계		355
	2018	2018. 7. 30	경영성과급 지급(정규직)	250
		2018. 7. 30	경영성과급 지급(비정규직)	107
		소 계		357
	2019	2019. 8. 22	임원 경영평가성과급	63
		2019. 10. 31	직원 경영성과평가급	311
		소 계		374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³⁾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예산액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기능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경상운영비
예산액	321	571	912 (2020년)	380
용도	경영평가 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자료: 각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1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9

(4)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로 편성한다.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⁴⁾에 따라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경상운영비에 성격이 맞지 않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로 받는 성과급을 경상운영비가 아닌 예비비로 별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4)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7-2. 직원 사택 매각 및 반환 금액의 공단 수입 예산 미반영

가. 현 황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공단의 수입·지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7~2019년도 수입·지출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을 살펴 보면, 자체수입 439억 4,500만원, 정부수입 787억 5,800만원, 기타수입 111억 5,600 만원을 합한 수입 1,33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예산은 인건비 102억 4,700만원, 경상경비 90억 6,000만원, 사업비 1,084억 3,100만원 등을 합한 수입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입·지출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예산	집행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A)	83,996	80,084	81,067	73,713	133,859	109,578
- 자체수입	0	0	0	0	43,945	35,645
- 정부수입	76,570	72,702	77,239	69,932	78,758	66,814
- 기타수입	7,426	7,382	3,828	3,781	11,156	7,119
지출(B)	83,996	80,084	81,067	73,713	133,859	109,578
- 인건비	8,627	8,627	9,477	9,477	10,247	10,247
- 경상경비	4,982	4,945	4,991	4,173	9,060	9,280
- 사업비	70,387	66,512	62,771	56,282	108,431	86,782
- 차입상환금	0	0	0	0	557	562
- 기타	0	0	0	0	5,564	2,707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택 매각 및 반환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최초 수입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 사택 매입·임차 및 매각·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수산자원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수수료 등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부산시, 여수시에서 사택 3채를 4억 8,865만원에 매입·임차하였으며, 수산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군산시에서 사택 1채를 전세로 1억 5,0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도에 부산시 사택 1채를 3억 1,000만원에 매각하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 사택 매입·임차 및 매각·반환 현황(2019)]

(단위: m², 천원)

구분	위치	전용 면적	거주형태	방식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구매금액)	수입 예산
매입 임차	부산시	58.20	아파트	매입	2019. 4. 30	263,649	자체수입
	부산시	57.72	아파트	전세	2019. 4. 26 ~ 2021. 4. 25	130,000	
	여수시	64	아파트	전세	2017. 5. 10 ~ 2021. 5. 9	95,000	
	군산시	85	아파트	전세	2019. 4. 10 ~ 2021. 4. 9	150,000	국고보조금 (경상경비)
매각 반환	부산시	84.97	아파트	전세	2017. 3. 27 ~ 2019. 3. 26	310,000	미편성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직원 사택의 매각·반환으로 인한 금액을 수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15~2019년도 동안의 직원 사택의 매입·임차 및 매각·반환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건에 1억 4,500만원, 2016년 3건에 3억 8,200만원, 2017년 4건에 6억 7,000만원, 2018년 2건에 2억 3,000만원, 2019년 1건 3억 1,000만원이 전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 사택 매각·반환의 연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각 반환	건수	1	3	4	2	1
	금액	145	382	670	230	310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⁵⁾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과 세부적인 수입·지출 내역과 전체 금액이 포함된 수입·지출 계획서를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입을 누락 없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초 예산 편성 시 직원 사택 매각·반환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자체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된 2019년 12월에 외부 지적이 있는 후 누락된 예산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자체수입 중 직원 사택 매각·반환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매각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5)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6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19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7-3.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TAC⁶⁾ 인력 인건비 등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 기존의 비정규직인 TAC 운영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사원 95명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 92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수산자원조사원 95명을 대상으로 2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 및 사업지원 인력 92명을 대상으로 39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수산자원조사원		행정 및 사업지원 인력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2019	95	2,756	92	3,903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침을 위반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수산자원조사원 등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7~2020년도 예산상 수산자원조사원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인 인건비에 일반 정규직 인건비 102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수산자원조사원 등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민간자본보조(320-07) 사업비인 TAC 운영, 바다숲 등에 39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민간경상보조 (320-01)	인건비 (일반 정규직)	8,627	9,477	10,247	11,108
민간자본보조 (320-07)	TAC 운영 (무기계약직)	2,055	2,615	2,756	2,999
	바다숲 등 (무기계약직)	3,497	3,543	3,903	3,269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⁷⁾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에 사용될 필요가 있는 보조금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무기계약직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정규직 인건비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침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운영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1억 1,700만원 중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비중이 27억 5,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88.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의 감액 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7)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58

320-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운영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사업비 (A)	인건비 (B)	사업비 내 인건비 비중 (B/A)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운영	3,117	2,756	88.4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민간자본보조(320-07)에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운영하는 수산 자원조사원 등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해양수산연수원 지원¹⁾ 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비 등을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55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수산 연수원 지원	55,805	55,805	0	0	55,805	55,678	127	0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운영비와 고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보조로 교부받고 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17억 4,500만원, 경상운영비 19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82억 200만원, 자본사업비 335억 7,500만원으로 합계로 417억 7,700만원이고,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위한 예비비 3억 2,100만원을 합한 55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4-301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2019)]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9 예산
인건비		○ 인건비 : 186명×63.4백만원	11,745
경상운영비		○ 여비, 제세공과금 등	1,962
사업비	경상	○ 선박관리비, 교육훈련비, 시험집행경비	8,202
	자본	○ 한반도호 대체건조 : 5,537백만원(1척×5,537백만원) ○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 구축 : 2,775백만원(시공비 6,937백만원×40%) ○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 4,305백만원(시공비 10,763백만원×40%) 등	33,575
	소 계		41,777
예비비		○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321
합 계			55,80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경상운영비 성격의 기관 공공요금, 세금 등을 집행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19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직원 대상 체육행사 등의 복리후생 제공과 역량 향상 교육비 등 경상적 성격 경비로 집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로 2019년도 KIMFT 안전경영 워크숍 941만원, 2019년도 교수 워크숍 집행경비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관 홍보·광고 용도로 기관 홍보 및 고객지원용 홍보물품 2,190만원 등과 기관 공공요금 및 세금과 관련하여 2019년도 영도본원 교통유발부담금 2,473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비 성격의 경비 집행 예시(2019)]

(단위: 천원)

분류	집행내역	집행액
기관 운영 관련	2019년도 KIMFT 안전경영 워크숍	9,405
	2019년도 교수 워크숍 집행경비	9,270
	2019년도 임직원 워크숍 계약 비용	7,589
	2019년도 임직원 단합·화합 워크숍 소요경비	3,649
	교원연수(국외 전문교육) 시행에 따른 참가비	2,634
	기관 홍보 및 고객지원용 홍보물품	21,904
	기관 가입 유관단체 연회비	10,598
	기관 광고료	31,700
	2019년도 영도본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4,733
	2019년 11월분 전기요금 납부(영도 본원)	24,173
	소 계	145,655

자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적용되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²⁾에 따라,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연례적 집행이 필요한 부담금 등은 경상경비의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업비(경상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또한, 경상운영비(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³⁾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경상사업비에서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운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향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에서 경상운영비 성격인 기관 홍보·광고비와 역량 향상 교육비 등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가. 현 황

해양생물자원관 운영¹⁾ 사업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및 교육, 해양생물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물자원의 책임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234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생물 자원관 운영	23,456	23,456	0	0	23,456	23,456	0	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일반 정규직과 공무원(무기계약직)을 차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관리·청소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하여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일반 정규직과 공무원(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정규직의 경우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복지포인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무기계약직)은 「공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4-301

무직 운영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일반 정규직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50만원과 근속점수로 1년 근속당 1만원(최대한도 30만원), 가족점수로 배우자 10만원, 부모 1인당 5만원 등(최대한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복지점수로 예산절감액 성과상여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근속점수, 가족점수, 추가복지점수 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적용에 있어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과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선택적 복지제도 지급 기준 비교]

구분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추가복지점수
일반 정규직	50만원	1년 근속당 1만원 최고 30년까지 한도금액 : 3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부 모 : 1인당 5만원 ▷ 자 녀 : 1인당 7만 500원 한도금액 : 300만원	예산절감액 성과상여금 등
공무직 (무기계약직)	연 50만원			

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8~2019년도 일반 정규직 및 공무직(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일반 정규직 92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 70만 9,000원을 기준으로 6,523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공무직 107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 29만 4,000원을 기준으로 3,1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공무직(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 및 공무원(무기계약직)의 연도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고용형태	지급현황			최대지원한도
		인원(A)	지급금액(B)	평균 지급금액 (B/A)	
2018	일반 정규직	92	65,229	709	3,800
	공무원 (무기계약직)	107	31,509	294	500
	소계	199	96,738	486	-
2019	일반 정규직	107	74,021	692	3,800
	공무원 (무기계약직)	107	49,828	466	500
	소계	214	123,849	579	-

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제4항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과 기존 직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일반 정규직이 공무원 보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최대한도 지급금액을 7.6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에게 가족 점수나 근속점수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공무원(무기계약직)의 차별에 해당하여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반 정규직과 공무원(무기계약직)의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④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기계약직과 기존 직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가. 현 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¹⁾ 사업은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 892억 4,400만원 중 88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원	89,244	89,244	0	0	89,244	88,213	0	1,031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9년도 연구개발직접금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벤처 로드쇼에 참여하거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며 현장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해양수산 분야 특화 창업 및 중소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 사업의 2019년 자체 예산액 2억 4,9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110-300

[해양수산 분야 특화 창업 및 중소벤처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개발직립금	해양수산 분야 특화 창업 및 중소벤처 지원사업	249	228	21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분야 특화 창업 및 중소벤처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특강, 토크콘서트, 해양수산 세미나, 투자설명회(IR), 창업동아리 성과발표회 등을 추진한 해양수산벤처 투자 로드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현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기업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현장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기술자문 제공 등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및 이에 근거한 정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5조2)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5조(정관) ① 해양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³⁾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연구, 해양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지원 기능은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 분야 특화 창업 및 중소벤처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내용
해양수산벤처 투자 로드쇼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특강, 토크콘서트, 해양수산 세미나, 투자 설명회(IR), 창업동아리 성과발표회 등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현장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기술자문 제공	○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현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 재무·인사·노무·마케팅·해외진출·특허대응 전략 등 경영 핵심 부분에 대한 현안 지원
해양수산 분야 청년 예비 창업자 지원	○ 해양수산 분야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영상제작(7건) ○ 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예비창업자 교육 네트워킹 구축 등
그 밖에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 제1회 해양수산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 ○ 해양 기후 분야 창업 공모전 개최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조(사업) 해양과학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2.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3.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학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반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법령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5호4)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법령상 또는 이에 근거한 정관상 사업범위에 해양수산 분야 창업 기능을 포함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¹⁾ 사업은 농식품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농산업 기반 확충, 우수 신품종 종자종묘의 증식 및 현장 보급, 시험분석 및 검정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 371억 8,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34,417	37,189	0	0	37,189	37,189	0	0

자료: 농촌진흥청

1-1.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가. 현 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 제65조²⁾를 통하여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6조제3항³⁾을 통하여 정직의 경우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며, 연봉월액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136-300

2) 「인사규정」

제65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인사규정」

제66조 (징계의 효력)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며, 연봉월액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정직 징계처분에 따른 휴직기간과 보수지급]

징계처분	규정	기간	보수지급
정직	「인사규정」 제66조제3항	1월 이상 3월 이하	연봉월액의 5할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과 달리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 직원의 정직기간 보수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직기간 중에는 전액 보수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식진흥원의 경우에도 월기본급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직 징계처분으로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기간에 대해서도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정직기간 보수 지급규정]

구분	국가공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직원연봉규정」 제11조	「급여규정」 제12조제1항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인사규정」 제66조제3항
정직기간 보수	보수는 전액을 감함(0%)	월기본급 미지급 (0%)	월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0%)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0%)	연봉월액의 5할 (50%)

자료: 「국가공무원법」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에 중징계 중 일종인 정직 처분을 하고 있어 내부 직원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징계의 일종인 정직 처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⁴⁾.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정직 징계처분 시 해당 기간에 대한 보수 규정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인사·홍보·기념품비의 경상운영비 편성·집행 필요

가. 현 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고유사업비에서 분석검정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산을 교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177억 8,500만원, 경상비 25억 7,700만원, 사업비 680억 7,8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총 915억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자체수입 포함)	78,142	70,189	91,543
- 인건비	15,864	16,642	17,785
- 경상비	2,191	2,446	2,577
- 사업비	56,384	43,242	68,078
- 차입금상환	0	102	0
- 이월사업비 등	3,703	7,757	3,103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경상비 성격의 경비인 인사·홍보·기념품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내부 임직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워크숍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품비, 채용 관련 비용 등의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살펴보면, 임직원 워크숍 관련하여 버스 임차비 400만원, 전직원 워크숍 행사 비용 1,818만원, 전직원 워크숍 직원 중식비 262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비 성격의 경비 집행 현황(예시)]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일시	집행액
임직원 워크숍	버스임차 5대	2019. 3. 19	4,000
	전직원 워크숍 직원 중식 제공	2019. 3. 12	2,623
	전직원 워크숍 온누리상품권 구입	2019. 3. 12	2,500
	전직원 워크숍 행사 비용	2019. 3. 14	18,818
	전직원 워크숍 기념품 수건 400장 제작	2019. 3. 11	1,455
	전직원 워크숍 특강 강사수당	2019. 3. 13	1,000
채용	2019년 제2차 공개경쟁채용 서류 및 필기전형 대행 용역	2019. 12. 31	18,182
	2019년 제1차 공개경쟁채용 용역	2019. 10. 7	17,032
	제1차 공개채용 면접관 수당	2019. 9. 18	12,800
	제2차 공개채용 면접관 수당	2019. 12. 26	7,600
	제1차 공개경쟁채용 직무면접 응시자 수당	2019. 8. 26	6,200
임직원 교육훈련	2019년 법정교육훈련비	2019. 10. 18	3,270
	FACT 학위과정 장기위탁 교육비 A	2019. 7. 25	3,206
	FACT 학위과정 장기위탁 교육비 B	2019. 7. 25	3,206
	경영실적평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교육비용	2019. 8. 28	6,000
	공공기관 성과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	2019. 7. 11	3,900
기념품비	재단 주요고객 홍보물품 구매	2019. 2. 19	6,818
	재단 10주년 행사 기념품 제작 비용	2019. 10. 1	5,070
	2020년 재단 업무수첩 제작	2019. 12. 30	4,900
	기념식수 구매	2019. 11. 21	4,000
	여행용과우치 500개	2019. 10. 2	3,000
	에코백 1,000개 제작	2019. 2. 20	2,961
	재단 고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념품 구입	2019. 9. 18	2,850
	기념식수 표지석 구매	2019. 9. 19	1,100
창립 10주년 행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용역	2019. 9. 20	37,664
	재단 10주년 기념영상	2019. 12. 6	3,636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채용 관련하여 2019년 제2차 공개경쟁채용 서류 및 필기전형 대행 용역 1,818만원, 2019년 제1차 공개경쟁채용 용역 1,703만원, 제1차 공개채용 면접관 수당 1,28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임직원 교육훈련비로 FACT 학위과정 장기위탁 교육비 A320만원과 기념품비로 재단 주요고객 홍보물품 구매비 682만원 등의 경비를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⁵⁾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와 매년 기관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채용 관련 비용과 기념품비, 워크숍 비용 등은 경상비의 성격의 경비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⁶⁾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비를 활용하여 2019년 예산에 편성된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경상비 성격이 강한 경비인 인사·홍보·기념품비 등을 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에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5)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6)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1-3.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지원 사업의 통합 편성 필요

가. 현 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관운영 출연금을 활용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기관의 고유사업인 농식품 기술평가, 농식품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의 2015~2019년도 예산액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28억 6,600만원, 2017년 30억 5,800만원, 2019년에는 30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최근 5개년도 동안 16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기술실용화 촉진)	2,866	4,284	3,058	3,025	3,032	16,265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관 고유사업인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지원 사업은 통합·편성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관련 사업은 동 내역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출연금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1138-300) 사업에서 편성·집행되고 있다.

동 내역사업과 농업기술실용화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비교하면, 동 내역사업은 농업 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업체 성과조사·분석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서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농업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어, 양 사업에서 유사한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실용화 지원 사업 비교]

구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기술 실용화 촉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수행주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계·기금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내용	- 기술이전 및 기술마케팅 - 농식품 기술평가 - 기술이전업체 성과조사·분석 및 컨설팅	- 농식품 R&BD 기획 지원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 시제품 개발 지원, 기능성 인증 지원 등 -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지원 -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등
사업방식	출연	출연
R&D 여부	비R&D	R&D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예산의 분리·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동 사업의 기술실용화 촉진 사업에서 30억 3,200만원,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에서 120억원이 편성되어 기관고유사업보다 타 사업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고유기능인 농업기술 실용화 사업 예산이 더 크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기술실용화 촉진)	2,866	4,284	3,058	3,025	3,032	16,265
농업기술 실용화 지원	8,020	8,820	10,000	12,000	12,000	50,840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예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법령에 따른 고유 사업으로 기관운영 사업 출연금의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법」 제33조7)에 따르면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사업범위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등의 농업기술 관련 사업화·실용화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출연사업으로 농업기술 사업화·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기관운영 사업인 동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실용화 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분리·편성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었을 때,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규모 파악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실용화 사업은 기관운영 사업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과 농업기술실용화 지원 사업에 분리·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7) 「농촌진흥법」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확대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한국임업진흥원 지원¹⁾ 사업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재배이력 및 품질 관리, 목재·제지분야 KS인증, 규격·품질검사, 안전성평가, R&D사업 관리·평가 및 성과활용, 임업기술 사업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 215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임업 진흥원 지원	21,503	21,503	0	0	21,503	21,503	0	0

자료: 산림청

1-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확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은 동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예찰·방제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재발생률 조사, 방제품질 관리 모니터링, 예찰·방제 교육훈련, 재선충병 진단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동 내역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8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2-300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나무재선충 병모니터링 센터	815	815	0	0	815	815	0	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나. 분석의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다수의 지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지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하는 질병이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의 피해가 중대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해당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목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피해목이 약 218만본이었으나, 2014년은 174만본, 2015년은 137만본, 2018년은 49만본으로 매년 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목의 연도별 현황]

(단위: 만 본)

기간	2013. 5 ~ 2014. 4	2014. 5 ~ 2015. 4	2015. 5 ~ 2016. 4	2016. 5 ~ 2017. 4	2017. 5 ~ 2018. 4	2018. 5 ~ 2019. 4
피해목	218	174	137	99	69	49

자료: 산림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²⁾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지역(시·군·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0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64개 지역,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98개 지역,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19개 지역,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24개 지역으로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 지역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지역 발생의 연도별 현황]

(단위: 지역)

기간	극심	심	중	경	경미	청정	합계	청정 제외
2012. 5 ~2013. 4	2	1	7	22	18	2	50	48
2013. 5 ~2014. 4	11	3	10	21	19	0	64	64
2014. 5 ~2015. 4	8	3	10	29	29	1	79	78
2015. 5 ~2016. 4	7	2	9	28	52	0	98	98
2016. 5 ~2017. 4	6	2	10	24	67	1	109	108
2017. 5 ~2018. 4	3	3	9	24	78	4	117	113
2018. 5 ~2019. 4	2	4	5	28	80	0	119	119
2019. 5 ~ 2020. 4	1	2	7	27	87	0	124	124

주: 청정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 중 최근 2년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 45

마. 발생지역 피해정도 구분

- (1) 전년도 4월(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당해년도 3월말(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본수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판정
- (2) 발생지역 피해정도는 피해고사목 발생본수에 따라 극심, 심, 중, 경, 경미 등 5단계로 구분
 - (가) “극심”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5만본 이상인 시·군·구
 - (나) “심”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3만본 이상 5만본 미만인 시·군·구
 - (다) “중”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만본 이상 3만본 미만인 시·군·구
 - (라) “경”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이상 1만본 미만인 시·군·구
 - (마) “경미”지역은 피해고사목 본수가 1천본 미만인 시·군·구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나무 방제작업 범위의 확대에 의한 예산비용의 증가, 타 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의 유입으로 인한 기존 청정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방제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기간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보호수가 있는 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경우 피해목 수는 감소하더라도 실질적 피해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목 수의 감소와 함께 최근 다수의 지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지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지침을 위반한 특별휴가 제도 운영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부 규정인 「복무규정」에 따라 본인 및 친인척의 경조사 휴가, 여성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임직원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라 내부 임직원이 업무상 질병, 병역의무 수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사불명 등의 의무휴직과 해외유학,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등의 청원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무급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내부 직원 대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및 제2항³⁾에 따라, 공공기관은 휴가제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⁴⁾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①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의 사용 측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삭제
- ⑧ 삭제
-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에 내부규정인 「복무규정」 제36조제11항⁵⁾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출강 중인 직원은 수업에 참석(강의)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규정과 비교하면, 대학(원) 강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대학(원) 출석이나 강의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의 특별휴가 제도 비교]

구분	대학(원) 출석·강의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특별휴가 인정
한국임업진흥원	○ 대학(원)에 재학 또는 출강 중인 직원은 수업에 참석(강의)하기 위한 특별휴가

자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한국임업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 출석·강의로 인한 특별휴가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5) 「복무규정」

제36조(특별휴가) ⑪대학(원)에 재학 또는 출강 중인 직원은 수업에 참석(강의)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강의)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3.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조사 비용 등의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임업진흥원의 기능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연봉, 직원 직무급, 성과연봉, 법정부담금 등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126억 9,800만원, 운영비, 청사임차료, 차량임차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상경비 28억 4,200만원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임업지식·신기술보급의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사업비 76억 2,900만원 등을 합한 215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2019년도 예산의 기능별 세부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9 예산
인건비	○ 기본연봉, 직원 직무급, 성과연봉, 법정부담금 등	12,698
경상경비	○ 운영비, 청사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2,842
사업비	○ 목재제품 품질관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임업지식·신기술보급, 산림경영인증,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7,629
시설비	○ 시험장비유지보수, 전산시스템구축, 분석검정장비현대화 등	1,220
예비비	○ 경영평가성과급	334
합계		21,503

자료: 산림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경상운영비 성격인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비용 등을 집행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비를 활용한 내부 워크숍, 경조사 화환 비용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임업진흥원과 관련된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비용으로 57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일시	집행액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1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2. 25	4,120
	2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3. 21	640
	3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4. 10	1,000
	합계		5,76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비용의 일부는 경상경비를 통하여 집행하여 해당 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은 경상경비에서 한국임업진흥원과 관련되는 임업 관련 유관기관의 경조사 화환을 위하여 4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비 80만원, 5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비 92만원, 6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비용 16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상경비에서 집행한 경조사 화환 관련 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일시	집행액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4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5. 20	800
	5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6. 3	920
	6월 유관기관 경조사 화환	2019. 7. 11	1,600
	소계		3,32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⁶⁾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경상경비에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기관운영에 관련된 대외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인 경조사 화환 비용 등은 경상비의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⁷⁾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이 사업비를 통하여 경상경비 성격의 화환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경상경비를 지침과 달리 우회적으로 증액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6)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7)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향후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비를 통하여 경상경비 성격인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조사 화환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1-4.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 수수료 실제 보다 예산상 수입 과대 계상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임산물 및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특별임산물(산양삼),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분석,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수수료를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9년도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임산물 분석,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시험분석·규격검사 등에 종사하는 분석인원 35명이 있으며, 총 5,757건의 검사·분석 등을 수행하여 12억 5,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의 2019년도 검사·분석 수수료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연도	분석인원	건수	수수료 수입
2019	35	5,757	1,253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분석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은 검사·분석수수료는 실제 수입 대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대 편성되어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수수료 수입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예산상 수수료 수입 6억 4,400만원 대비 실제 수수료 수입이 6억 4,7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2019년 기준으로는 예산상 수수료 수입 20억 1,800만원 대비 실제 수입이 12억 5,300만원(5,757건의 검사 건수)이 수납되어,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의 비율이 62.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수수료 수입은 2017년도 부터 실제 수입보다 예산이 과대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분석수수료 수입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실제수입 (B/A)
	건수	수수료 (A)	건수	수수료 (B)	
2014	-	644	4,864	647	100.5
2015	-	644	6,964	901	139.9
2016	-	724	5,693	1,000	138.1
2017	-	1,343	5,239	1,078	80.3
2018	-	1,516	6,446	1,360	89.7
2019	-	2,018	5,757	1,253	62.1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예산이 실제 수입에 비하여 과대 편성되는 경우에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부 보조금보다 실제 교부받는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어, 한국임업진흥원이 법령상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고유사업 사업비의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수입 중 검사·분석수수료 수입의 예산은 실제 수입에 맞추어 편성되며, 적정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1-5.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장 및 직원 관사 구입 비용의 수입지출 예산에 포함 필요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진흥원이 소유 관리하는 주거용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인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 한국임업진흥원의 기관장 및 직원 관사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장 거주 용도로 관사 1채, 9억 9,000만원과 직원 14채, 20억원을 합한 총 15채, 29억 9,000만원의 구입 비용을 소요하여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2019년 기준 기관장 및 직원 관사 현황]

(단위: 채, 백만원)

구분	관사	구입금액
기관장	1	990
직원	14	2,000
합계	15	2,99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기관장 및 직원 관사 매각·구입 비용을 수입·지출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기관장 관사 매각 및 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27일에 서울시 강동구에 6억 7,500만원의 기관장 관사(아파트 형태)를 구입한 후 2019년 9월 4일 해당 관사를 9억 9,000만원에 매각하였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시 강서구의 전용면적 84.99㎡ 규모의 아파트를 기존 관사 매각대금과 동일한 9억 9,00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나, 해당 기관장 관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상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매각·구입 금액을 상계하여 처리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 기관장 관사 매각 및 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형태	위치	전용면적	거주형태	매각·구매시점	구매금액
구매	서울 강동구	84.81㎡	아파트	2016. 9. 27	675
매각	서울 강동구	84.81㎡	아파트	2019. 9. 4	990
구매	서울 강서구	84.99㎡	아파트	2019. 9. 16	99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⁸⁾에 따르면,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검사료, 교육수수료, 임대료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 보전 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지차보전기관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⁹⁾에 따르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지침에 따라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이 기관장 관사 매각·구입 금액을 예산상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침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특히,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경상경비 총액 규모를 통제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각종 지침을 통하여 과도한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경비에 속하며 기관장 대상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기

8)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4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

* 예시)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9)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2

□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별첨)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

○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관장 관사 구입비용을 예산상 수입 및 지출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수지차보전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기관장 및 직원 관사 매각·구입 비용을 수입·지출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¹⁾ 사업은 산림복지단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산림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사항 관리, 훈련, 연수 및 교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액 362억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지원	36,254	36,254	0	0	36,254	36,254	0	0

자료: 산림청

2-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업비를 활용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기관운영사업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비에 편성된 기관운영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이사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 신규 인력(정규직 등) 채용에 필요한 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는 내역사업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운영사업의 연도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7~2020년도 동안 6억 6,800만원이 매년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741-30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운영 사업의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기관운영	668	668	668	668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운영 사업은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이사회 운영, 채용 관련 사업으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운영 사업의 2019년도 집행 현황을 일부 살펴보면, 채용 관련하여 ‘2019년도 직원 채용 업무 위탁 용역’ 2억 1,400만원, ‘직원 채용 업무 위탁 용역 완료금’ 1억 3,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이사회 운영과 외부회계감사 관련하여 ‘2019년 제6차 이사회 수당’ 400만원, ‘2018년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완료금’ 1,4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기관운영 사업의 집행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분야	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채용	2019. 3. 26	2019년도 직원 채용 업무 위탁 용역	214
	2019. 11. 14	직원 채용 업무 위탁 용역 완료금	133
이사회 운영	2019. 8. 30	2019년 제6차 이사회 수당	4
외부회계감사	2019. 4. 30	2018년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완료금	14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기관 운영과 관련된 채용, 이사회 운영, 외부회계감사 비용 등은 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를 통하여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적용되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²⁾에 따라,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비용인

2)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0

경상경비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 운영과 관련된 직원 채용 업무, 이사회 수당, 외부회계감사 비용 등은 경상경비의 성격이 강한 경비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³⁾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비에서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예산상 편성된 경상운영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산림청 등에 소속된 타 공공기관의 2019년도 채용, 이사회 운영, 외부회계감사 비용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채용 관련해서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19년 정규직 및 공무직 채용대행 용역 준공금’ 5,400만원,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제62차 이사회 참석 수당’ 400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부분도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은 모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여, 타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달리 지침을 준수하여 채용, 이사회 운영, 외부회계감사에 관련된 경비를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3)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p. 10~11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하여 편성한다.

[2019년도 타 공공기관의 채용, 이사회 운영, 외부회계감사 관련 집행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기능별	분야	기관명	집행내역	집행액
경상경비	채용	한국수목원관리원	2019년 정규직 및 공무원 채용대행 용역 준공급	54
			공무원 채용 대행용역 준공급	41
		한국임업진흥원	상반기 NCS 블라인드 채용대행 용역	2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차 실무직근로자 채용 면접심 사장 임차	2
	이사회 운영	한국수목원관리원	제11차 이사회 출석수당	3
		한국임업진흥원	제62차 이사회 참석 수당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
	외부회 계감사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외부 회계감사 용역 대금	13
		한국임업진흥원	회계감사 용역 착수	9

자료: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이사회 운영, 채용, 외부회계감사 등의 경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2-2. 산림복지소외자의 치유의 숲 이용 확대 필요

가. 현 황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4)에 따라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동 사업의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소외자 등에게 산림 휴양을 제공하는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9년 말 기준 치유의 숲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 대관령 등 총 7개 지역에 치유의 숲을 42명의 인원을 활용하여 9억 1,900만원의 운영비용을 소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치유의 숲 운영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양평 치유의 숲	대관령 치유의 숲	대운산 치유의 숲	김천 치유의 숲	제천 치유의 숲	예산 치유의 숲	곡성 치유의 숲	합계
운영인원	6	6	6	6	6	6	6	42
운영비용	173	235	164	93	89	70	95	919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의 숲은 산림복지소외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5)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산림복지시설은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구성된 산림복지소외자의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간의 시장 가격체계로는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숲체원 등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여러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조성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⁶⁾에 따른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일반적으로 산림욕, 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8년부터 양평 치유의 숲, 대관령 치유의 숲 등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8~2019년도 치유의 숲 방문인원 중 산림복지소외자 및 일반인의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방문인원 10,099명 중 일반인이 3,621명으로 전체 대비 35.9%이었으나, 2019년의 경우 전체 방문인원 18,523명 중 일반인이 9,332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이 50.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면이 있다.

으로 정한다.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치유의 숲 방문인원 중 산림복지소외자 및 일반인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구분	직원	운영비	방문인원			전체 대비 일반인 비중 (A/B)
				산림복지 소외자	일반인 (A)	전체 (B)	
2018	양평 치유의 숲	6	144	1,380	2,143	3,523	60.8
	대관령 치유의 숲	6	160	2,882	1,367	4,249	32.2
	대운산 치유의 숲	6	198	2,216	111	2,327	4.8
	합계	18	502	6,478	3,621	10,099	35.9
2019	양평 치유의 숲	6	173	2,742	2,313	5,055	45.8
	대관령 치유의 숲	6	235	2,692	3,908	6,600	59.2
	대운산 치유의 숲	6	164	3,116	1,214	4,330	28.0
	김천 치유의 숲	6	93	641	30	671	4.5
	제천 치유의 숲	6	89	0	872	872	100.0
	예산 치유의 숲	6	70	0	457	457	100.0
	곡성 치유의 숲	6	95	0	538	538	100.0
	합계	42	919	9,191	9,332	18,523	50.3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대관령 치유의 숲은 2018년 일반인이 1,367명으로 전체 대비 32.2%였으나 2019년도에는 일반인이 3,90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비 일반인 비중이 59.2%로 27.0%p 상승하였으며, 대운산 치유의 숲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운영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일반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치유의 숲을 활용하는 인원 중 산림복지소외자보다 일반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소외자가 적극적으로 기관이 운영하는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1)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설치된 자금이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복권수익금을 주로 재원으로 하며, 산림청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2)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2019년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천원)

수입		지출	
항목	수입 예산	항목	지출 예산
1. 비교환수익	49,850	1. 사업비용	49,850
- 복권기금전입	49,850	- 사업비	49,850
2. 비배분수익	12,890	2. 사업관리비	1
- 이자수익	12,866	3. 사업외손익	1
- 기타수익	4	4. 기타지출	657
3. 기타수입	644	- 적립금	657
- 이월금	644	- 복권기금 반납금	2
○ 수입 합계	50,507	○ 지출 합계	50,507

자료: 산림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6788-468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9조제1항3)에 따른 2019년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수입·지출 등이 명시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498억 5,000만원, 이자수익 128억 6,600만원, 기타수입 6억 4,400만원을 합한 505억 7,000만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 498억 5,000만원, 사업관리비 100만원, 기타지출 6억 5,700만원 등을 합한 505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4)에 따르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해당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자금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운영비가 아니므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홍보 또는 기관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기관 홍보와 관련된 이미지 홍보, 홍보콘텐츠 작성, 대외협력 등의 용도로 연례적으로 집행하여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7~2019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기관홍보 사업 등으로 추진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관 홍보 VR 영상 제작 완료금’ 2,134만원, ‘개원 1주년 기념 기관 이미지 홍보’ 2,000만원, ‘산림청 개청 50주년 및 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 이미지 홍보 대금’ 3,0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활용한 기관 홍보 사업 추진 현황(예시)]

(단위: 천원)

집행연도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2017	2017. 12. 20	기관 홍보 VR 영상 제작 완료금	21,340
	2017. 5. 12	개원 1주년 기념 기관 이미지 홍보	20,000
	2017. 12. 11	기관 홍보콘텐츠(나무로봇) 제작, 구매	12,164
	2017. 9. 27	기관 리플릿 추가 제작	2,706
	2017. 5. 12	산림청 개청 50주년 및 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 이미지 홍보 대금	30,000
2018	2018. 4. 25	기관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건	1,518
	2018. 4. 25	나주숲체원 조성 기공식 홍보용 종이백	309
2019	2019. 12. 19	직원 대상 직무연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1,055
합 계			89,092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기관 홍보, 대외협력 용도 등으로 집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기관 홍보, 대외협력 등으로 집행한 것은 자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2019년도 녹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기본 방향⁵⁾을 살펴보면,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5) 「2019년도 녹색자금 운용계획」 p. 3

2. 기본방향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층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숲 및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관 홍보 등의 기관 대외협력 사업은 산림환경증진자금의 사업목적인 사회적 약자층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 개선 등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둘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청 예산을 통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를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청 예산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1741-303) 사업을 통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보조로 지원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하여 기관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관 운영 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을 통하여 ‘국립칠곡숲체원 기관 소개 리플릿 추가 제작비용’ 308만원, ‘2019 국립장성숲체원 통합홍보 책자’ 3,500만원 등의 기관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관 홍보 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에 부합 하는 최적 사업 선정
 - 사회적 약자층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숲 및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 청소년, 소외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산림체험활동 시설 신규 조성 및 숲체험 교육 사업 추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운영 사업을 통한 기관홍보 사업 추진 예시]

(단위: 천원)

집행연도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2019	2019. 11. 28	국립칠곡숲체원 기관 소개 리플릿 추가 제작비용	3,080
	2019. 6. 24	홍보물품(에코백) 구입 대금	1,900
	2019. 6. 24	고객 배포용 홍보 수첩 제작	755
	2019. 6. 25	2019 국립장성숲체원 통합홍보 책자	35,000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관운영비 사업이 아닌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는 산림환경증진자금을 활용하여 기관 홍보와 관련된 이미지 홍보, 홍보컨텐츠 작성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집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중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 동 엽 예산분석관
이 은 경 예산분석관
임 길 환 예산분석관
전 수 연 예산분석관
안 옥 진 예산분석관
김 선 영 예산분석관
김 보 은 예산분석관

지원 | 박 미 현 행정실무원
이 하 림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Ⅱ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갭 프로세스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311-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